대한민국정부

관보

http://gwanbo.korea.go.kr

제17949호 2013. 2. 12.(화)

【부 령】

○외교통상부령제144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환경부령제49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 5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41호(국적회복)…… 5

○국방부고시제2013-33호(실시계획 승인) …… 8

○국방부고시제2013-34호(실시계획 승인) …… 9

○국방부고시제2013-35호(실시계획 승인) …… 9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1호(2013년도 석유비축계획중 중요사항) …… 10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2호(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10

○환경부고시제2013-14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 11

○환경부고시제2013-15호(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 11

○여성가족부고시제2013-7호(청소년유해매체물) …… 14

○문화재청고시제2013-12호(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호(국적상실) …… 16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호(국적상실) …… 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호(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호(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0호(도로구역결정〈변경〉)……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1호(접도구역 지정〈변경〉) ……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2호(지형도면)……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3호(도로구역결정〈변경〉)……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4호(접도구역 지정〈해제〉) ……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5호(지형도면)……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6호(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25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2100-3310, 2100-3312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110-76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9호(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 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0호(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 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1호(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 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2호(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3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호(항로표지 현상변경 및 폐지) …… 34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호(항로표지 현상변경〈등명기 교체〉) …… 34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4호(항로표지 신설)…… 34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6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35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8호(금융투자업 업무폐지) …… 36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8호(한 · 미 환경협력위원회〈ECC〉 및 한 · 미 환경협의회〈EAC〉 개최〈공개 세션 참여〉)…… 36
○법무부공고제2013-21호(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7
○법무부공고제2013-22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8
○법무부공고제2013-23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8
○법무부공고제2013-24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9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0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40
○보건복지부공고제2013-77호(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40
○고용노동부공고제2013-43호(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10호(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 …… 42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5호(토양정화업 등록취소)…… 4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9호(토양정화업 등록취소)…… 43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3-8호(토양정화업 등록취소)…… 43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3-14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 4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3-15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 7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11호(시정권고 재결) …… 116

【법 원】

○판결(대전지방법원) …… 117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29호(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148
○음성군고시제2013-21호(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150
○경기도공고제2013-189호(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 …… 168
○경기도공고제2013-190호(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 168
○경기도공고제2013-212호(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68
○전라남도공고제2013-146호(대기,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169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60호(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 169

【상 훈】

○서훈(법무부 · 보건복지부) …… 172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도기계화보병사단보통검찰부) …… 176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순청지청) …… 177
○압수물환부공고(강원원주경찰서) …… 177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 177

부 령

◉외교통상부령 제144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국제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10. 양자·다자협의체에서의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외교업무

11.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정의 체결 교섭 및 이행에 관한 국가 간의 협력

1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대한 협력

제26조제4항제18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946”을 “949”로 하고, 일반직 계 “140”을 “14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21”을 “27”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677”을 “680”으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92”를 “195”로 하고, 기능직 계 “115”를 “109”로 하며, 기능 9급 사무실무원 “74”를 “6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46”을 “949”로 하고, 일반직 계 “140”을 “14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21”을 “27”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677”을 “680”으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92”를 “195”로 하고, 기능직 계 “115”를 “109”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74”를 “68”로 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936”을 “939”로 하고, 일반직 계 “140”을 “14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21”을 “27”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667”을 “670”으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82”를 “185”로 하고, 기능직 계 “115”를 “109”로 하며, 기능 9급 사무실무원 “74”를 “68”로 한다.

별표 1의4 중 총계 “937”을 “9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0”을 “14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21”을 “27”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668”을 “671”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82”를 “185”로 하고, 기능직 계 “115”를 “109”로 하며, 기능 9급 사무실무원 “74”를 “6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323호, 2012. 1. 22. 공포・시행)되어 녹색기후기금 지원・협력에 필요한 3명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상세 직급을 정하고, 녹색기후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과의 일부 기능을 개편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6명(기능9급 6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6명(행정서기보 6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제공>

○환경부령제497호(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7942호(2013. 1. 31.)에 게재된 환경부령제497호(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인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별표 7 제1호의 표 중 저위발열량란 저위발열량 kcal/kg 3,500 이하	별표 7 제1호의 표 중 저위발열량란 저위발열량 kcal/kg 3,000 이상	관보 제17492호 63쪽 8째줄
별표 7 제2호의 표 중 저위발열량란 저위발열량 kcal/kg 3,000 이하	별표 7 제2호의 표 중 저위발열량란 저위발열량 kcal/kg 3,500 이상	관보 제17942호 63쪽 30째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수반취득	비고
조중구	1945.01.04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12	1995.05.26		
임창규	1945.03.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164	1980.12.31		
고한실	1926.06.21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71	1987.02.27		
이정호	1943.03.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86	2002.02.21		
고제금	1962.08.11	여	이 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2-23	2005.09.11		
박명숙	1946.06.2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51	2002.10.24		
김항길	1944.09.2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51	1987.07.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수반취득	비고
정복희	1951.02.10	여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551-1	2000.09.21		
이숙희	1937.09.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번지	1989.10.06		
찌엠티축린	1982.01.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458	2011.07.22		
정병성	1945.10.05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4-2	2010.09.28		
여엉티 이평안	1974.06.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679	1996.02.07		
박희정	1969.07.15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67-26	1991.03.10		
김진순	1946.05.19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	2003.03.27		
윤소희	1944.06.02	여	미 국	충북 제천시 신월동 297	2008.11.10		
유동성	1935.12.07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 139	2007.04.21		
김점순	1947.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45-26	2003.09.10		
박영희	1952.08.18	여	타 이 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80	1976.06.16		
이효자	1945.06.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2-4	1978.05.26		
서병호	1973.11.14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90	1998.11.28		
권상수	1928.07.1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금천리 344	2006.01.19		
서옥실	1930.05.23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금천리 344	2006.01.19		
위이싼쫑	1981.06.06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63-90	2010.09.31		
주윤언	1941.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0-8	1986.07.09		
안영희	1940.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0-8	1986.07.09		
조병인	1945.12.07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85	1996.11.19		
박양희	1967.12.2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25	2003.11.04		
안형주	1937.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35	1972.03.24		
홍혜원	1979.04.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산 1	2005.08.16		
최성만	1937.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120	1996.06.21		
한상표	1947.02.20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본당리 371	1986.06.05		
양주선	1945.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127-15	2012.05.03		
이수경	1964.05.16	여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95	2008.04.30		
동부손	1924.08.1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2	2009.09.15		
김원일	1943.06.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7	1977.03.25		
이정현	1943.04.16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232	1978.12.15		
신승일	1938.11.10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144	1979.01.17		
전상복	1937.02.15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가야리 491	1973.10.0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수반취득	비고
박휘석	1944.02.06	남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187-1	1986.12.17		
현봉희	1947.07.18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41-13	1980.03.18		
구영회	1936.05.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4	1982.10.15		
이종인	1943.01.26	남	미 국	경기도 시흥시 포동 36	1993.12.01		
헌거린헌보양델게르체렌나드미드	1973.06.11	여	몽 골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 523	2012.02.28		
박태부	1943.07.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1992.10.07		
이강일	1993.09.10	남	피 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87-22 바동	2011.02.09		
신판동	1929.11.10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16	1996.10.23		
김춘선	1937.09.06	여	미 국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 16	1996.09.26		
박봉헌	1942.0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	1985.08.01		
한형규	1927.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6	1994.02.04		
김지연	1969.04.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266	2007.05.25		
장혜정	1997.12.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266	2007.05.25	김지연의 수반취득	
김혜자	1943.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6	1974.11.13		
장성규	1945.06.12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읍상동 6-3	1979.02.23		
방남혜	1938.09.01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145	1973.08.28		
서유리	1986.08.12	여	스 웨 덴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9-19	2008.10.28		
명정기	1940.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84-14	2002.02.12		
최종원	1942.10.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5	1979.04.27		
이복기	1932.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3-14	2002.12.12		
김태훈	1947.07.26	남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35	2008.09.30		
한효진	1936.1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14	1988.04.30		
주보혜	1947.0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78	1978.07.05		
권재창	1930.03.11	남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201	2004.05.26		
백병록	1936.12.14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외부리 882	2011.05.18		
이영호	1946.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88	1981.04.24		
장경열	1938.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5	1988.12.01		
루시아 혜영김	1944.0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93 제1동	1981.06.15		
강선희	1943.12.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383-40	1979.01.24		
박선희	1941.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30-29	1989.02.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수반취득	비고
김혜진	1987.11.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0-88	2004.03.15		
소준섭	1985.03.15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240	2002.11.19		
임국준	1942.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201	1979.02.16		
김선옥	1941.07.05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3-46	1977.03.29		
정성필	1955.03.1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태령동 272	1988.05.24		
박은정	1972.09.09	여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3동 1095	2005.05.18		
구명자	1940.01.1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97	2000.08.29		
친나롬	1985.02.03	여	캄 보 디 아	경북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333	2011.08.11		
훤테이터우	1987.01.12	여	무 국 적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99	2009.12.16		
쩐티후인느	1987.11.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47	2010.06.21		
팜테이풍런	1972.02.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481	2011.09.29		
오쇼지 미찌꼬	1960.07.29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282	1996.05.24		
보티느엉	1986.12.01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456	2011.08.24		
뤼진환	1962.08.24	남	타 이 완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181-4	2012.01.07		
윙테이뛱	1985.12.1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이천동 390	2009.12.25		
뉴엔티니엔	1985.12.27	여	베 트 남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2	2010.05.13		
부이주도안	1986.08.25	여	베 트 남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174-2	2010.03.23		
박은숙	1955.07.2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6	1977.07.20		
차덕희	1945.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59	2011.11.29		
사또아야	1990.11.19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2	2012.08.01		
김명수	1932.03.29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3	2008.11.19		
유준식	1946.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62-2	1997.04.10		
김동광	1943.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05	1978.06.21		
이수자	1944.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7	1978.06.21		
김동옥	1946.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68	2012.12.09		
최말연	1940.01.2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688	1992.09.11		

◉국방부고시제2013-3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격통제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격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격통제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 사격통제실신축	경기도 가평군 하면 상판리 497-3번지 / 208.33㎡	'13. 2 6. ~ '13. 5.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훈련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교육훈련 가능한 훈련시설 설치로 교육효과 극대화에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 훈련장 시설신축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11-2번지 / 445.91㎡	'13. 2. 6. ~ '13. 5.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신축을 통한 군사력 증대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74-19	1,263	21.64
2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83-7	69,841	3,633.77
3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95	15,222	1,236.47
4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945	1,874	102.20
합계			88,200	4,994.08

4. 사업의 시행기간 : ‘13. 2. 6. ~ ’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2013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1. 석유비축 주체

o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3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26.3만배럴(한국석유공사 도입분 제외)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구미글로벌교육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계획 변경

1. 변경목적

○ 기 승인받은 구미 글로벌교육특구의 특화사업 시행기간 등을 변경하여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 도모

2. 변경내용

○ 특화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08년~2012년 → (변경) 2008년~2017년

○ 재원조달방법

- (당초) 251억원(국비4, 도비 5, 시군비 242)

- (변경) 315억원(국비 4, 도비 12.5, 시군비 298.5)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 : 02-2110-4993, 팩스 : 02-503-0371)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전화 : 054-480-6782, 팩스 : 054-480-6759)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13-1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2호 표 대기의 측정횟수 “4회/연”를 “3회/연”으로 하고 대기의 측정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봄 또는 가을, 여름, 겨울”로 한다.

제2장 제3호 첫번째항 중 “농약류(9종)”을 “농약류(13종)”로 하고, “헥사클로로벤젠”을 제외하고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린단”,“클로로데칸”,“엔도설판”을 신설한다.

제2장 제3호 두번째항 중 “산업용(1종)”을 “산업용(4종)”으로 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제외하고 “헥사브로모비페닐”,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과불화옥탄술폰산과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라이드”를 신설한다.

제2장 제3호 세번째항 중 “공정부산물(4종)”을 “공정부산물(5종)”로 하고, “펜타클로로벤젠”을 신설한다.

제2장 제4호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장 제7호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장 제8호 네번째항중 “2월말까지”를 “4월말까지”로 한다.

제2장 제8호 다섯번째항중 “3월말까지”를 “6월말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5호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점검주체)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실태점검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
3.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계획
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대상 그룹) 환경부장관은 전년도 하수도 통계상의 하수처리 인구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 상대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운영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④ 실태점검단은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태점검 내용 및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 지표별 산출값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점검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하수도요금 현실화, 재해예산 확보율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 및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원 해소, 주민지원, 전산화 등 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0조(점검자료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자료를 취합·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점검 후속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결과를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실태점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점검기준의 보완)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실태점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638	smartlive.pe.kr	smartlive.pe.kr	에이피 엔터테인먼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06-089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39	ok892.com	ok892.com	에이피 엔터테인먼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06-090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0	362436tv.com	362436tv.com	넥스트코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06-091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1	yh13.kr	yh13.kr	카러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06-092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2	paddmb.com	paddmb.com	에엔씨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06-093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3	19house.kr	19house.kr	엘에스에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06-094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4	my19tv.com	my19tv.com	비전네트워크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06-095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5	p19.co.kr	p19.co.kr	제이이노텍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06-096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6	yadio9.com	yadio9.com	미려소프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06-097	2013.1.24	선정성	2013.2.12

◉문화재청고시제2013-1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문화재 명칭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 문화재 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42호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209-1,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산98 등 12필지

○ 지정가치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신생대 제4기 추가령 구조선 또는 북한의 평강 오리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옛 한탄강 유로를 따라 흐르다가 영평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급랭하여 형성된 것으로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발견된 예가 드물고

-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와 제4기 현무암질 용암류와의 부정합 구조, 주상절리, 하식애 및 고토양층의 발달 등 지질·지형학적인 가치 및 경관적 가치도 우수함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 146,916㎡(세부내역 붙임)

○ 문화재관리단체 : 경기도(경기도지사)

○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 경기도 문화재과 : 전화 031-8008-4771 전송 031-8008-2289

○ 포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38-2106 전송 031-538-2749

○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 전화 031-839-2565 전송 031-839-2496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 12필지 146,916㎡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합 계					674,858	146,916		
문화재구역	1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209-1	임	141,323	5,163	국방부	
	2		산209-8	임	5,614	3,331	국방부	
	3		산209-9	임	74	74	국방부	
	4		산209-10	임	732	732	국방부	
	5		산209-11	임	2,604	476	국방부	
	6		산210	임	5,256	5,256	국방부	
	7		756	잡	3,114	3,114	국방부	
소 계					158,717	18,146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문화재 보호구역	1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209-7	천	99,720	43,039	국토해양부	
	2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산98	천	222,584	40,500	국토해양부	
	3		17-44	잡	8,837	5,000	경기도	
	4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산7-5	천	30,660	27,034	국토해양부	
	5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산12-1	천	154,340	13,197	국토해양부	
소 계					516,141	128,77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유영자	1949.07.16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1060	2001.07.19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상복	1965.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91	2010.09.27	외국국적취득(귀화)
권오식	1940.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6길 43-8	1982.01.31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수정	1956.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01-6	1995.01.26	외국국적취득(귀화)
곽성권	1947.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01-6	1997.10.23	외국국적취득(귀화)
유문선	1982.11.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5나길 7	2012.11.09	외국국적취득(귀화)
장혜선	1950.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길 13-3	1990.02.02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지현	1986.12.20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3길 7	2008.12.20	국적선택 불이행
두미림	1964.11.02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어비산길 199	2012.12.14	한국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김광수	1959.12.1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6나길 6	2007.07.19	외국국적취득(귀화)
김민서	2000.11.05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905	2012.01.20	외국국적취득(귀화)
한정희	1969.03.24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905	2012.01.20	외국국적취득(귀화)
주세호	1974.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9가길 21	2012.11.27	외국국적취득(귀화)
김계림	1977.09.30	남	독 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982	1985.11.08	외국국적취득(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박덕원	1940.04.20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24	2000.11.21	외국국적취득(귀화)
전성	1970.03.18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707	2012.09.05	한국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배민준	1983.08.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4가길 13	2012.06.18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선우	1973.04.14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차당실1길 74	2012.07.18	한국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이디나에바	1988.03.19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10.03.19	국적선택 불이행
장정은	1961.05.04	여	미 국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85	2011.12.02	외국국적취득(귀화)
허유석	1985.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26	2004.04.06	외국국적취득(귀화)
최윤희	1992.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길 1	2012.05.23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영희	1956.08.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0길 17-1	2009.11.05	외국국적취득(귀화)
박난규	1947.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7	1980.04.08	외국국적취득(귀화)
정용석	1958.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23	2009.02.06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주현	1991.07.0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5	2011.01.26	외국국적취득(귀화)
수해르태 이아리웅	1973.07.24	여	몽 골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남정2길 13	2012.12.13	한국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찬희	1955.01.03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05	2004.05.03	외국국적취득
임채경	1973.02.21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20	2010.04.20	외국국적취득
이홍자	1922.06.3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6-578	1998.12.08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66.10.2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198	1992.06.09	외국국적취득
김성옥	1966.12.01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61-7	2007.03.08	외국국적취득
이호수	1955.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619	1998.06.0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세원	1992.11.1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329	2002.12.13	외국국적취득
한영숙	1951.11.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1	2007.12.04	외국국적취득
응웬티 홍투이	1981.05.23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41-21	2005.09.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어진	1994.12.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43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이영섭	1993.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22-7	2011.05.19	외국국적취득
백승훈	1970.01.1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9	2005.06.16	외국국적취득
김창룡	1922.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31	2007.04.03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4.08.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6	1997.07.22	외국국적취득
윤용자	1947.04.19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05	1996.05.29	외국국적취득
방정웅	1943.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15	1997.06.05	외국국적취득
오경희	1946.08.10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55	2012.07.13	외국국적취득
장호연	1981.03.3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110	2012.08.14	외국국적취득
김관언	1954.03.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3-55	2005.08.12	외국국적취득
김정하	1966.07.06	여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44	2002.06.24	외국국적취득
조순희	1955.10.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48	2008.11.13	외국국적취득
박상경	1977.02.01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16	2011.02.17	외국국적취득
박광호	1948.02.28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268	2006.04.28	외국국적취득
김추자	1922.12.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24	2001.08.02	외국국적취득
김은미	1965.1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59	2010.02.24	외국국적취득
황승환	1991.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7-37	2012.03.27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69.05.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1988.05.24	외국국적취득
고정호	1957.09.1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8	2006.12.07	외국국적취득
김석형	1970.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52-14	1992.05.28	외국국적취득
고수광	1942.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82	1999.08.05	외국국적취득
한영숙	1946.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82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서여정	1984.01.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59	2012.10.11	외국국적취득
남혜영	1981.02.16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964-10	2009.11.05	외국국적취득
송미연	1980.07.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755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유다연	1991.01.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93-34	2004.08.25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2호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 중 수용토지 명세에 대한 정정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정정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당초 소유자		변경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81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6-14	16-15	답	답	1,689	1,689	1,689	1,689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광로 2-1 호선
82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6-13	16-14	답	답	901	901	901	901		남양동 1435	이천희	남양동 1435	이천희	광로 2-1 호선
84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6-12	16-13	답	답	285	285	285	285		사강리 681	조의호	사강리 681	조의호	광로 2-1 호선
86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6-11	16-12	답	답	53	53	53	53		고정리 472-1	박숙자	고정리 472-1	박숙자	광로 2-1 호선
95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6-15	16-10	답	답	573	628	573	573		고정리 282	조연호	고정리 282	조연호	광로 2-1 호선
96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7-6	17-2	답	답	221	637	221	224	3	고정리 159-1	조연호	고정리 159-1	조연호	광로 2-1 호선
97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7-7		답	답	3		3		-3	고정리 159-1	조연호	-	-	-
98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7-3	17-5	답	답	170	170	170	170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광로 2-1 호선
100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7-4	17-6	답	답	176	176	176	176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광로 2-1 호선
102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7-5	17-7	답	답	23	23	23	23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광로 2-1 호선
330	화성시 수화동	산135-5	산135-6	임	임	2,805	2,802	1,567	1,567		451 린스트리트. 헤링톤파크, 엔제이. 07640 미국	박상민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3 108동 1101호	박형준	대로 2-7 호선
333	화성시 수화동	산135-7	산135-5	임	임	55	55	55	55		기산동 81	김용재	기산동 81	김용재	대로 2-7 호선
336	화성시 수화동	457-12	457-11	목	목	43	43	43	43			화성시		화성시	대로 2-7 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당초 소유자		변경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37	화성시 수화동	457-9	457-8	목	목	1,672	1,672	1,672	1,672		수화동 455-1	박홍준	수화동 455-1	박홍준	대로 2-7 호선
356	화성시 수화동	457-8	457-12	전	전	1,394	1,394	1,368	1,368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1162 임광아파트 5동 708호	박진준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1162 임광아파트 5동 708호	박진준	대로 2-7 호선
362	화성시 수화동	457-10	457-9	임	임	5,131	5,131	5,131	5,131		수화동 298	박석준 외 1인	수화동 298	박석준 외 1인	대로 2-7 호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2호에서 변경이 없는 토지세목은 게재를 생략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3호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 중 수용토지 명세에 대한 정정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정정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당초 소유자		변경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79	화성시 시동	809-4	809-3	도	도	130	130	130	130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대로 3-24 호선
198	화성시 시동	809-3	809	도	도	2	420	2	2			국 (국토해양부)		국 (국토해양부)	대로 3-24 호선
295	화성시 수화동	457-8	457-12	전	전	1,394	1,394	26	26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1162 임광아파트 5동 708호	박진준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1162 임광아파트 5동 708호	박진준	대로 3-24 호선
299	화성시 수화동	산 135-5	산 135-6	임	임	3,638	2,802	1,235	1,235		451 린스트리트. 헤링톤파크, 엔제이. 07640 미국	박상민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3 108동 1101호	박형준	대로 2-8 호선
301	화성시 수화동	산 135-6	산 135-7	임	임	69	69	69	69		수화동 388	밀성박씨 충헌공21세 송운회파종친회	수화동 388	밀성박씨 충헌공21세 송운회파종친회	대로 2-8 호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3호에서 변경이 없는 토지세목은 게재를 생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 ~ 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 ~ 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2월(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6)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 전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180-4	대	67	-	-	건설부 (현 국토해양부)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12. 01. 26) 대통령령 제23562호	노선명	국도14호선 (거제~포항)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 및 위 치	o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o 위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일원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도로의 미관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변경	변경구역 및 위 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o 위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일원
	변경사유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선)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0.88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선)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0.88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지정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2월(1개월)

나. 공람장소 :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054-420-6668)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 전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667-1	답	1,726	1667-6	1	김천시	-	-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667-1	답	1,726	1667-5	6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667-1	답	1,726	1665-5	13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665-1	답	522	1665-6	4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863	도	1,623	1863	261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624-4	답	2,542	1624-8	474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624-2	답	179	1624-6	131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99-6	답	2,339	1599-14	22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98-3	도	250	1598-6	37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97-1	과	337	1597-4	1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98-4	답	252	1598-8	22	김천시	-	-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50-1	전	211	1550-2	14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51-5	과	449	1551-13	30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51-3	도	139	1551-6	7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81-4	도	121	1581-9	26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81-1	과	12	1581-5	9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88-2	대	554	1588-6	1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88-3	과	67	1581-7	15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80-5	과	95	1580-6	53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82-5	과	455	1582-10	13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82-4	답	1,445	1582-8	403	“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583-3	답	197	1853-8	1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12. 01. 26) 대통령령 제23562호	노선명	국도3호선 (남해~초산선)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 및 위 치	o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o 위치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도로의 미관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해제	해제구역 및 위 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o 위치 -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		
	해제사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지정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호선	남해~초산선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054-420-666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541(2012.10.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호선 마산지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마산지구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8월 14일~2014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 전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경북 포항시 흥해읍 약성리 367-1	답	1684	367-4	137	하동제외 4인	포항시 남구 해도동 493-7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9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2012-446호('2012.08.16)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편입 토지 세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9년 4월 ~ 2016년 3월 14일
 -변 경 : 2009년 4월 ~ 2016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1-727-2593)

5.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 선 명	구 간	연 장	비 고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7.68km	

나.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당초	변경									
1	기장	장안	좌천		5	5	답	답	192	195		신호길	
2	기장	장안	좌천		510-198	510-198	답	답	375	1022		부산광역시	
3	기장	장안	좌천		510-149	510-149	천	천	533	534		부산광역시	
4	기장	장안	좌천		6-2	6-2	답	답	379	381		김석복	
11	기장	장안	좌천		6-1	6-1	답	답	1,669	1,648		이대원	
49	기장	장안	임랑		242-5	242-5	임	임	451	463		박성찬	
67	기장	장안	임랑		27-20	27-20	과	과	164	988		박춘길	
78	기장	장안	월내		604-6	604-6	임	임	1,824	200		최해진	
133	기장	장안	월내		635-1	635-1	구	구	388	379		농림부	
135	기장	장안	월내		618-36	618-36	천	천	9	6		국토해양부	
138	기장	장안	월내		349-2	349-2	답	답	642	551		윤정희	
146	기장	장안	월내		379	379	답	종	380	380		김주선	
149	기장	장안	월내		380-1	380-1	답	종	3,941	3,941		김주선	
181	기장	장안	길천		산72-34	산72-34	임	도	1	1		기장군	
186	기장	장안	길천		산72-33	산72-33	임	도	9	9		기장군	
194	기장	장안	길천		460-5	460-5	임	창	10,890	2,649		홍문주	
222	기장	장안	길천		464-6	464-6	임	대	10,403	561		정현숙	
234	기장	장안	오리		산88-96	산88-96	임	임	4,032	6		이경옥	
235	기장	장안	오리		산88-95	산88-95	임	임	6	583		김요순	
236	기장	장안	오리		산88-94	산88-94	임	임	583	143		김남숙	
239	기장	장안	오리		산88-93	산88-93	임	임	143	3,418		부산광역시	
250	기장	장안	오리		산88-100	산88-100	임	임	158	413		김귀인	
251	기장	장안	오리		산88-99	산88-99	임	임	413	521		이승희	
252	기장	장안	오리		산88-98	산88-98	임	임	521	1,251		김미진	
253	기장	장안	오리		산88-97	산88-97	임	임	1,251	4,032		이경옥	
361	울주	서생	화산		1080-2	1080-2	답	전	423	423		이은숙	
400	울주	서생	화산		1111-4	1111-4	과	과	484	485		김정고	
428	울주	서생	화산		1143-1	1143-1	과	도	28	28		울산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당초	변경									
447	울주	서생	화산		1129-20	1129-20	과	과	873	865		최원택	
450	울주	서생	화산		1129-18	1129-18	과	대	45	45		김혜순	
470	울주	서생	명산		31-2	31-2	답	답	1,831	1,580		주선돈	
473	울주	서생	명산		52-1	52-1	과	과	491	588		김점희	
492	울주	서생	위양		427-1	427-1	과	과	382	982		전순임 이상인 이경숙	
535	울주	서생	위양		364	364	답	답	1,102	1,101		이유선	
542	기장	장안	월내			622-4		종		26		월계사	
543	울주	서생	위양			428-5		과		691		전순임외2	
544	울주	서생	화산			1137-7		과		152		이위주	
545	기장	장안	길천			460-8		창		40		홍문주	
546	기장	장안	길천			460-9		임		8,201		홍문주	
547	기장	장안	길천			464-16		대		551		정현숙	
548	기장	장안	길천			464-17		대		551		정현숙	
549	기장	장안	길천			464-18		대		446		정현숙	
550	기장	장안	길천			464-19		대		655		정현숙	
551	기장	장안	길천			464-20		대		654		정현숙	
552	기장	장안	길천			464-21		대		520		정현숙	
553	기장	장안	길천			464-22		대		650		정현숙	
554	기장	장안	길천			464-23		대		655		정현숙	
555	기장	장안	길천			464-24		대		655		정현숙	
556	기장	장안	길천			464-25		대		655		정현숙	
557	기장	장안	길천			464-26		대		656		정현숙	
558	기장	장안	길천			464-27		대		699		정현숙	
559	기장	장안	길천			464-28		대		434		정현숙	
560	기장	장안	길천			464-29		도		1,851		정현숙	
561	기장	장안	길천			464-30		도		183		정현숙	
562	기장	장안	길천			464-31		도		27		정현숙	
563	기장	장안	길천			487-8		구		183		농림부	
564	기장	장안	길천			492-28		천		844		국토해양부	
565	기장	장안	길천			492-42		천		1,739		국토해양부	
566	기장	장안	오리			1008-9		답		55		영월신씨 상두공파 후손종중	
567	기장	장안	오리			산88-101		임		158		이중근	
568	기장	장안	월내			349-6		답		84		윤정희	
569	기장	장안	월내			349-7		답		7		윤정희	
570	기장	장안	월내			618-50		천		3		국토해양부	
571	기장	장안	월내			635-2		구		9		농림부	
572	기장	장안	오리			산88-91		임		379		기장군	
573	기장	장안	월내			604-2		과		1,153		최해진	
574	기장	장안	월내			604-7		임		200		최해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당초	변경									
575	기장	장안	월내			604-8		과		3,536		최해진	
576	기장	장안	월내			604-9		임		271		최해진	
577	기장	장안	임랑			27-24		과		315		박춘길	
578	기장	장안	임랑			27-26		과		164		박춘길 박현길 박상길	
579	기장	장안	임랑			27-27		과		2,595		박춘길 박현길 박상길	
580	기장	장안	임랑			27-28		임		3,956		박춘길	
581	기장	장안	임랑			27-29		임		200		박춘길	
582	기장	장안	임랑			236-3		과		510		이정우	
583	기장	장안	임랑			236-4		과		525		이정우	
584	기장	장안	임랑			237-3		과		192		안복순	
585	기장	장안	임랑			237-4		과		1,275		안복순	
586	기장	장안	임랑			237-6		과		2,050		안복순	
587	기장	장안	임랑			239-2		답		1,566		안복순	
588	기장	장안	임랑			239-3		답		49		안복순	
589	기장	장안	임랑			245-3		과		14		박완호	
590	기장	장안	임랑			368-9		구		7		농림부	
591	기장	장안	임랑			368-17		구		111		농림부	
592	기장	장안	임랑			368-18		구		1		농림부	
593	기장	장안	임랑			368-19		구		647		농림부	
594	기장	장안	임랑			368-20		구		91		농림부	
595	기장	장안	임랑			368-21		구		87		농림부	
596	기장	장안	임랑			368-22		구		1		농림부	
597	기장	장안	임랑			산4-14		임		3,583		재단법인 선학원	
598	기장	장안	좌천			510-199		제		29		국토해양부	
599	기장	장안	좌천			510-200		천		185		국토해양부	
600	기장	장안	좌천			510-201		답		375		부산광역시	
601	기장	장안	좌천			산35-4		임		121		노정윤 김봉안 강호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0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2010-37호(관보 제17183호, 2010. 1. 27.)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편입 토지 세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9년 4월 23일 ~ 2016년 3월 17일

-변 경 : 2009년 4월 23일 ~ 2016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4)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70-8611-5920)

5.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 선 명	구 간	연 장	비 고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7.99km	

나.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당초	변경									
1	울주	서생	신암	명산	산5-6	산5-6	임	임	2,384	3,546		김정옥외3인	
2	울주	서생	신암	명산	846-1	846-1	구	구	874	874		국	
3	울주	서생	신암	명산	57-1	57-1	답	답	257	257		노승현	
4	울주	서생	신암	명산	848-1	848-1	도	도	165	165		국	
5	울주	서생	신암	명산	산8-2	산8-2	임	임	8,431	8,431		노승현	
6	울주	서생	신암	명산	846-7	846-7	구	구	609	609		국	
7	울주	서생	신암	명산	58-1	58-1	답	답	2,971	2,971		윤기호	
8	울주	서생	신암	명산	산17-4	산17-4	임	임	3,902	3,902		공	
9	울주	서생	신암	명산	53-1	53-1	답	답	153	155		김성곤	
10	울주	서생	신암	명산	849	849	도	도	277	301		국	
11	울주	서생	신암	명산	56-2	56-2	답	답	977	977		이영희	
12	울주	서생	신암	명산	56-3	56-3	답	답	170	168		방두만	
13	울주	서생	신암	명산	846-4	846-4	구	구	42	42		국	
14	울주	서생	신암	명산	846-6	846-6	구	구	119	119		국	
15	울주	서생	신암	명산	60-1	60-1	답	답	21	21		노승현	
16	울주	서생	신암	명산	59-1	59-1	답	답	300	300		윤기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당초	변경									
17	울주	서생	신암	명산	60-2	60-2	답	답	32	20		노승현	
18	울주	서생	신암	신암	산110-3	산110-4	임	임	2,793	2,793		노승현	
19	울주	온산	강양	강양	241-3	241-3	도	도	23	35		국	
20	울주	온산	강양	강양	242-3	242-3	도	도	50	63		국	
21	울주	온산	강양	강양	243-3	243-3	도	도	40	49		국	
22	울주	온산	강양	강양	244-4	244-4	도	도	212	224		국	
23	울주	온산	강양	강양	424-1	424-1	도	도	55	72		공	
24	울주	온산	강양	강양	426-1	426-1	도	도	63	54		공	
25	울주	온산	강양	강양	427-2	427-2	도	도	90	80		공	
26	울주	온산	강양	강양	429	429	구	구	186	27		국	
27	울주	온산	강양	강양	499	499	도	도	493	531		국	
28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6-7	506-7	답	답	384	346		김종택	
29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7-3	507-3	도	도	127	88		공	
30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7-4	507-4	도	도	89	76		공	
31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8-3	508-3	도	도	29	39		공	
32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8-19	508-19	도	도	185	170		공	
33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08-20	508-20	도	도	223	208		공	
34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10-4	510-4	구	구	807	892		국	
35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13-3	513-3	답	창	969	955		최영자외1인	
36	울주	온산	강양	강양	530-5	530-5	답	차	160	160		한종길	
37	울주	온산	강양	강양	688-2	688-2	도	도	255	242		국	
38	울주	온산	강양	강양	693-1	693-1	도	도	13	10		공	
39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06-2	706-2	도	도	552	526		국	
40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11-1	711-1	답	잡	2,390	1,695		김용문	
41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17-3	717-3	장	도	2,970	157		이영수	
42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19-3	719-3	답	도	1,147	147		김성동외 1인	
43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20-5	720-5	답	도	595	15		김옥이	
44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55-1	755-1	도	도	264	271		국	
45	울주	온산	강양	강양	755-3	755-3	도	도	471	463		공	
46	울주	온산	강양	강양	886	886	도	도	581	322		국	
47	울주	온산	강양	강양	887	887	도	도	845	796		국	
48	울주	온산	강양	강양	891-6	891-6	도	도	374	342		국	
49	울주	온산	강양	강양	산98-5	산98-5	임	임	2,033	1,893		김종강외 4인	
50	울주	온산	당월	당월	467-7	467-7	답	답	1,085	1,081		공	
51	울주	온산	당월	당월	471-10	471-10	대	대	801	16		이희승	
52	울주	온산	우봉	우봉	199-29	199-29	도	도	157	159		국	
53	울주	온산	우봉	우봉	357-1	357-1	장	장	34	33.9		신한기계 주식회사	
54	울주	온산	우봉	우봉	357-2	357-2	장	장	418	418.3		신한기계 주식회사	
55	울주	서생	신암	-	52-1	-	과	-	97	-		-	삭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당초	변경									
56	울주	서생	신암	-	851-8	-	천	-	262	-		-	삭제
57	울주	서생	서생	-	699-2	-	도	-	636	-		-	삭제
58	울주	서생	-	서생	-	699-5	-	도	-	640		박문조	추가
59	울주	온산	강양	-	419-3	-	도	-	32	-		-	삭제
60	울주	온산	-	강양	-	419-4	-	도	-	31		국	추가
61	울주	온산	강양	-	428-1	-	도	-	189	-		-	삭제
62	울주	온산	-	강양	-	428-3	-	도	-	196		국	추가
63	울주	온산	강양	-	429	-	구	-	186	-		-	삭제
64	울주	온산	-	강양	-	429-2	-	구	-	1		국	추가
65	울주	온산	-	강양	-	429-3	-	구	-	156		국	추가
66	울주	온산	강양	-	439-4	-	도	-	3	-		-	삭제
67	울주	온산	-	강양	-	439-7	-	도	-	3		국	추가
68	울주	온산	-	강양	-	507-11	-	도	-	35		공	추가
69	울주	온산	-	강양	-	513-4	-	답	-	5		공	추가
70	울주	온산	-	강양	-	513-5	-	답	-	9		전미영	추가
71	울주	온산	강양	-	531	-	구	-	15	-		-	삭제
72	울주	온산	-	강양	-	531-1	-	구	-	14		국	추가
73	울주	온산	강양	-	539-4	-	도	-	21	-		-	삭제
74	울주	온산	-	강양	-	539-7	-	도	-	22		공	추가
75	울주	온산	강양	-	539-5	-	도	-	9	-		-	삭제
76	울주	온산	-	강양	-	539-8	-	도	-	8		공	추가
77	울주	온산	강양	-	711-1	-	답	-	2,390	-		-	삭제
78	울주	온산	-	강양	-	711-3	-	도	-	90		윤화지	추가
79	울주	온산	-	강양	-	711-4	-	답	-	605		윤화지	추가
80	울주	온산	강양	-	712-2	-	도	-	38	-		-	삭제
81	울주	온산	-	강양	-	712-6	-	도	-	38		국	추가
82	울주	온산	-	강양	-	717-4	-	장	-	2,970		이영수	추가
83	울주	온산	-	강양	-	717-6	-	대	-	5,958		이용원	추가
84	울주	온산	-	강양	-	719-4	-	대	-	1,000		이용원	추가
85	울주	온산	강양	-	759-2	-	철	-	15	-		-	삭제
86	울주	온산	-	강양	-	759-13	-	철	-	15		국	추가
87	울주	온산	강양	-	759-7	-	철	-	39	-		-	삭제
88	울주	온산	-	강양	-	759-14	-	철	-	40		국	추가
89	울주	온산	강양	-	759-8	-	도	-	21	-		-	삭제
90	울주	온산	-	강양	-	759-16	-	도	-	21		국	추가
91	울주	온산	강양	-	883	-	도	-	149	-		-	삭제
92	울주	온산	-	강양	-	883-1	-	도	-	150		국	추가
93	울주	온산	강양	-	866	-	도	-	581	-		-	삭제
94	울주	온산	-	강양	-	866-2	-	도	-	272		국	추가
95	울주	온산	강양	-	890-4	-	구	-	2,041	-		-	삭제
96	울주	온산	-	강양	-	890-5	-	구	-	1,197		국	추가
97	울주	온산	강양	-	897-1	-	도	-	70	-		-	삭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당초	변경									
98	울주	온산	-	강양	-	897-6	-	도	-	70		국	추가
99	울주	온산	당월	-	20	-	장	-	2,832	-		-	삭제
100	울주	온산	-	당월	-	20-3	-	장	-	2,832.2		동해펄프(주)	추가
101	울주	온산	당월	-	21	-	도	-	13,986	-		-	삭제
102	울주	온산	-	당월	-	21-1	-	도	-	13,989.6		동해펄프(주)	추가
103	울주	온산	당월	-	469-1	-	도	-	919	-		-	삭제
104	울주	온산	-	당월	-	469-6	-	도	-	908		국	추가
105	울주	온산	-	당월	-	469-7	-	도	-	21		국	추가
106	울주	온산	당월	-	472-1	-	도	-	1,631	-		-	삭제
107	울주	온산	-	당월	-	472-8	-	도	-	334		국	추가
108	울주	온산	-	당월	-	488-7	-	구	-	372		국	추가
109	울주	온산	당월	-	488-42	-	구	-	329	-		-	삭제
110	울주	온산	-	당월	-	488-51	-	구	-	99		국	추가
111	울주	온산	-	당월	-	산36-6	-	도	-	431		국	추가
112	울주	온산	당월	-	산46-5	-	임	-	39	-		-	삭제
113	울주	온산	-	당월	-	산46-8	-	임	-	41		국	추가
114	울주	온산	우봉	-	179	-	도	-	4,064	-		-	삭제
115	울주	온산	-	우봉	-	179-11	-	도	-	4,067		국	추가
116	울주	온산	우봉	-	199-19	-	전	-	320	-		-	삭제
117	울주	온산	-	우봉	-	199-35	-	도	-	316		공	추가
118	울주	온산	우봉	-	199-23	-	전	-	1	-		-	삭제
119	울주	온산	-	우봉	-	199-37	-	도	-	1		공	추가
120	울주	온산	우봉	-	199-31	-	임	-	28	-		-	삭제
121	울주	온산	-	우봉	-	199-38	-	도	-	28		공	추가
122	울주	온산	우봉	-	200-16	-	도	-	100	-		-	삭제
123	울주	온산	-	우봉	-	200-28	-	도	-	254		국	추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1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 2013년 2월 5일
2. 등록번호 : 제2011-04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용접)
4. 업무범위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상호 및 성명 : 케이엔디티앤아이(주) 대표자 이의종
6. 사무소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261-1번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2호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소·성명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장

2. 사업의 명칭 : 군산2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면적 : 변경없음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구 분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시행자	비고
도 로	- 중로 2-135호 : 19,620㎡(L=1,308m, B=15m) - 광로 2-9호선 : 1,650㎡ (L=30m, B=55m) - 소로 3-735호 : 210㎡(L=30m, B=7m)	군산시	중로2-135 공구분할
공 원	○ 새만금비응공원(근린공원 31호) : 48,993㎡	군산시	
도 로	- 광로 2-8호 1,800㎡ (L=30m, B=60m) - 광로 2-10호 : 1,800㎡ (L=30m, B=60m)	군산시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사업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1990. 05 ~ 2012. 05
- 변경 : 1990. 05 ~ 2015. 12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 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대상지) :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전체) : 변경 없음

8. 기반시설계획

가. 도로, 철도, 항만계획 : 변경 없음

나. 용수, 하수배수시설계획 : 변경 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 높이(m)	현황 변경 년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과부탄등표	N 33° 10.6′ E 126° 14.2′	Fl(2) W10s	17	8	흑홍흑원형콘크리트조(23)	2013. 02.06.	영구/없음	2011.8.7 등표 도괴
변경후		N 33°10′33″ E 126°14′10″		18		흑홍흑원형강관조(19)			2013.2.6 등표 복구

○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 높이(m)	폐 지 년월일	폐지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과부탄등부표	N 33° 10′ 36″ E 126° 14′ 17″	Fl(2) W10s	-	8	흑홍흑 망대형	2013. 02.06.	설치목적 소멸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등명기 교체)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 (M)	도색·구조·높이(m)	설치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대항도 등대	N 34°39′13″ E 125°28′43″	Fl W 4s	51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11	항행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등명기교체(250mm → 400mm)
변경후					18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 지 명	교량등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 달 거리(M)	신 설 년월일	비 고
완도대교 교량등	L1	N 34° 23′ 38.5″ E126° 38′ 45.1″	FG	18	8	2013. 2.4	○ 좌측단등 교량표지 - 주표 : 녹색 ■ - 교량등 : L1, L2 ○ 중앙등 교량표지 - 주표 : 홍색종선 ⓘ - 교량등 : C1, C2 ○ 우측단등 교량표지 - 주표 : 홍색 ▲ - 교량등 : R1, R2 ○ 교각등 : P1, P2, P3, P4 ○ 경간등 : S1, S2, S3, S4
	L2	N 34° 23′ 40.3″ E126° 38′ 45.0″					
	C1	N 34° 23′ 38.3″ E126° 38′ 47.1″	FW				
	C2	N 34° 23′ 39.4″ E126° 38′ 47.3″					
	R1	N 34° 23′ 37.9″ E126° 38′ 49.6″	FR				
	R2	N 34° 23′ 38.6″ E126° 38′ 49.6″					
	P1	N 34° 23′ 39.1″ E126° 38′ 44.0″	FY	4			
	P2	N 34° 23′ 40.1″ E126° 38′ 44.2″					
	P3	N 34° 23′ 37.3″ E126° 38′ 50.6″					
	P4	N 34° 23′ 37.7″ E126° 38′ 51.0″					
	S1	N 34° 23′ 39.7″ E126° 38′ 41.1″		18			
	S2	N 34° 23′ 41.1″ E126° 38′ 41.3″					
	S3	N 34° 23′ 37.4″ E126° 38′ 52.5″					
	S4	N 34° 23′ 37.4″ E126° 38′ 53.2″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6752	압력용기 — 비파괴 시험일반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B 6752에서 참고한 ASME Code의 2005년 이후 개정된 내용과 기타 산업계의 필요사항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재료, 용접부, 제작 부품의 표면 및 내부 불완전부의 검출을 위하여 육안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 침투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와전류 탐상 시험, 음향 방출 시험 등의 비파괴시험 방법을 개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아스타투자자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3.2.5
컴퍼스투자자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3.2.5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8호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및 한·미 환경협의회(EAC) 개최(공개 세션 참여)

한·미 환경협력위원회(ECC) 및 한·미 환경협의회(EAC) 개최(공개 세션 참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제1차 환경협력위원회(ECC : Environmental Cooperation Commission)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에 따른 제1차 환경협의회(EAC :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가 2013.2.14(목)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 한·미 환경협력협정(2012.3.15 발효) 제3조 : 협정 발효후 1년이내에 환경협력활동을 점검, 평가하기 위한 환경협력위원회(ECC)를 개최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2012.3.15 발효) 제20.6조 : 양 당사국은 환경협의회를 설치하며, 이 장(환경챕터)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정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회합한다.

○ ECC에서는 △기존의 양자·다자 협력 현황 평가 △2013-2015년간 적용될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 합의 예정

○ EAC에서는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장(환경)의 이행 및 진전사항에 대해 협의 예정

2.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6조에 따라 공개 세션(public session)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인 바, 동 세션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는 2.10(일)까지 외교통상부 기후변화팀*으로 참석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 2013.2.14(목) 14:00-16:00
- 장소 : 미국 국무부 (구체 장소는 참석자에게 개별 통보)
- 주요내용 : ECC 및 EAC 주요결과 브리핑 / 질의·응답
- 참석비용 : 미지원(자비 부담)

* 기후변화팀 연락처 : 이메일 climate@mofat.go.kr
전화번호 02-2100-7743
팩스 02-2100-7991

◉법무부공고제2013-21호

「소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소년법」은 경찰 등 소년보호사건 관계기관의 사건 내용 조회 응답을 금지하고 있으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사건 관련정보 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발생되므로 경찰서장 등이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학교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찰서장 등이 조회 요청 받은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학교장 등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1)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학교장 등과 공유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도·개선 지연 및 피해 학생의 추가 피해 발생 등 문제가 예상됨

2) 경찰서장 등이 조회 요청 받은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학교장 등에게 회신하도록 함으로써「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지 않도록 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기부금품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1)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돕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법령이 없어 기부금품의 보관, 전달 등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부자에게 기관 명의 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워 기부금품을 활용한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2)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대상자의 경제구호, 장학금 지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대상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기부금품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로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 규정 신설(안 제54조)

1) 소년원은 소년원생을 돕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법령이 없어 기부금품의 보관, 전달 등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부자에게 기관 명의 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워 기부금품을 활용한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2) 소년원에서 직접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대상자의 처우, 학업지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대상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4호

「치료감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기부금품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로 피치료감호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

1) 치료감호소는 피치료감호자를 돕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법령이 없어 기부금품의 보관, 전달 등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부자에게 기관 명의 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워 기부금품을 활용한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2) 치료감호소에서 직접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대상자의 보호·치료 등에 활용하는 것이 대상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되므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4,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0호

관보 제17933호(2013.01.18.)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135쪽

◉보건복지부공고제2013-77호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0호, ’12. 4. 10. 시행)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적·실천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내 및 상담,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환경, 직원관리, 시설운영 등을 규정

가. 서비스 안내 및 상담(안 기준1~5)

1)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2) 시설은 시설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

3) 예비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방문의 기회를 가짐

나. 개인의 욕구와 선택(안 기준6~7)

1) 이용자의 욕구는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2)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다.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안 기준8~13)

1) 이용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

2) 일반적인 위험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3)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4) 이용자는 학대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함

5) 이용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라. 능력개발(안 기준14~16)

1) 이용자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가지며, 적절한 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받음

2) 이용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음

마. 일상생활(안 기준17~20)

1)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음

2) 이용자는 가족 및 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모든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존중받음

3) 이용자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단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

바. 개별지원(안 기준21~24)

1)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음

2) 이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약물을 보유·관리하며, 약물을 다루는 시설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음

사. 환경(안 기준25~31)

1) 이용자는 가정과 유사한 설비를 통해서 개별 욕구를 충족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음

2) 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함

3) 이용자는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를 제공받음

아. 직원관리(안 기준32~36)

1)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며, 직원의 업무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정됨

2)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짐

3) 직원은 이용자 욕구충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음

자. 시설운영(안 기준37~40)

1) 시설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 시킴

2) 이용자는 시설의 문서화된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 받음

3. 의견제출

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51,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43호

「근로감독관증규칙(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 형식을 고려하고 사업장 검검 업무 및 노동관련 법령의 수사 업무에서 근로감독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규격·재식 등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046, FAX 507-649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10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 업 소 재 지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의 종류
제23호	(주)전략해양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108	강영승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5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원광개발(주)
2) 대 표 자 : 김동인
3)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873번지 (☎055-372-0180)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호(지정일자 : 2009년 1월 12일)
6) 취 소 일 자 : 2013년 2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3-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태영건설
2. 대 표 자 : 김외곤외 2인
3.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0-7호
6. 등록취소일 : 2013. 2. 6.
7. 전화번호 : 02-2090-2329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3-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전진종합건설주식회사
2. 대 표 자 : 조용천

3.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22-3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6호
6. 등록취소일 : 2013. 2. 5.
7. 전화번호 : 033-747-6103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3-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지구를 분리하여 실시계획(변경 9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당초)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변경)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교통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원
2) 사 업 비 : (당초) 1,523,389백만원
(변경) 720,688백만원
3) 공사내용
(당초)
○ 인천지구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갑문시설 2기,
도로 1.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 김포지구 : 접안시설 1,255m,호안 3,141m, 갑문시설 1기, 도로 0.88km
운영건물 14동, 부대시설 1식, 마리나 계류시설 등 1식
(변경)
○ 인천지구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갑문시설 2기,
도로 1.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별첨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구 토지세목조서

Ⅰ. 수용토지

▶ 항만구역 (변경)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7	천	6,240	6,240					국(농림부)	
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8	천	368	368					국(농림부)	
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12	천	89	89					국(농림부)	
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17	천	176	176					국(농림부)	
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18	천	45	45					국(농림부)	
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19	천	2,173	2,173					국(농림부)	
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5-3	구	179	179					국(농림부)	
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6-1	답	4	4					국(국토부)	
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6-2	답	50	50					국(국토부)	
1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6-3	답	235	235					국(국토부)	
1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1	답	323	323					한국수자원공사	
1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2	답	1,318	1,318					국(국토부)	
1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4	답	127	127					국(국토부)	
1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8	구	25	25					국(농림부)	
1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14	답	207	207					국(국토부)	
1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19	답	91	91					국(국토부)	
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38	임	101	101					국(국토부)	
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39	임	381	381					국(국토부)	
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41	임	690	690					국(국토부)	
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42	임	460	460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8	구	139	139					국(국토부)	
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14	구	122	122					국(국토부)	
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19	구	29	29					국(국토부)	
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20	전	56	56					국(기재부)	
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21	구	166	166					경기도	
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22	구	143	143					국(국토부)	
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23	전	99	99					국(기재부)	
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24	도	244	244					김포시	
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19	구	6	6					국(국토부)	
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0	구	167	167					국(국토부)	
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1	구	67	67					국(국토부)	
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2	구	1	1					국(국토부)	
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3	구	2	2					국(국토부)	
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4	구	119	119					국(국토부)	
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5	구	156	156					국(국토부)	
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1-3	전	179	179					국(국토부)	
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1-11	전	610	610					국(국토부)	
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1-15	구	3,056	3,056					국(국토부)	
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2-1	구	370	370					국(국토부)	
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2-2	잡	2,598	2,598					국(국토부)	
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3-0	전	694	694					국(국토부)	
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4-0	전	678	678					국(국토부)	
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5-1	구	998	998					국(국토부)	
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5-2	전	2,807	2,807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5-4	구	2,850	2,850					국(국토부)	
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5-5	전	655	655					국(국토부)	
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	전	913	913					국(국토부)	
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3	전	1,187	1,187					국(기재부)	
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4	구	188	188					국(국토부)	
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6	전	141	141					국(국토부)	
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7	구	1	1					국(국토부)	
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8	구	891	891					국(국토부)	
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9	구	12	12					국(국토부)	
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1	전	1,247	1,247					국(기재부)	
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2	구	160	160					국(국토부)	
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3	전	133	133					국(국토부)	
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4	구	24	24					국(국토부)	
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5	구	162	162					국(국토부)	
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6	구	281	281					국(국토부)	
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7	전	2,247	2,247					김포시	
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8	전	148	148					국(기재부)	
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9	구	137	137					국(국토부)	
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20	구	128	128					국(국토부)	
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21	전	206	206					국(기재부)	
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22	전	966	966					김포시	
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	구	177	177					국(국토부)	
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	전	279	279					국(농림부)	
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3	도	254	254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4	구	61	61					국(국토부)	
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5	전	1,059	1,059					국(농림부)	
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6	도	155	155					국(기재부)	
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7	전	185	185					국(농림부)	
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8	구	123	123					국(국토부)	
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9	구	102	102					국(국토부)	
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0	도	330	330					국(국토부)	
7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1	구	544	544					국(국토부)	
7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2	구	35	35					국(국토부)	
7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3	전	109	109					국(농림부)	
7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4	전	217	217					국(농림부)	
8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5	도	48	48					국(국토부)	
8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6	도	233	233					국(기재부)	
8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7	구	1,154	1,154					국(국토부)	
8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8	구	1	1					국(국토부)	
8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9	도	441	441					국(국토부)	
8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0	구	397	397					국(국토부)	
8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1	전	212	212					국(농림부)	
8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2	전	296	296					국(농림부)	
8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3	구	1,569	1,569					국(국토부)	
8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4	구	12	12					국(국토부)	
9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1	구	612	612					경기도	
9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4	전	80	80					국(국토부)	
9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5	전	87	87					국(기재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9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6	전	54	54					국(기재부)	
9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7	구	47	47					국(농림부)	
9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8	전	919	919					국(국토부)	
9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9	전	786	786					국(기재부)	
9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10	구	259	259					국(농림부)	
9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0-4	구	46	46					국(농림부)	
9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0-5	구	536	536					국(농림부)	
10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5	전	142	142					국(농림부)	
10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9	전	487	487					국(농림부)	
10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10	전	174	174					국(농림부)	
10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11	전	714	714					국(농림부)	
10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3	구	899	899					국(국토부)	
10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4	전	133	133					국(기재부)	
10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1	구	260	260					국(국토부)	
10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2	구	169	169					국(국토부)	
1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3	전	41	41					국(기재부)	
10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4	전	5	5					국(기재부)	
1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5	전	5	5					국(기재부)	
1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6	전	6	6					국(기재부)	
1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7	전	1	1					국(기재부)	
1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8	전	544	544					국(기재부)	
1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9	전	649	649					국(기재부)	
1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4	천	9,157	9,157					국(농림부)	
1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9	천	4,307	4,307					국(농림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10	천	5,694	5,694					국(농림부)	
1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14	천	261	261					국(농림부)	
1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15	천	95	95					국(농림부)	
1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18	천	5,818	5,818					국(농림부)	
1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7-2	답	1,127	1,127					국(국토부)	
1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7-9	구	321	321					국(농림부)	
1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7-14	구	133	133					국(농림부)	
1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7-15	구	990	990					국(농림부)	
1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7-16	답	1,391	1,391					국(국토부)	
1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8-4	답	1,052	1,052					국(국토부)	
1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8 5	답	379	379					국(국토부)	
1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8-6	답	397	397					국(국토부)	
1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8-7	답	2,961	2,961					국(국토부)	
1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9-2	답	289	289					국(국토부)	
1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9-3	답	3,881	3,881					국(국토부)	
1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9-4	답	2,997	2,997					국(국토부)	
1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9-5	답	941	941					국(국토부)	
1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0-3	답	1,226	1,226					한국수자원공사	
1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0-4	답	1,365	1,365					한국수자원공사	
1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0-7	답	2,273	2,273					국(국토부)	
1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0-8	답	233	233					국(국토부)	
1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1-3	답	2,311	2,311					한국수자원공사	
1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1-4	도	305	305					국(농림부)	
1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2-4	답	1,740	1,740					한국수자원공사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1-1	구	69	69					국(국토부)	
1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1-6	구	1,180	1,180					국(국토부)	
1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6-1	구	6,100	6,100					국(농림부)	
1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6-13	구	12	12					국(농림부)	
1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6-14	구	21	21					국(농림부)	
1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1	답	43	43					국(국토부)	
1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2	답	399	399					국(국토부)	
1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3	답	14	14					국(국토부)	
1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6	답	151	151					한국수자원공사	
1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7	답	231	231					한국수자원공사	
1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8-1	답	979	979					국(국토부)	
1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8-2	답	936	936					국(국토부)	
1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8-5	답	269	269					한국수자원공사	
1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8-6	답	188	188					한국수자원공사	
1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1	답	1,331	1,331					국(국토부)	
1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2	답	883	883					국(국토부)	
1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3	답	992	992					국(국토부)	
1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13	답	226	226					한국수자원공사	
1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14	답	133	133					한국수자원공사	
1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15	답	103	103					한국수자원공사	
1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1	답	1,734	1,734					국(국토부)	
1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2	답	1,219	1,219					국(국토부)	
1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7	답	242	242					한국수자원공사	
1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8	답	137	137					한국수자원공사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1-1	답	2,001	2,001					국(국토부)	
1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1-2	답	1,774	1,774					국(국토부)	
1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1-5	답	215	215					한국수자원공사	
1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1-6	답	188	188					한국수자원공사	
1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2-1	답	1,381	1,381					국(국토부)	
1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2-2	답	839	839					국(국토부)	
1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2-5	답	149	149					한국수자원공사	
1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2-6	답	92	92					한국수자원공사	
1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1	답	1,711	1,711					국(국토부)	
1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2	답	363	363					국(국토부)	
1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3	답	5	5					한국수자원공사	
17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4	답	397	397					한국수자원공사	
17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6	답	1,352	1,352					한국수자원공사	
17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7	답	36	36					한국수자원공사	
17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1	도	848	848					국(농림부)	
18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2	답	1,482	1,482					국(국토부)	
18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3	도	231	231					국(농림부)	
18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5	도	620	620					국(농림부)	
18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6	답	1,645	1,645					한국수자원공사	
18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5-1	답	2,548	2,548					국(국토부)	
18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5-2	답	3,084	3,084					국(국토부)	
18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5-3	답	1,892	1,892					한국수자원공사	
18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6-1	답	2,288	2,288					국(국토부)	
18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6-2	답	2,976	2,976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8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6-3	답	555	555					국(국토부)	
19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7-1	답	5,022	5,022					국(국토부)	
19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7-2	답	3,197	3,197					국(국토부)	
19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1	답	2,929	2,929					국(국토부)	
19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2	답	3,831	3,831					국(국토부)	
19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3	답	678	678					국(국토부)	
19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9	답	1,009	1,009					국(국토부)	
19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5	구	10	10					국(농림부)	
19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8	구	331	331					국(농림부)	
19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10	구	86	86					국(농림부)	
19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1	구	101	101					국(농림부)	
20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2	답	2,007	2,007					국(국토부)	
20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3	답	803	803					국(국토부)	
20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4	구	253	253					국(농림부)	
20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5	구	1,455	1,455					국(농림부)	
20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6	구	924	924					국(농림부)	
20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12	구	17,157	17,157					국(농림부)	
20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0-1	답	2,341	2,341					국(국토부)	
20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0-2	답	1,098	1,098					국(국토부)	
2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1-2	답	3,256	3,256					국(국토부)	
20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1-3	전	4,211	4,211					국(국토부)	
2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2-1	답	4,023	4,023					국(국토부)	
2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2-2	답	3,964	3,964					국(국토부)	
2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4-1	답	2,962	2,962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4-2	답	2,017	2,017					국(국토부)	
2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4-3	답	2,955	2,955					국(국토부)	
2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5-1	답	5,507	5,507					국(국토부)	
2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5-2	답	7,858	7,858					국(국토부)	
2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5-3	답	2,136	2,136					국(국토부)	
2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6-1	도	496	496					국(농림부)	
2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6-2	답	4,635	4,635					국(국토부)	
2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7-1	답	1,828	1,828					국(국토부)	
2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7-2	답	1,527	1,527					국(국토부)	
2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8-1	답	3,041	3,041					국(국토부)	
2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8-2	답	1,924	1,924					국(국토부)	
2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9-1	답	3,170	3,170					국(국토부)	
2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9-2	답	3,736	3,736					국(국토부)	
2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0-1	답	1,881	1,881					국(국토부)	
2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0-2	답	3,997	3,997					국(국토부)	
2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0-3	답	1,035	1,035					국(국토부)	
2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1-1	답	2,929	2,929					국(국토부)	
2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1-2	답	1,765	1,765					국(국토부)	
2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1-3	답	1,187	1,187					국(국토부)	
2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2-1	답	2,175	2,175					국(국토부)	
2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2-2	답	6,003	6,003					국(국토부)	
2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3-1	답	3,088	3,088					국(국토부)	
2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3-2	답	3,035	3,035					국(국토부)	
2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4-1	도	939	939					국(농림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4-2	답	2,364	2,364					국(국토부)	
2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4-3	답	671	671					국(국토부)	
2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6-0	구	293	293					국(국토부)	
2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6-3	구	1,761	1,761					국(국토부)	
2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6-1	구	93	93					경기도	
2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6-2	구	56	56					국(국토부)	
2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6-4	구	1,014	1,014					국(국토부)	
2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7-0	구	65	65					국(국토부)	
2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7-1	도	152	152					김포시	
2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7-2	구	441	441					국(국토부)	
2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9-1	답	4,003	4,003					국(국토부)	
2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9-2	답	1,355	1,355					국(국토부)	
2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9-3	답	2,572	2,572					국(국토부)	
2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0-1	답	2,826	2,826					국(국토부)	
2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0-2	답	1,137	1,137					국(국토부)	
2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0-3	답	4,030	4,030					국(국토부)	
2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1-1	답	1,263	1,263					국(국토부)	
2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1-2	답	4,017	4,017					국(국토부)	
2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2-1	답	1,177	1,177					국(국토부)	
2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2-2	답	4,526	4,526					국(국토부)	
2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3-1	답	2,291	2,291					국(국토부)	
2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3-2	답	972	972					국(국토부)	
2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3-3	답	2,916	2,916					국(국토부)	
2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5-1	답	1,802	1,802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5-2	답	3,048	3,048					국(국토부)	
2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6-1	도	2,714	2,714					국(농림부)	
2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6-2	답	3,524	3,524					국(국토부)	
2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7-1	답	1,626	1,626					국(국토부)	
2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7-2	답	4,572	4,572					국(국토부)	
2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7-3	답	2,089	2,089					국(국토부)	
2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9-1	답	3,593	3,593					국(국토부)	
2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9-2	답	1,921	1,921					국(국토부)	
2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9-3	답	2,010	2,010					국(국토부)	
2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0-1	답	2,860	2,860					국(국토부)	
2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0-2	답	1,164	1,164					국(국토부)	
2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0-3	답	5,382	5,382					국(국토부)	
2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1-1	답	2,532	2,532					국(국토부)	
2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1-2	답	6,245	6,245					국(국토부)	
2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4-1	답	2,830	2,830					국(국토부)	
27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4-2	답	2,820	2,820					국(국토부)	
27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1	도	127	127					국(농림부)	
27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2	답	3,517	3,517					국(국토부)	
27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3	답	826	826					국(국토부)	
28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4	답	2,122	2,122					국(국토부)	
28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5	답	1,841	1,841					국(국토부)	
28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6	답	1,808	1,808					국(국토부)	
28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23	도	3,883	3,883					국(농림부)	
28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6-1	답	2,694	2,694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8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6-2	답	3,139	3,139					국(국토부)	
28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9-1	구	2,430	2,430					국(농림부)	
28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2-2	답	1,168	1,168					국(국토부)	
28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4-1	답	5,324	5,324					국(국토부)	
28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4-2	답	3,868	3,868					국(국토부)	
29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5-1	답	1,617	1,617					국(국토부)	
29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5-2	답	4,830	4,830					국(국토부)	
29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7-1	답	2,529	2,529					국(국토부)	
29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7-2	답	1,435	1,435					국(국토부)	
29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7-3	답	5,220	5,220					국(국토부)	
29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8-1	답	3,488	3,488					국(국토부)	
29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8-2	답	707	707					국(국토부)	
29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8-3	답	2,136	2,136					국(국토부)	
29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8-4	답	2,169	2,169					국(국토부)	
29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8-5	답	893	893					국(국토부)	
30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9-2	도	102	102					국(국토부)	
30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9-6	구	98	98					한국수자원공사	
30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9-9	도	24	24					한국수자원공사	
30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9-10	구	10	10					한국수자원공사	
30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0-1	답	3,914	3,914					국(국토부)	
30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0-2	답	2,641	2,641					국(국토부)	
30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0-3	답	3,679	3,679					국(국토부)	
30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4-1	답	3,012	3,012					국(국토부)	
3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4-2	답	2,218	2,218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0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4-3	답	1,831	1,831					국(국토부)	
3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4-1	답	3,957	3,957					국(국토부)	
3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4-2	답	3,570	3,570					국(국토부)	
3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4-3	도	2,737	2,737					국(농림부)	
3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5-1	답	889	889					국(국토부)	
3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5-2	답	3,137	3,137					국(국토부)	
3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6-1	답	2,268	2,268					국(국토부)	
3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6-2	답	1,590	1,590					국(농림부)	
3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7-1	답	3,636	3,636					국(농림부)	
3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7-2	답	321	321					국(농림부)	
3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7-3	답	929	929					국(농림부)	
3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7-4	답	2,367	2,367					국(국토부)	
3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8-1	답	641	641					국(국토부)	
3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8-2	답	1,597	1,597					국(국토부)	
3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8-3	답	1,837	1,837					국(국토부)	
3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8-4	답	896	896					국(국토부)	
3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1	답	925	925					국(국토부)	
3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2	답	1,139	1,139					국(국토부)	
3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3	답	209	209					국(국토부)	
3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4	답	213	213					국(국토부)	
3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1	답	627	627					국(국토부)	
3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2	답	433	433					국(국토부)	
3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3	답	878	878					국(국토부)	
3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4	답	757	757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5	도	246	246					국(농림부)	
3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1-2	도	142	142					국(국토부)	
3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2-2	도	126	126					국(국토부)	
3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2-4	구	46	46					국(국토부)	
3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6-2	도	721	721					국(국토부)	
3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6-4	구	231	231					국(국토부)	
3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9-1	답	544	544					국(국토부)	
3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9-2	답	2,979	2,979					국(국토부)	
3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9-3	답	643	643					국(국토부)	
3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2-1	답	1,463	1,463					국(국토부)	
3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2-2	답	914	914					국(국토부)	
3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4-1	답	3,758	3,758					국(국토부)	
3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4-2	답	1,471	1,471					국(국토부)	
3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4-3	답	3,379	3,379					국(국토부)	
3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6-1	답	2,420	2,420					국(국토부)	
3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6-2	답	3,289	3,289					국(국토부)	
3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7-1	답	3,947	3,947					국(국토부)	
3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7-2	답	4,036	4,036					국(국토부)	
3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7-3	도	483	483					국(농림부)	
3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8-1	답	2,469	2,469					국(국토부)	
3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8-2	답	5,117	5,117					국(국토부)	
3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9-1	답	4,099	4,099					국(국토부)	
3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9-2	답	4,354	4,354					국(국토부)	
3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2	도	582	582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3	답	109	109					국(국토부)	
3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5	답	60	60					국(국토부)	
3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6	구	23	23					국(국토부)	
3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7	답	86	86					국(국토부)	
3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8	답	112	112					국(국토부)	
3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13	구	23	23					국(국토부)	
3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1-1	답	3,941	3,941					국(국토부)	
3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1-2	답	3,660	3,660					국(국토부)	
3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1-3	답	3,960	3,960					국(국토부)	
3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3-1	답	4,030	4,030					국(국토부)	
3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3-2	답	4,026	4,026					국(국토부)	
3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4-1	답	2,324	2,324					국(국토부)	
3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4-2	답	3,309	3,309					국(국토부)	
3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4-3	답	2,360	2,360					국(국토부)	
3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5-1	도	579	579					국(농림부)	
3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5-2	도	273	273					국(농림부)	
3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7-2	도	248	248					국(국토부)	
3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7-3	구	86	86					국(국토부)	
3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7-4	구	129	129					국(국토부)	
37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8-2	도	205	205					국(국토부)	
37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8-3	답	116	116					국(국토부)	
37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8-4	구	86	86					국(국토부)	
37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9-1	답	2,063	2,063					국(국토부)	
38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9-2	답	3,101	3,101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8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9-3	답	2,102	2,102					국(국토부)	
38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0-1	답	4,805	4,805					한국수자원공사	
38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1-2	도	509	509					국(국토부)	
38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1-3	답	182	182					국(국토부)	
38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1-4	답	198	198					국(국토부)	
38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2-2	구	3	3					국(국토부)	
38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2-3	답	23	23					국(국토부)	
38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2-3	답	7	7					한국수자원공사	
38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2-4	답	524	524					국(국토부)	
39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3-1	답	4,216	4,216					국(국토부)	
39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3-2	답	2,618	2,618					국(국토부)	
39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3-3	답	1,405	1,405					국(국토부)	
39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4-1	답	5,339	5,339					국(국토부)	
39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4-2	답	3,008	3,008					국(국토부)	
39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5-1	답	2,928	2,928					국(국토부)	
39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5-2	답	2,109	2,109					국(국토부)	
39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5-3	답	4,393	4,393					국(국토부)	
39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5-5	구	50	50					국(국토부)	
39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5-6	구	143	143					국(국토부)	
40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6-1	답	3,501	3,501					국(국토부)	
40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6-2	답	8,030	8,030					국(국토부)	
40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7-1	답	3,131	3,131					국(국토부)	
40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7-2	답	4,786	4,786					국(국토부)	
40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7-3	답	2,631	2,631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0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8-1	답	2,807	2,807					국(국토부)	
40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8-2	답	3,954	3,954					국(국토부)	
40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8-3	답	1,739	1,739					국(국토부)	
4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9-1	답	3,590	3,590					국(국토부)	
40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9-2	도	1,480	1,480					국(농림부)	
4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9-3	도	929	929					국(농림부)	
4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0-1	답	3,088	3,088					국(국토부)	
4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0-2	답	2,370	2,370					국(국토부)	
4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0-3	답	3,583	3,583					국(국토부)	
4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0-4	답	3,309	3,309					국(국토부)	
4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1-1	답	2,423	2,423					국(국토부)	
4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1-2	답	3,974	3,974					국(국토부)	
4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2-1	답	4,017	4,017					국(국토부)	
4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2-2	답	2,063	2,063					국(국토부)	
4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3-1	답	1,355	1,355					국(국토부)	
4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3-2	답	645	645					국(국토부)	
4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3-3	답	1,093	1,093					국(국토부)	
4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3-4	답	944	944					국(국토부)	
4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3-5	답	907	907					국(국토부)	
4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5-1	도	583	583					국(농림부)	
4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5-2	답	426	426					국(국토부)	
4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5-3	답	2,055	2,055					국(국토부)	
4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5-5	답	1	1					국(국토부)	
4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6-1	답	1,957	1,957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6-2	답	278	278					국(국토부)	
4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6-3	답	2,023	2,023					국(국토부)	
4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6-4	답	754	754					국(국토부)	
4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7-1	답	2,840	2,840					국(국토부)	
4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7-2	답	2,331	2,331					국(국토부)	
4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7-3	답	1,663	1,663					국(국토부)	
4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7-4	답	469	469					국(국토부)	
4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8-1	답	4,046	4,046					국(국토부)	
4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8-2	답	2,621	2,621					국(국토부)	
4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8-3	답	1,398	1,398					국(국토부)	
4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0-1	답	4,043	4,043					국(국토부)	
4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0-2	답	4,377	4,377					국(국토부)	
4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1-1	답	759	759					국(국토부)	
4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1-3	답	123	123					국(국토부)	
4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2-1	원	2,027	2,027					국(국토부)	
4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3-1	답	1,035	1,035					국(국토부)	
4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3-2	답	1,369	1,369					국(국토부)	
4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4-1	답	4,296	4,296					국(국토부)	
4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4-2	답	846	846					국(국토부)	
4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5-1	답	3,082	3,082					국(국토부)	
4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5-2	답	3,798	3,798					국(국토부)	
4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6-1	구	679	679					국(농림부)	
4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6-2	답	4,671	4,671					국(국토부)	
4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7-1	답	3,626	3,626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7-2	답	2,783	2,783					국(국토부)	
4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8-1	전	1,298	1,298					국(국토부)	
4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9-2	원	1,488	1,488					국(국토부)	
4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9-3	유	251	251					국(국토부)	
4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1	답	112	112					국(국토부)	
4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2	도	354	354					국(국토부)	
4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3	답	53	53					국(국토부)	
4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7	원	3,152	3,152					국(국토부)	
4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9	구	26	26					국(국토부)	
4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10	유	547	547					국(국토부)	
4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1-2	도	215	215					국(국토부)	
4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1-3	답	112	112					국(국토부)	
4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2-2	도	215	215					국(국토부)	
4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2-3	구	79	79					국(국토부)	
4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2-6	답	46	46					국(국토부)	
4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2-7	답	30	30					국(국토부)	
4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6-2	도	132	132					국(국토부)	
4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6-7	구	69	69					국(국토부)	
4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6-9	대	661	661					국(국토부)	
4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6-11	구	99	99					국(국토부)	
4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2	도	130	130					국(국토부)	
4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3	구	46	46					국(국토부)	
4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4	도	374	374					국(국토부)	
47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5	구	13	13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7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7	답	26	26					국(국토부)	
47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8	구	60	60					국(국토부)	
47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9	답	122	122					국(국토부)	
48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11	구	136	136					국(국토부)	
48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17	구	23	23					국(국토부)	
48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8-2	도	119	119					국(국토부)	
48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8-3	답	40	40					국(국토부)	
48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8-4	답	50	50					국(국토부)	
48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9-2	구	13	13					국(국토부)	
48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9-8	답	436	436					국(국토부)	
48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9-9	답	17	17					국(국토부)	
48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0-9	전	13	13					국(국토부)	
48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0-10	전	17	17					국(국토부)	
49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1-1	천	119	119					국(국토부)	
49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2-0	유	2,797	2,797					국(국토부)	
49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3-1	구	36	36					국(국토부)	
49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4-0	전	337	337					국(국토부)	
49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5-0	유	2,862	2,862					국(국토부)	
49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6-0	답	337	337					국(국토부)	
49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8-1	대	393	393					국(국토부)	
49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8-2	구	33	33					국(국토부)	
49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8-3	유	1,478	1,478					국(국토부)	
49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9-0	유	3,587	3,587					국(국토부)	
50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1-2	도	522	522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0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1-3	답	93	93					국(국토부)	
50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1-5	원	178	178					국(국토부)	
50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1-6	유	348	348					국(국토부)	
50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3-2	전	53	53					국(국토부)	
50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6-0	대	177	177					국(국토부)	
50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6-1	유	5,165	5,165					국(국토부)	
50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7-2	대	707	707					국(국토부)	
5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7-3	구	317	317					국(국토부)	
50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7-4	구	46	46					국(국토부)	
5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9-5	전	30	30					국(국토부)	
5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6-1	답	337	337					국(국토부)	
5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6-12	도	448	448					국(국토부)	
5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6-5	구	198	198					국(국토부)	
5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6-13	구	15	15					한국수자원공사	
5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7-1	원	3,412	3,412					국(국토부)	
5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7-2	도	727	727					국(국토부)	
5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7-4	답	63	63					국(국토부)	
5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7-5	답	195	195					국(국토부)	
5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7-7	답	142	142					국(국토부)	
5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8-1	대	329	329					국(국토부)	
5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8-2	도	96	96					국(국토부)	
5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8-3	답	96	96					국(국토부)	
5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8-5	유	199	199					국(국토부)	
5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8-6	원	1,975	1,975					한국수자원공사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9-1	유	1,457	1,457					한국수자원공사	
5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96-0	원	753	753					국(국토부)	
5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0-2	답	247	247					국(국토부)	
5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0-3	답	1,323	1,323					국(국토부)	
5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0-4	답	1,595	1,595					국(국토부)	
5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1-1	구	499	499					국(농림부)	
5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2-1	답	233	233					국(국토부)	
5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6-2	답	193	193					국(국토부)	
5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7-1	답	238	238					국(국토부)	
5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7-2	답	3,391	3,391					국(국토부)	
5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7-3	답	3,960	3,960					한국수자원공사	
5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8-1	답	2,317	2,317					국(국토부)	
5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8-2	답	3,107	3,107					국(국토부)	
5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8-3	답	1,726	1,726					국(국토부)	
5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9-1	답	1,673	1,673					국(농림부)	
5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9-2	답	2,737	2,737					국(국토부)	
5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9-3	답	446	446					국(국토부)	
5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9-4	답	493	493					국(국토부)	
5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0-1	답	5,374	5,374					국(국토부)	
5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0-2	답	2,007	2,007					국(국토부)	
5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0-3	답	2,235	2,235					국(국토부)	
5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0-4	답	496	496					국(국토부)	
5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0-6	답	220	220					한국수자원공사	
5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1-1	답	2,099	2,099					국(국토부)	
5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1-2	답	3,868	3,868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1-3	구	1,527	1,527					국(농림부)	
5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1-4	잡	1,260	1,260					국(국토부)	
5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1-6	구	36	36					국(농림부)	
5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2-1	구	788	788					국(농림부)	
5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2-2	도	626	626					국(농림부)	
5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4-1	답	758	758					국(국토부)	
5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8-1	답	4,076	4,076					국(국토부)	
5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8-2	답	6,628	6,628					국(국토부)	
5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8-3	답	1,159	1,159					한국수자원공사	
5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8-5	답	26	26					국(국토부)	
5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82-1	구	129	129					국	
5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82-2	도	241	241					국(농림부)	
5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83-1	답	2,926	2,926					국(국토부)	
5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83-2	답	1,019	1,019					국(국토부)	
5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23-12	구	20	20					국(농림부)	
5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6-4	천	3,802	3,802					국(국토부)	
5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8	도	40	40					국	
5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17	도	169	169					국(국토부)	
5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29	도	43	43					국	
5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30	도	66	66					국	
5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38	도	507	507					국	
5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41	도	64	64					국	
5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42	도	798	798					국	
5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6-3	천	76	76					국(국토부)	
5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8-0	도	149	149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9-2	도	12	12					국(국토부)	
576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9	도	222	222	1469-9	도	222	222	국(국토부)	
577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17	장	1,429	1,429	1469-17	장	1,429	1,429	국(국토부)	
578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6	임	97	97	1469-26	임	97	97	국(국토부)	
579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7	임	3,808	3,808	1469-27	임	3,808	3,808	국(국토부)	
580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8	임	4,805	4,805	1469-28	임	4,805	4,805	국(국토부)	
581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9	임	1,325	1,325	1469-29	임	1,325	1,325	국(국토부)	
582	인천시 서구 오류동		공유		39,461.3		공유		39,461.3		
583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260,303.2		수도권 매립지		260,303.2		
584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2,500.0		수도권 매립지		2,500.0		
585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108,774.0		수도권 매립지		108,774.0		
586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40,860.7		수도권 매립지		40,860.7		
587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59,708.3		수도권 매립지		59,708.3		
588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547,108.0		수도권 매립지		547,108.0		
589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63,703.1		수도권 매립지		63,703.1		
590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133,012.1		수도권 매립지		133,012.1		
591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32,006.9		수도권 매립지		32,006.9		
592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38,873.4		수도권 매립지		38,873.4		
593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50,947.2		수도권 매립지		50,947.2		
594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35,141.7		수도권 매립지		35,141.7		
595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30,772.8		수도권 매립지		30,772.8		

▶ 상하수도구역(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 200-18	임	402	402.00	산 200-18	임	402	402.00	문화유씨 문숙공파 종회	서울특별시 동작구대방동385-24

Ⅱ. 사용토지

▶ 항만구역 (변경삭제)

▶ 상하수도구역(변경)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6	천	18,939	10.00					국(국토부)	
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10	천	18,521	26.00					국(국토부)	
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85-4	답	417	6.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85-11	구	1,570	16.00					국(국토부)	
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4	답	78	6.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12	답	301	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13	구	144	2.00					국(농림부)	
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14	답	241	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17	답	654	10.00					국(국토부)	
1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18	답	96	1.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4-30	도	1,516	2.00					국(농림부)	
1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4-31	도	7,739	9.00					국(농림부)	
1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4-36	구	8,146	19.00					국(농림부)	
1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4-40	구	1,192	1.00					국(농림부)	
1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4-43	도	614	4.00					국(농림부)	
1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5-1	답	349	7.00					국(국토부)	
1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5-2	답	140	3.00					국(국토부)	
1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5-3	답	297	5.00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5-4	답	1,661	14.00					국(국토부)	
2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9-3	답	179	1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9-4	답	932	1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10-4	답	800	1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0-4	답	5,516	5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3-5	답	724	30.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4-7	답	521	11.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4-8	답	4,172	1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4-9	구	332	3.00					국(농림부)	
2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34-4	답	5,401	5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40-4	답	229	2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42-3	답	3,723	27.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54-5	구	521	3.00					국(농림부)	
3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55-3	답	2,922	3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56-3	답	293	2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5-4	답	27	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5-5	답	362	14.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5-6	답	900	16.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6-4	답	893	10.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6-5	답	1,639	14.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6-6	답	3,473	2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7-4	답	4,047	2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7-5	답	3,150	17.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8-1	답	3,785	14.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1-8	구	1,897	38.00					국(농림부)	
4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12	답	92	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13	답	369	1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4-11	답	282	1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4-12	답	341	20.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7-11	답	196	17.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7-12	답	93	1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5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8-12	답	54	6.00					국(국토부)	
5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81-71	도	79	1.00					국(국토부)	
5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81-73	도	391	1.00					국(국토부)	
5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7-14	도	125	2.00					국(농림부)	
5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7-17	도	252	2.00					국(농림부)	
5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7-18	도	517	3.00					국(농림부)	
5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7-19	도	475	3.00					국(농림부)	
5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9-4	구	73	8.00					국(농림부)	
5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9-7	구	1,419	35.00					국(농림부)	
5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00-5	전	2,244	16.00					김포시	
6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4	구	63	23.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6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9	답	40	6.00					김포시	
6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14	답	324	23.00					김포시	
6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21	답	684	44.00					김포시	
6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1-2	구	36	7.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6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1-3	구	130	21.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6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1-4	구	10	1.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6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1-8	답	89	4.00					김포시	
6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2-2	구	69	14.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6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5-3	답	155	27.00					김포시	
7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9-8	구	286	6.00					김포시	
7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0-3	답	26	1.00					김포시	
7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1-2	구	41	3.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7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1-5	답	129	11.00					김포시	
7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1-6	구	32	4.00					김포시	
7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2-1	구	212	10.00					김포시	
7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4-1	구	737	23.00					김포시	
7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5-1	구	215	7.00					김포시	
7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6-8	구	2,178	10.00					김포시	
7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6-9	구	443	12.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8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00-4	구	5,249	9.00					한국외환은행	
8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06-15	구	1,881	12.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8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06-18	구	61	1.00					김포시	
8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19	대	248	17.00					김포시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8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46	임	1,445	28.00					김포시	
8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49	대	798	39.00					김포시	
8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1	대	575	16.00					김포시	
8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2	잡	313	10.00					김포시	
8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3	잡	332	9.00					김포시	
8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5	잡	422	12.00					김포시	
9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7	잡	243	2.00					김포시	
9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2	대	173	2.00					김포시	
9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3	대	391	11.00					김포시	
9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4	대	231	11.00					김포시	
9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5	대	381	14.00					김포시	
9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8	임	441	9.00					김포시	
9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70	임	576	9.00					김포시	
9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81	임	1,449	31.00					김포시	
9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8-7	전	142	5.00					김포시	
9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54-15	임	575	16.00					김포시	
10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54-21	임	102	1.00					김포시	
10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3	구	327	5.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4	구	58	1.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5	답	219	1.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51	구	853	6.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0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77	구	668	10.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79	구	745	2.00					김포시	
10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7-1	답	141	6.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7-2	답	288	1.00					김포시	
10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7-5	답	474	15.00					김포시	
11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77-0	도	7,856	199.00					김포시	
11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78-0	도	4,882	173.00					김포시	
1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6	천	5,275	20.00					국(국토부)	
1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14	천	261	2.00					국(국토부)	
114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1-0	수	73,068	40.00					김포시	
115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2	임	702	21.00					김포시	
116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3	임	2,073	41.00					김포시	
117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6	임	66	4.00					김포시	
118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7	임	1,187	65.00					김포시	
119	인천시 서구 경서동	330-1	도	32,385	370.00	330-1	도	32,385	370.00	인천시	
120	인천시 서구 경서동	355-2	제	367	2.00	355-2	제	367	2.00	국(국토부)	
121	인천시 서구 경서동	363-283	도	703	33.00	363-283	도	703	33.00	인천시	
122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4-15	제	357	4.00	374-15	제	357	4.00	국(국토부)	
123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4-19	답	512	6.00	374-19	답	512	6.00	인천시	
124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4-20	답	707	15.00	374-20	답	707	15.00	국(국토부)	
125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6-	잡	350	11.00	376-	잡	350	11.00	인천시	
126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7-1	답	588	12.00	377-1	답	588	12.00	인천시	
127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0	도	12,170	94.00	514-0	도	12,170	94.00	국(농림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28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1	도	2,122	18.00	514-1	도	2,122	18.00	국(국토부)	
129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2	도	1,400	12.00	514-2	도	1,400	12.00	국(농림부)	
130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3	철	494	5.00	514-3	철	494	5.00	국(국토부)	
131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4	도	1,023	9.00	514-4	도	1,023	9.00	국(국토부)	
132	인천시 서구 경서동	543-0	제	16,290	51.00	543-0	제	16,290	51.00	국(농림부)	
133	인천시 서구 경서동	543-2	제	1,604	20.00	543-2	제	1,604	20.00	국(농림부)	
134	인천시 서구 경서동	566-0	도	14,142	32.00	566-0	도	14,142	32.00	국(농림부)	
135	인천시 서구 경서동	712-0	도	18,834	25.00	712-0	도	18,834	25.00	국(국토부)	
136	인천시 서구 경서동	713-0	철	10,285	7.00	713-0	철	10,285	7.00	국(철도청)	
137	인천시 서구 경서동		매립지		183.00		매립지		183.00	수도권매립지	
138	인천시 서구 경서동		매립지		669.00		매립지		669.00	수도권매립지	
139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 200-10	임	3,787	64.00	산 200-10	임	3,787	64.00	인천시	
140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 200-12	임	684	62.00	산 200-12	임	684	62.00	문화유씨 문숙공파 종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85-24
141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204-3	임	1,130	21.00	산204-3	임	1,130	21.00	국(산림청)	
142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205-4	임	59	1.00	산205-4	임	59	1.00	국(산림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3-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지구를 분리하여 실시계획(변경 9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당초)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변경) 경인항(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교통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원

2) 사 업 비 : (당초) 1,523,389백만원

(변경) 802,701백만원

3) 공사내용

(당초)

○ 인천지구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갑문시설 2기,
도로 1.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 김포지구 : 접안시설 1,255m,호안 3,141m, 갑문시설 1기, 도로 0.88km
운영건물 14동, 부대시설 1식, 마리나 계류시설 등 1식

(변경)

○ 김포지구 : 접안시설 1,255m,호안 3,141m, 갑문시설 1기, 도로 0.88km
운영건물 14동, 부대시설 1식, 마리나 계류시설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별첨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김포지구 토지세목조서

Ⅰ. 수용토지

▶ 항만구역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7	천	6,240	6,240	104-7	천	6,240	6,240	국(농림부)	
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8	천	368	368	104-8	천	368	368	국(농림부)	
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12	천	89	89	104-12	천	89	89	국(농림부)	
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17	천	176	176	104-17	천	176	176	국(농림부)	
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18	천	45	45	104-18	천	45	45	국(농림부)	
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19	천	2,173	2,173	104-19	천	2,173	2,173	국(농림부)	
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5-3	구	179	179	195-3	구	179	179	국(농림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6-1	답	4	4	196-1	답	4	4	국(국토부)	
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6-2	답	50	50	196-2	답	50	50	국(국토부)	
1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6-3	답	235	235	196-3	답	235	235	국(국토부)	
1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1	답	323	323	197-1	답	323	323	한국수자원공사	
1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2	답	1,318	1,318	197-2	답	1,318	1,318	국(국토부)	
1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4	답	127	127	197-4	답	127	127	국(국토부)	
1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8	구	25	25	197-8	구	25	25	국(농림부)	
1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14	답	207	207	272-14	답	207	207	국(국토부)	
1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19	답	91	91	272-19	답	91	91	국(국토부)	
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38	임	101	101	31-38	임	101	101	국(국토부)	
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39	임	381	381	31-39	임	381	381	국(국토부)	
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41	임	690	690	31-41	임	690	690	국(국토부)	
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42	임	460	460	31-42	임	460	460	국(국토부)	
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8	구	139	139	39-8	구	139	139	국(국토부)	
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14	구	122	122	39-14	구	122	122	국(국토부)	
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19	구	29	29	39-19	구	29	29	국(국토부)	
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20	전	56	56	39-20	전	56	56	국(기재부)	
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21	구	166	166	39-21	구	166	166	경기도	
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22	구	143	143	39-22	구	143	143	국(국토부)	
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23	전	99	99	39-23	전	99	99	국(기재부)	
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9-24	도	244	244	39-24	도	244	244	김포시	
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19	구	6	6	40-19	구	6	6	국(국토부)	
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0	구	167	167	40-30	구	167	167	국(국토부)	
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1	구	67	67	40-31	구	67	67	국(국토부)	
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2	구	1	1	40-32	구	1	1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3	구	2	2	40-33	구	2	2	국(국토부)	
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4	구	119	119	40-34	구	119	119	국(국토부)	
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0-35	구	156	156	40-35	구	156	156	국(국토부)	
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1-3	전	179	179	41-3	전	179	179	국(국토부)	
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1-11	전	610	610	41-11	전	610	610	국(국토부)	
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1-15	구	3,056	3,056	41-15	구	3,056	3,056	국(국토부)	
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2-1	구	370	370	42-1	구	370	370	국(국토부)	
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2-2	잡	2,598	2,598	42-2	잡	2,598	2,598	국(국토부)	
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3-0	전	694	694	43-0	전	694	694	국(국토부)	
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4-0	전	678	678	44-0	전	678	678	국(국토부)	
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5-1	구	998	998	45-1	구	998	998	국(국토부)	
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5-2	전	2,807	2,807	45-2	전	2,807	2,807	국(국토부)	
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5-4	구	2,850	2,850	45-4	구	2,850	2,850	국(국토부)	
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5-5	전	655	655	45-5	전	655	655	국(국토부)	
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	전	913	913	46-1	전	913	913	국(국토부)	
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3	전	1,187	1,187	46-3	전	1,187	1,187	국(기재부)	
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4	구	188	188	46-4	구	188	188	국(국토부)	
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6	전	141	141	46-6	전	141	141	국(국토부)	
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7	구	1	1	46-7	구	1	1	국(국토부)	
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8	구	891	891	46-8	구	891	891	국(국토부)	
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9	구	12	12	46-9	구	12	12	국(국토부)	
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1	전	1,247	1,247	46-11	전	1,247	1,247	국(기재부)	
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2	구	160	160	46-12	구	160	160	국(국토부)	
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3	전	133	133	46-13	전	133	133	국(국토부)	
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4	구	24	24	46-14	구	24	24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5	구	162	162	46-15	구	162	162	국(국토부)	
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6	구	281	281	46-16	구	281	281	국(국토부)	
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7	전	2,247	2,247	46-17	전	2,247	2,247	김포시	
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8	전	148	148	46-18	전	148	148	국(기재부)	
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19	구	137	137	46-19	구	137	137	국(국토부)	
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20	구	128	128	46-20	구	128	128	국(국토부)	
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21	전	206	206	46-21	전	206	206	국(기재부)	
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6-22	전	966	966	46-22	전	966	966	김포시	
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	구	177	177	48-1	구	177	177	국(국토부)	
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	전	279	279	48-2	전	279	279	국(농림부)	
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3	도	254	254	48-3	도	254	254	국(국토부)	
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4	구	61	61	48-4	구	61	61	국(국토부)	
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5	전	1,059	1,059	48-5	전	1,059	1,059	국(농림부)	
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6	도	155	155	48-6	도	155	155	국(기재부)	
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7	전	185	185	48-7	전	185	185	국(농림부)	
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8	구	123	123	48-8	구	123	123	국(국토부)	
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9	구	102	102	48-9	구	102	102	국(국토부)	
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0	도	330	330	48-10	도	330	330	국(국토부)	
7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1	구	544	544	48-11	구	544	544	국(국토부)	
7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2	구	35	35	48-12	구	35	35	국(국토부)	
7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3	전	109	109	48-13	전	109	109	국(농림부)	
7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4	전	217	217	48-14	전	217	217	국(농림부)	
8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5	도	48	48	48-15	도	48	48	국(국토부)	
8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6	도	233	233	48-16	도	233	233	국(기재부)	
8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7	구	1,154	1,154	48-17	구	1,154	1,154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8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8	구	1	1	48-18	구	1	1	국(국토부)	
8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19	도	441	441	48-19	도	441	441	국(국토부)	
8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0	구	397	397	48-20	구	397	397	국(국토부)	
8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1	전	212	212	48-21	전	212	212	국(농림부)	
8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2	전	296	296	48-22	전	296	296	국(농림부)	
8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3	구	1,569	1,569	48-23	구	1,569	1,569	국(국토부)	
8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8-24	구	12	12	48-24	구	12	12	국(국토부)	
9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1	구	612	612	49-1	구	612	612	경기도	
9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4	전	80	80	49-4	전	80	80	국(국토부)	
9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5	전	87	87	49-5	전	87	87	국(기재부)	
9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6	전	54	54	49-6	전	54	54	국(기재부)	
9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7	구	47	47	49-7	구	47	47	국(농림부)	
9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8	전	919	919	49-8	전	919	919	국(국토부)	
9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9	전	786	786	49-9	전	786	786	국(기재부)	
9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9-10	구	259	259	49-10	구	259	259	국(농림부)	
9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0-4	구	46	46	50-4	구	46	46	국(농림부)	
9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0-5	구	536	536	50-5	구	536	536	국(농림부)	
10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5	전	142	142	51-5	전	142	142	국(농림부)	
10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9	전	487	487	51-9	전	487	487	국(농림부)	
10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10	전	174	174	51-10	전	174	174	국(농림부)	
10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11	전	714	714	51-11	전	714	714	국(농림부)	
10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3	구	899	899	52-3	구	899	899	국(국토부)	
10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4	전	133	133	52-4	전	133	133	국(기재부)	
10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1	구	260	260	52-11	구	260	260	국(국토부)	
10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2	구	169	169	52-12	구	169	169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3	전	41	41	52-13	전	41	41	국(기재부)	
10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4	전	5	5	52-14	전	5	5	국(기재부)	
1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5	전	5	5	52-15	전	5	5	국(기재부)	
1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6	전	6	6	52-16	전	6	6	국(기재부)	
1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7	전	1	1	52-17	전	1	1	국(기재부)	
1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8	전	544	544	52-18	전	544	544	국(기재부)	
1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2-19	전	649	649	52-19	전	649	649	국(기재부)	
1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4	천	9,157	9,157	68-4	천	9,157	9,157	국(농림부)	
1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9	천	4,307	4,307	68-9	천	4,307	4,307	국(농림부)	
1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10	천	5,694	5,694	68-10	천	5,694	5,694	국(농림부)	
1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14	천	261	261	68-14	천	261	261	국(농림부)	
1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15	천	95	95	68-15	천	95	95	국(농림부)	
1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18	천	5,818	5,818	68-18	천	5,818	5,818	국(농림부)	
1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7-2	답	1,127	1,127	77-2	답	1,127	1,127	국(국토부)	
1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7-9	구	321	321	77-9	구	321	321	국(농림부)	
1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7-14	구	133	133	77-14	구	133	133	국(농림부)	
1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7-15	구	990	990	77-15	구	990	990	국(농림부)	
1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7-16	답	1,391	1,391	77-16	답	1,391	1,391	국(국토부)	
1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8-4	답	1,052	1,052	78-4	답	1,052	1,052	국(국토부)	
1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8 5	답	379	379	78 5	답	379	379	국(국토부)	
1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8-6	답	397	397	78-6	답	397	397	국(국토부)	
1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8-7	답	2,961	2,961	78-7	답	2,961	2,961	국(국토부)	
1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9-2	답	289	289	79-2	답	289	289	국(국토부)	
1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9-3	답	3,881	3,881	79-3	답	3,881	3,881	국(국토부)	
1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9-4	답	2,997	2,997	79-4	답	2,997	2,997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9-5	답	941	941	79-5	답	941	941	국(국토부)	
1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0-3	답	1,226	1,226	80-3	답	1,226	1,226	한국수자원공사	
1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0-4	답	1,365	1,365	80-4	답	1,365	1,365	한국수자원공사	
1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0-7	답	2,273	2,273	80-7	답	2,273	2,273	국(국토부)	
1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0-8	답	233	233	80-8	답	233	233	국(국토부)	
1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1-3	답	2,311	2,311	81-3	답	2,311	2,311	한국수자원공사	
1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1-4	도	305	305	81-4	도	305	305	국(농림부)	
1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82-4	답	1,740	1,740	82-4	답	1,740	1,740	한국수자원공사	
1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1-1	구	69	69	91-1	구	69	69	국(국토부)	
1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1-6	구	1,180	1,180	91-6	구	1,180	1,180	국(국토부)	
1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6-1	구	6,100	6,100	96-1	구	6,100	6,100	국(농림부)	
1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6-13	구	12	12	96-13	구	12	12	국(농림부)	
1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6-14	구	21	21	96-14	구	21	21	국(농림부)	
1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1	답	43	43	97-1	답	43	43	국(국토부)	
1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2	답	399	399	97-2	답	399	399	국(국토부)	
1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3	답	14	14	97-3	답	14	14	국(국토부)	
1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6	답	151	151	97-6	답	151	151	한국수자원공사	
1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7	답	231	231	97-7	답	231	231	한국수자원공사	
1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8-1	답	979	979	98-1	답	979	979	국(국토부)	
1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8-2	답	936	936	98-2	답	936	936	국(국토부)	
1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8-5	답	269	269	98-5	답	269	269	한국수자원공사	
1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8-6	답	188	188	98-6	답	188	188	한국수자원공사	
1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1	답	1,331	1,331	99-1	답	1,331	1,331	국(국토부)	
1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2	답	883	883	99-2	답	883	883	국(국토부)	
1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3	답	992	992	99-3	답	992	992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13	답	226	226	99-13	답	226	226	한국수자원공사	
1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14	답	133	133	99-14	답	133	133	한국수자원공사	
1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15	답	103	103	99-15	답	103	103	한국수자원공사	
1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1	답	1,734	1,734	100-1	답	1,734	1,734	국(국토부)	
1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2	답	1,219	1,219	100-2	답	1,219	1,219	국(국토부)	
1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7	답	242	242	100-7	답	242	242	한국수자원공사	
1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8	답	137	137	100-8	답	137	137	한국수자원공사	
1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1-1	답	2,001	2,001	101-1	답	2,001	2,001	국(국토부)	
1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1-2	답	1,774	1,774	101-2	답	1,774	1,774	국(국토부)	
1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1-5	답	215	215	101-5	답	215	215	한국수자원공사	
1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1-6	답	188	188	101-6	답	188	188	한국수자원공사	
1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2-1	답	1,381	1,381	102-1	답	1,381	1,381	국(국토부)	
1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2-2	답	839	839	102-2	답	839	839	국(국토부)	
1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2-5	답	149	149	102-5	답	149	149	한국수자원공사	
1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2-6	답	92	92	102-6	답	92	92	한국수자원공사	
1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1	답	1,711	1,711	103-1	답	1,711	1,711	국(국토부)	
1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2	답	363	363	103-2	답	363	363	국(국토부)	
1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3	답	5	5	103-3	답	5	5	한국수자원공사	
17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4	답	397	397	103-4	답	397	397	한국수자원공사	
17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6	답	1,352	1,352	103-6	답	1,352	1,352	한국수자원공사	
17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7	답	36	36	103-7	답	36	36	한국수자원공사	
17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1	도	848	848	104-1	도	848	848	국(농림부)	
18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2	답	1,482	1,482	104-2	답	1,482	1,482	국(국토부)	
18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3	도	231	231	104-3	도	231	231	국(농림부)	
18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5	도	620	620	104-5	도	620	620	국(농림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8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6	답	1,645	1,645	104-6	답	1,645	1,645	한국수자원공사	
18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5-1	답	2,548	2,548	105-1	답	2,548	2,548	국(국토부)	
18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5-2	답	3,084	3,084	105-2	답	3,084	3,084	국(국토부)	
18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5-3	답	1,892	1,892	105-3	답	1,892	1,892	한국수자원공사	
18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6-1	답	2,288	2,288	106-1	답	2,288	2,288	국(국토부)	
18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6-2	답	2,976	2,976	106-2	답	2,976	2,976	국(국토부)	
18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6-3	답	555	555	106-3	답	555	555	국(국토부)	
19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7-1	답	5,022	5,022	107-1	답	5,022	5,022	국(국토부)	
19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7-2	답	3,197	3,197	107-2	답	3,197	3,197	국(국토부)	
19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1	답	2,929	2,929	108-1	답	2,929	2,929	국(국토부)	
19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2	답	3,831	3,831	108-2	답	3,831	3,831	국(국토부)	
19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3	답	678	678	108-3	답	678	678	국(국토부)	
19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9	답	1,009	1,009	108-9	답	1,009	1,009	국(국토부)	
19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5	구	10	10	108-5	구	10	10	국(농림부)	
19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8	구	331	331	108-8	구	331	331	국(농림부)	
19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8-10	구	86	86	108-10	구	86	86	국(농림부)	
19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1	구	101	101	109-1	구	101	101	국(농림부)	
20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2	답	2,007	2,007	109-2	답	2,007	2,007	국(국토부)	
20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3	답	803	803	109-3	답	803	803	국(국토부)	
20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4	구	253	253	109-4	구	253	253	국(농림부)	
20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5	구	1,455	1,455	109-5	구	1,455	1,455	국(농림부)	
20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6	구	924	924	109-6	구	924	924	국(농림부)	
20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12	구	17,157	17,157	109-12	구	17,157	17,157	국(농림부)	
20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0-1	답	2,341	2,341	110-1	답	2,341	2,341	국(국토부)	
20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0-2	답	1,098	1,098	110-2	답	1,098	1,098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1-2	답	3,256	3,256	111-2	답	3,256	3,256	국(국토부)	
20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1-3	전	4,211	4,211	111-3	전	4,211	4,211	국(국토부)	
2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2-1	답	4,023	4,023	112-1	답	4,023	4,023	국(국토부)	
2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2-2	답	3,964	3,964	112-2	답	3,964	3,964	국(국토부)	
2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4-1	답	2,962	2,962	114-1	답	2,962	2,962	국(국토부)	
2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4-2	답	2,017	2,017	114-2	답	2,017	2,017	국(국토부)	
2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4-3	답	2,955	2,955	114-3	답	2,955	2,955	국(국토부)	
2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5-1	답	5,507	5,507	115-1	답	5,507	5,507	국(국토부)	
2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5-2	답	7,858	7,858	115-2	답	7,858	7,858	국(국토부)	
2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5-3	답	2,136	2,136	115-3	답	2,136	2,136	국(국토부)	
2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6-1	도	496	496	116-1	도	496	496	국(농림부)	
2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6-2	답	4,635	4,635	116-2	답	4,635	4,635	국(국토부)	
2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7-1	답	1,828	1,828	117-1	답	1,828	1,828	국(국토부)	
2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7-2	답	1,527	1,527	117-2	답	1,527	1,527	국(국토부)	
2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8-1	답	3,041	3,041	118-1	답	3,041	3,041	국(국토부)	
2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8-2	답	1,924	1,924	118-2	답	1,924	1,924	국(국토부)	
2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9-1	답	3,170	3,170	119-1	답	3,170	3,170	국(국토부)	
2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9-2	답	3,736	3,736	119-2	답	3,736	3,736	국(국토부)	
2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0-1	답	1,881	1,881	120-1	답	1,881	1,881	국(국토부)	
2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0-2	답	3,997	3,997	120-2	답	3,997	3,997	국(국토부)	
2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0-3	답	1,035	1,035	120-3	답	1,035	1,035	국(국토부)	
2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1-1	답	2,929	2,929	121-1	답	2,929	2,929	국(국토부)	
2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1-2	답	1,765	1,765	121-2	답	1,765	1,765	국(국토부)	
2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1-3	답	1,187	1,187	121-3	답	1,187	1,187	국(국토부)	
2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2-1	답	2,175	2,175	122-1	답	2,175	2,175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2-2	답	6,003	6,003	122-2	답	6,003	6,003	국(국토부)	
2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3-1	답	3,088	3,088	123-1	답	3,088	3,088	국(국토부)	
2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3-2	답	3,035	3,035	123-2	답	3,035	3,035	국(국토부)	
2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4-1	도	939	939	124-1	도	939	939	국(농림부)	
2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4-2	답	2,364	2,364	124-2	답	2,364	2,364	국(국토부)	
2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4-3	답	671	671	124-3	답	671	671	국(국토부)	
2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6-0	구	293	293	126-0	구	293	293	국(국토부)	
2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6-3	구	1,761	1,761	126-3	구	1,761	1,761	국(국토부)	
2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6-1	구	93	93	126-1	구	93	93	경기도	
2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6-2	구	56	56	126-2	구	56	56	국(국토부)	
2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6-4	구	1,014	1,014	126-4	구	1,014	1,014	국(국토부)	
2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7-0	구	65	65	127-0	구	65	65	국(국토부)	
2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7-1	도	152	152	127-1	도	152	152	김포시	
2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7-2	구	441	441	127-2	구	441	441	국(국토부)	
2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9-1	답	4,003	4,003	129-1	답	4,003	4,003	국(국토부)	
2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9-2	답	1,355	1,355	129-2	답	1,355	1,355	국(국토부)	
2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9-3	답	2,572	2,572	129-3	답	2,572	2,572	국(국토부)	
2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0-1	답	2,826	2,826	130-1	답	2,826	2,826	국(국토부)	
2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0-2	답	1,137	1,137	130-2	답	1,137	1,137	국(국토부)	
2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0-3	답	4,030	4,030	130-3	답	4,030	4,030	국(국토부)	
2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1-1	답	1,263	1,263	131-1	답	1,263	1,263	국(국토부)	
2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1-2	답	4,017	4,017	131-2	답	4,017	4,017	국(국토부)	
2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2-1	답	1,177	1,177	132-1	답	1,177	1,177	국(국토부)	
2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2-2	답	4,526	4,526	132-2	답	4,526	4,526	국(국토부)	
2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3-1	답	2,291	2,291	133-1	답	2,291	2,291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3-2	답	972	972	133-2	답	972	972	국(국토부)	
2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3-3	답	2,916	2,916	133-3	답	2,916	2,916	국(국토부)	
2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5-1	답	1,802	1,802	135-1	답	1,802	1,802	국(국토부)	
2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5-2	답	3,048	3,048	135-2	답	3,048	3,048	국(국토부)	
2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6-1	도	2,714	2,714	136-1	도	2,714	2,714	국(농림부)	
2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6-2	답	3,524	3,524	136-2	답	3,524	3,524	국(국토부)	
2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7-1	답	1,626	1,626	137-1	답	1,626	1,626	국(국토부)	
2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7-2	답	4,572	4,572	137-2	답	4,572	4,572	국(국토부)	
2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7-3	답	2,089	2,089	137-3	답	2,089	2,089	국(국토부)	
2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9-1	답	3,593	3,593	139-1	답	3,593	3,593	국(국토부)	
2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9-2	답	1,921	1,921	139-2	답	1,921	1,921	국(국토부)	
2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9-3	답	2,010	2,010	139-3	답	2,010	2,010	국(국토부)	
2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0-1	답	2,860	2,860	140-1	답	2,860	2,860	국(국토부)	
2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0-2	답	1,164	1,164	140-2	답	1,164	1,164	국(국토부)	
2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0-3	답	5,382	5,382	140-3	답	5,382	5,382	국(국토부)	
2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1-1	답	2,532	2,532	141-1	답	2,532	2,532	국(국토부)	
2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1-2	답	6,245	6,245	141-2	답	6,245	6,245	국(국토부)	
2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4-1	답	2,830	2,830	144-1	답	2,830	2,830	국(국토부)	
27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4-2	답	2,820	2,820	144-2	답	2,820	2,820	국(국토부)	
27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1	도	127	127	145-1	도	127	127	국(농림부)	
27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2	답	3,517	3,517	145-2	답	3,517	3,517	국(국토부)	
27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3	답	826	826	145-3	답	826	826	국(국토부)	
28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4	답	2,122	2,122	145-4	답	2,122	2,122	국(국토부)	
28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5	답	1,841	1,841	145-5	답	1,841	1,841	국(국토부)	
28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6	답	1,808	1,808	145-6	답	1,808	1,808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8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5-23	도	3,883	3,883	145-23	도	3,883	3,883	국(농림부)	
28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6-1	답	2,694	2,694	146-1	답	2,694	2,694	국(국토부)	
28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6-2	답	3,139	3,139	146-2	답	3,139	3,139	국(국토부)	
28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49-1	구	2,430	2,430	149-1	구	2,430	2,430	국(농림부)	
28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2-2	답	1,168	1,168	152-2	답	1,168	1,168	국(국토부)	
28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4-1	답	5,324	5,324	154-1	답	5,324	5,324	국(국토부)	
28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4-2	답	3,868	3,868	154-2	답	3,868	3,868	국(국토부)	
29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5-1	답	1,617	1,617	155-1	답	1,617	1,617	국(국토부)	
29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5-2	답	4,830	4,830	155-2	답	4,830	4,830	국(국토부)	
29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7-1	답	2,529	2,529	157-1	답	2,529	2,529	국(국토부)	
29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7-2	답	1,435	1,435	157-2	답	1,435	1,435	국(국토부)	
29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7-3	답	5,220	5,220	157-3	답	5,220	5,220	국(국토부)	
29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8-1	답	3,488	3,488	158-1	답	3,488	3,488	국(국토부)	
29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8-2	답	707	707	158-2	답	707	707	국(국토부)	
29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8-3	답	2,136	2,136	158-3	답	2,136	2,136	국(국토부)	
29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8-4	답	2,169	2,169	158-4	답	2,169	2,169	국(국토부)	
29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8-5	답	893	893	158-5	답	893	893	국(국토부)	
30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9-2	도	102	102	159-2	도	102	102	국(국토부)	
30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9-6	구	98	98	159-6	구	98	98	한국수자원공사	
30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9-9	도	24	24	159 9	도	24	24	한국수자원공사	
30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9-10	구	10	10	159 10	구	10	10	한국수자원공사	
30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0-1	답	3,914	3,914	160-1	답	3,914	3,914	국(국토부)	
30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0-2	답	2,641	2,641	160-2	답	2,641	2,641	국(국토부)	
30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0-3	답	3,679	3,679	160-3	답	3,679	3,679	국(국토부)	
30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4-1	답	3,012	3,012	164-1	답	3,012	3,012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4-2	답	2,218	2,218	164-2	답	2,218	2,218	국(국토부)	
30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64-3	답	1,831	1,831	164-3	답	1,831	1,831	국(국토부)	
3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4-1	답	3,957	3,957	174-1	답	3,957	3,957	국(국토부)	
3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4-2	답	3,570	3,570	174-2	답	3,570	3,570	국(국토부)	
3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4-3	도	2,737	2,737	174-3	도	2,737	2,737	국(농림부)	
3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5-1	답	889	889	175-1	답	889	889	국(국토부)	
3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5-2	답	3,137	3,137	175-2	답	3,137	3,137	국(국토부)	
3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6-1	답	2,268	2,268	176-1	답	2,268	2,268	국(국토부)	
3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6-2	답	1,590	1,590	176-2	답	1,590	1,590	국(농림부)	
3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7-1	답	3,636	3,636	177-1	답	3,636	3,636	국(농림부)	
3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7-2	답	321	321	177-2	답	321	321	국(농림부)	
3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7-3	답	929	929	177-3	답	929	929	국(농림부)	
3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7-4	답	2,367	2,367	177-4	답	2,367	2,367	국(국토부)	
3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8-1	답	641	641	178-1	답	641	641	국(국토부)	
3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8-2	답	1,597	1,597	178-2	답	1,597	1,597	국(국토부)	
3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8-3	답	1,837	1,837	178-3	답	1,837	1,837	국(국토부)	
3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8-4	답	896	896	178-4	답	896	896	국(국토부)	
3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1	답	925	925	179-1	답	925	925	국(국토부)	
3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2	답	1,139	1,139	179-2	답	1,139	1,139	국(국토부)	
3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3	답	209	209	179-3	답	209	209	국(국토부)	
3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4	답	213	213	179-4	답	213	213	국(국토부)	
3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1	답	627	627	180-1	답	627	627	국(국토부)	
3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2	답	433	433	180-2	답	433	433	국(국토부)	
3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3	답	878	878	180-3	답	878	878	국(국토부)	
3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4	답	757	757	180-4	답	757	757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5	도	246	246	180-5	도	246	246	국(농림부)	
3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1-2	도	142	142	181-2	도	142	142	국(국토부)	
3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2-2	도	126	126	182-2	도	126	126	국(국토부)	
3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2-4	구	46	46	182-4	구	46	46	국(국토부)	
3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6-2	도	721	721	186-2	도	721	721	국(국토부)	
3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6-4	구	231	231	186-4	구	231	231	국(국토부)	
3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9-1	답	544	544	189-1	답	544	544	국(국토부)	
3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9-2	답	2,979	2,979	189-2	답	2,979	2,979	국(국토부)	
3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9-3	답	643	643	189-3	답	643	643	국(국토부)	
3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2-1	답	1,463	1,463	192-1	답	1,463	1,463	국(국토부)	
3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2-2	답	914	914	192-2	답	914	914	국(국토부)	
3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4-1	답	3,758	3,758	194-1	답	3,758	3,758	국(국토부)	
3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4-2	답	1,471	1,471	194-2	답	1,471	1,471	국(국토부)	
3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4-3	답	3,379	3,379	194-3	답	3,379	3,379	국(국토부)	
3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6-1	답	2,420	2,420	196-1	답	2,420	2,420	국(국토부)	
3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6-2	답	3,289	3,289	196-2	답	3,289	3,289	국(국토부)	
3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7-1	답	3,947	3,947	197-1	답	3,947	3,947	국(국토부)	
3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7-2	답	4,036	4,036	197-2	답	4,036	4,036	국(국토부)	
3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7-3	도	483	483	197-3	도	483	483	국(농림부)	
3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8-1	답	2,469	2,469	198-1	답	2,469	2,469	국(국토부)	
3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8-2	답	5,117	5,117	198-2	답	5,117	5,117	국(국토부)	
3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9-1	답	4,099	4,099	199-1	답	4,099	4,099	국(국토부)	
3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99-2	답	4,354	4,354	199-2	답	4,354	4,354	국(국토부)	
3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2	도	582	582	200-2	도	582	582	국(국토부)	
3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3	답	109	109	200-3	답	109	109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5	답	60	60	200-5	답	60	60	국(국토부)	
3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6	구	23	23	200-6	구	23	23	국(국토부)	
3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7	답	86	86	200-7	답	86	86	국(국토부)	
3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8	답	112	112	200-8	답	112	112	국(국토부)	
3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0-13	구	23	23	200-13	구	23	23	국(국토부)	
3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1-1	답	3,941	3,941	201-1	답	3,941	3,941	국(국토부)	
3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1-2	답	3,660	3,660	201-2	답	3,660	3,660	국(국토부)	
3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1-3	답	3,960	3,960	201-3	답	3,960	3,960	국(국토부)	
3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3-1	답	4,030	4,030	203-1	답	4,030	4,030	국(국토부)	
3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3-2	답	4,026	4,026	203-2	답	4,026	4,026	국(국토부)	
3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4-1	답	2,324	2,324	204-1	답	2,324	2,324	국(국토부)	
3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4-2	답	3,309	3,309	204-2	답	3,309	3,309	국(국토부)	
3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4-3	답	2,360	2,360	204-3	답	2,360	2,360	국(국토부)	
3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5-1	도	579	579	205-1	도	579	579	국(농림부)	
3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5-2	도	273	273	205-2	도	273	273	국(농림부)	
3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7-2	도	248	248	207-2	도	248	248	국(국토부)	
3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7-3	구	86	86	207-3	구	86	86	국(국토부)	
3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7-4	구	129	129	207-4	구	129	129	국(국토부)	
37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8-2	도	205	205	208-2	도	205	205	국(국토부)	
37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8-3	답	116	116	208-3	답	116	116	국(국토부)	
37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8-4	구	86	86	208-4	구	86	86	국(국토부)	
37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9-1	답	2,063	2,063	209-1	답	2,063	2,063	국(국토부)	
38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9-2	답	3,101	3,101	209-2	답	3,101	3,101	국(국토부)	
38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09-3	답	2,102	2,102	209-3	답	2,102	2,102	국(국토부)	
38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0-1	답	4,805	4,805	210-1	답	4,805	4,805	한국수자원공사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8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1-2	도	509	509	211-2	도	509	509	국(국토부)	
38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1-3	답	182	182	211-3	답	182	182	국(국토부)	
38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1-4	답	198	198	211-4	답	198	198	국(국토부)	
38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2-2	구	3	3	212-2	구	3	3	국(국토부)	
38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12-3	답	23	23	212-3	답	23	23	국(국토부)	
38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2-3	답	7	7	222-3	답	7	7	한국수자원공사	
38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2-4	답	524	524	222-4	답	524	524	국(국토부)	
39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3-1	답	4,216	4,216	223-1	답	4,216	4,216	국(국토부)	
39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3-2	답	2,618	2,618	223-2	답	2,618	2,618	국(국토부)	
39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3-3	답	1,405	1,405	223-3	답	1,405	1,405	국(국토부)	
39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4-1	답	5,339	5,339	224-1	답	5,339	5,339	국(국토부)	
39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4-2	답	3,008	3,008	224-2	답	3,008	3,008	국(국토부)	
39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5-1	답	2,928	2,928	225-1	답	2,928	2,928	국(국토부)	
39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5-2	답	2,109	2,109	225-2	답	2,109	2,109	국(국토부)	
39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5-3	답	4,393	4,393	225-3	답	4,393	4,393	국(국토부)	
39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5-5	구	50	50	225-5	구	50	50	국(국토부)	
39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5-6	구	143	143	225-6	구	143	143	국(국토부)	
40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6-1	답	3,501	3,501	226-1	답	3,501	3,501	국(국토부)	
40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6-2	답	8,030	8,030	226-2	답	8,030	8,030	국(국토부)	
40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7-1	답	3,131	3,131	227-1	답	3,131	3,131	국(국토부)	
40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7-2	답	4,786	4,786	227-2	답	4,786	4,786	국(국토부)	
40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7-3	답	2,631	2,631	227-3	답	2,631	2,631	국(국토부)	
40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8-1	답	2,807	2,807	228-1	답	2,807	2,807	국(국토부)	
40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8-2	답	3,954	3,954	228-2	답	3,954	3,954	국(국토부)	
40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8-3	답	1,739	1,739	228-3	답	1,739	1,739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9-1	답	3,590	3,590	229-1	답	3,590	3,590	국(국토부)	
40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9-2	도	1,480	1,480	229-2	도	1,480	1,480	국(농림부)	
4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29-3	도	929	929	229-3	도	929	929	국(농림부)	
4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0-1	답	3,088	3,088	230-1	답	3,088	3,088	국(국토부)	
4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0-2	답	2,370	2,370	230-2	답	2,370	2,370	국(국토부)	
4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0-3	답	3,583	3,583	230-3	답	3,583	3,583	국(국토부)	
4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0-4	답	3,309	3,309	230-4	답	3,309	3,309	국(국토부)	
4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1-1	답	2,423	2,423	231-1	답	2,423	2,423	국(국토부)	
4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1-2	답	3,974	3,974	231-2	답	3,974	3,974	국(국토부)	
4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2-1	답	4,017	4,017	232-1	답	4,017	4,017	국(국토부)	
4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2-2	답	2,063	2,063	232-2	답	2,063	2,063	국(국토부)	
4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3-1	답	1,355	1,355	233-1	답	1,355	1,355	국(국토부)	
4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3-2	답	645	645	233-2	답	645	645	국(국토부)	
4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3-3	답	1,093	1,093	233-3	답	1,093	1,093	국(국토부)	
4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3-4	답	944	944	233-4	답	944	944	국(국토부)	
4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3-5	답	907	907	233-5	답	907	907	국(국토부)	
4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5-1	도	583	583	235-1	도	583	583	국(농림부)	
4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5-2	답	426	426	235-2	답	426	426	국(국토부)	
4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5-3	답	2,055	2,055	235-3	답	2,055	2,055	국(국토부)	
4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5-5	답	1	1	235-5	답	1	1	국(국토부)	
4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6-1	답	1,957	1,957	236-1	답	1,957	1,957	국(국토부)	
4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6-2	답	278	278	236-2	답	278	278	국(국토부)	
4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6-3	답	2,023	2,023	236-3	답	2,023	2,023	국(국토부)	
4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6-4	답	754	754	236-4	답	754	754	국(국토부)	
4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7-1	답	2,840	2,840	237-1	답	2,840	2,840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7-2	답	2,331	2,331	237-2	답	2,331	2,331	국(국토부)	
4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7-3	답	1,663	1,663	237-3	답	1,663	1,663	국(국토부)	
4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7-4	답	469	469	237-4	답	469	469	국(국토부)	
4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8-1	답	4,046	4,046	238-1	답	4,046	4,046	국(국토부)	
4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8-2	답	2,621	2,621	238-2	답	2,621	2,621	국(국토부)	
4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38-3	답	1,398	1,398	238-3	답	1,398	1,398	국(국토부)	
4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0-1	답	4,043	4,043	240-1	답	4,043	4,043	국(국토부)	
4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0-2	답	4,377	4,377	240-2	답	4,377	4,377	국(국토부)	
4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1-1	답	759	759	241-1	답	759	759	국(국토부)	
4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1-3	답	123	123	241-3	답	123	123	국(국토부)	
4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2-1	원	2,027	2,027	242-1	원	2,027	2,027	국(국토부)	
4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3-1	답	1,035	1,035	243-1	답	1,035	1,035	국(국토부)	
4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3-2	답	1,369	1,369	243-2	답	1,369	1,369	국(국토부)	
4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4-1	답	4,296	4,296	244-1	답	4,296	4,296	국(국토부)	
4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4-2	답	846	846	244-2	답	846	846	국(국토부)	
4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5-1	답	3,082	3,082	245-1	답	3,082	3,082	국(국토부)	
4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5-2	답	3,798	3,798	245-2	답	3,798	3,798	국(국토부)	
4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6-1	구	679	679	246-1	구	679	679	국(농림부)	
4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6-2	답	4,671	4,671	246-2	답	4,671	4,671	국(국토부)	
4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7-1	답	3,626	3,626	247-1	답	3,626	3,626	국(국토부)	
4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7-2	답	2,783	2,783	247-2	답	2,783	2,783	국(국토부)	
4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8-1	전	1,298	1,298	248-1	전	1,298	1,298	국(국토부)	
4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9-2	원	1,488	1,488	249-2	원	1,488	1,488	국(국토부)	
4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49-3	유	251	251	249-3	유	251	251	국(국토부)	
4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1	답	112	112	250-1	답	112	112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2	도	354	354	250-2	도	354	354	국(국토부)	
4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3	답	53	53	250-3	답	53	53	국(국토부)	
4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7	원	3,152	3,152	250-7	원	3,152	3,152	국(국토부)	
4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9	구	26	26	250-9	구	26	26	국(국토부)	
4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0-10	유	547	547	250-10	유	547	547	국(국토부)	
4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1-2	도	215	215	251-2	도	215	215	국(국토부)	
4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1-3	답	112	112	251-3	답	112	112	국(국토부)	
4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2-2	도	215	215	252-2	도	215	215	국(국토부)	
4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2-3	구	79	79	252-3	구	79	79	국(국토부)	
4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2-6	답	46	46	252-6	답	46	46	국(국토부)	
4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2-7	답	30	30	252-7	답	30	30	국(국토부)	
4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6-2	도	132	132	256-2	도	132	132	국(국토부)	
4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6-7	구	69	69	256-7	구	69	69	국(국토부)	
4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6-9	대	661	661	256-9	대	661	661	국(국토부)	
4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6-11	구	99	99	256-11	구	99	99	국(국토부)	
4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2	도	130	130	257-2	도	130	130	국(국토부)	
4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3	구	46	46	257-3	구	46	46	국(국토부)	
4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4	도	374	374	257-4	도	374	374	국(국토부)	
47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5	구	13	13	257-5	구	13	13	국(국토부)	
47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7	답	26	26	257-7	답	26	26	국(국토부)	
47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8	구	60	60	257-8	구	60	60	국(국토부)	
47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9	답	122	122	257-9	답	122	122	국(국토부)	
48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11	구	136	136	257-11	구	136	136	국(국토부)	
48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7-17	구	23	23	257-17	구	23	23	국(국토부)	
48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8-2	도	119	119	258-2	도	119	119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8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8-3	답	40	40	258-3	답	40	40	국(국토부)	
48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8-4	답	50	50	258-4	답	50	50	국(국토부)	
48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9-2	구	13	13	259-2	구	13	13	국(국토부)	
48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9-8	답	436	436	259-8	답	436	436	국(국토부)	
48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59-9	답	17	17	259-9	답	17	17	국(국토부)	
48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0-9	전	13	13	260-9	전	13	13	국(국토부)	
48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0-10	전	17	17	260-10	전	17	17	국(국토부)	
49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1-1	천	119	119	261-1	천	119	119	국(국토부)	
49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2-0	유	2,797	2,797	262-0	유	2,797	2,797	국(국토부)	
49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3-1	구	36	36	263-1	구	36	36	국(국토부)	
49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4-0	전	337	337	264-0	전	337	337	국(국토부)	
49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5-0	유	2,862	2,862	265-0	유	2,862	2,862	국(국토부)	
49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6-0	답	337	337	266-0	답	337	337	국(국토부)	
49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8-1	대	393	393	268-1	대	393	393	국(국토부)	
49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8-2	구	33	33	268-2	구	33	33	국(국토부)	
49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8-3	유	1,478	1,478	268-3	유	1,478	1,478	국(국토부)	
49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69-0	유	3,587	3,587	269-0	유	3,587	3,587	국(국토부)	
50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1-2	도	522	522	271-2	도	522	522	국(국토부)	
50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1-3	답	93	93	271-3	답	93	93	국(국토부)	
50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1-5	원	178	178	271-5	원	178	178	국(국토부)	
50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1-6	유	348	348	271-6	유	348	348	국(국토부)	
50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3-2	전	53	53	273-2	전	53	53	국(국토부)	
50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6-0	대	177	177	276-0	대	177	177	국(국토부)	
50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6-1	유	5,165	5,165	276-1	유	5,165	5,165	국(국토부)	
50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7-2	대	707	707	277-2	대	707	707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0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7-3	구	317	317	277-3	구	317	317	국(국토부)	
50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7-4	구	46	46	277-4	구	46	46	국(국토부)	
5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79-5	전	30	30	279-5	전	30	30	국(국토부)	
5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6-1	답	337	337	286-1	답	337	337	국(국토부)	
5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6-12	도	448	448	286-12	도	448	448	국(국토부)	
5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6-5	구	198	198	286-5	구	198	198	국(국토부)	
5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6-13	구	15	15	286-13	구	15	15	한국수자원공사	
5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7-1	원	3,412	3,412	287-1	원	3,412	3,412	국(국토부)	
5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7-2	도	727	727	287-2	도	727	727	국(국토부)	
5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7-4	답	63	63	287-4	답	63	63	국(국토부)	
5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7-5	답	195	195	287-5	답	195	195	국(국토부)	
5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7-7	답	142	142	287-7	답	142	142	국(국토부)	
5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8-1	대	329	329	288-1	대	329	329	국(국토부)	
5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8-2	도	96	96	288-2	도	96	96	국(국토부)	
5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8-3	답	96	96	288-3	답	96	96	국(국토부)	
5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8-5	유	199	199	288-5	유	199	199	국(국토부)	
5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8-6	원	1,975	1,975	288-6	원	1,975	1,975	한국수자원공사	
5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89-1	유	1,457	1,457	289-1	유	1,457	1,457	한국수자원공사	
5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96-0	원	753	753	296-0	원	753	753	국(국토부)	
5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0-2	답	247	247	300-2	답	247	247	국(국토부)	
5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0-3	답	1,323	1,323	300-3	답	1,323	1,323	국(국토부)	
5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0-4	답	1,595	1,595	300-4	답	1,595	1,595	국(국토부)	
5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1-1	구	499	499	301-1	구	499	499	국(농림부)	
5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2-1	답	233	233	302-1	답	233	233	국(국토부)	
5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6-2	답	193	193	306-2	답	193	193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7-1	답	238	238	307-1	답	238	238	국(국토부)	
5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7-2	답	3,391	3,391	307-2	답	3,391	3,391	국(국토부)	
5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7-3	답	3,960	3,960	307-3	답	3,960	3,960	한국수자원공사	
5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8-1	답	2,317	2,317	308-1	답	2,317	2,317	국(국토부)	
5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8-2	답	3,107	3,107	308-2	답	3,107	3,107	국(국토부)	
5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8-3	답	1,726	1,726	308-3	답	1,726	1,726	국(국토부)	
5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9-1	답	1,673	1,673	309-1	답	1,673	1,673	국(농림부)	
5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9-2	답	2,737	2,737	309-2	답	2,737	2,737	국(국토부)	
5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9-3	답	446	446	309-3	답	446	446	국(국토부)	
5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09-4	답	493	493	309-4	답	493	493	국(국토부)	
5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0-1	답	5,374	5,374	310-1	답	5,374	5,374	국(국토부)	
5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0-2	답	2,007	2,007	310-2	답	2,007	2,007	국(국토부)	
5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0-3	답	2,235	2,235	310-3	답	2,235	2,235	국(국토부)	
5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0-4	답	496	496	310-4	답	496	496	국(국토부)	
5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0-6	답	220	220	310-6	답	220	220	한국수자원공사	
5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1-1	답	2,099	2,099	311-1	답	2,099	2,099	국(국토부)	
5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1-2	답	3,868	3,868	311-2	답	3,868	3,868	국(국토부)	
5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1-3	구	1,527	1,527	311-3	구	1,527	1,527	국(농림부)	
5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1-4	잡	1,260	1,260	311-4	잡	1,260	1,260	국(국토부)	
5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1-6	구	36	36	311-6	구	36	36	국(농림부)	
5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2-1	구	788	788	312-1	구	788	788	국(농림부)	
5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2-2	도	626	626	312-2	도	626	626	국(농림부)	
5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14-1	답	758	758	314-1	답	758	758	국(국토부)	
5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8-1	답	4,076	4,076	378-1	답	4,076	4,076	국(국토부)	
5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8-2	답	6,628	6,628	378-2	답	6,628	6,628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8-3	답	1,159	1,159	378-3	답	1,159	1,159	한국수자원공사	
5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78-5	답	26	26	378-5	답	26	26	국(국토부)	
5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82-1	구	129	129	382-1	구	129	129	국	
5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82-2	도	241	241	382-2	도	241	241	국(농림부)	
5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83-1	답	2,926	2,926	383-1	답	2,926	2,926	국(국토부)	
5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83-2	답	1,019	1,019	383-2	답	1,019	1,019	국(국토부)	
5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423-12	구	20	20	423-12	구	20	20	국(농림부)	
5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6-4	천	3,802	3,802	616-4	천	3,802	3,802	국(국토부)	
5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8	도	40	40	618-8	도	40	40	국	
5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17	도	169	169	618-17	도	169	169	국(국토부)	
5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29	도	43	43	618-29	도	43	43	국	
5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30	도	66	66	618-30	도	66	66	국	
5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38	도	507	507	618-38	도	507	507	국	
5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41	도	64	64	618-41	도	64	64	국	
5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18-42	도	798	798	618-42	도	798	798	국	
5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6-3	천	76	76	626-3	천	76	76	국(국토부)	
5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8-0	도	149	149	628-0	도	149	149	국(국토부)	
57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9-2	도	12	12	629-2	도	12	12	국(국토부)	
576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9	도	222	222					국(국토부)	
577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17	장	1,429	1,429					국(국토부)	
578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6	임	97	97					국(국토부)	
579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7	임	3,808	3,808					국(국토부)	
580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8	임	4,805	4,805					국(국토부)	
581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9-29	임	1,325	1,325					국(국토부)	
582	인천시 서구 오류동		공유		39,461.3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83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260,303.2						
584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2,500.0						
585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108,774.0						
586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40,860.7						
587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59,708.3						
588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547,108.0						
589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63,703.1						
590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133,012.1						
591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32,006.9						
592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38,873.4						
593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50,947.2						
594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35,141.7						
595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30,772.8						

Ⅱ. 사용토지

▶ 항만구역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13	잡	1,309	1,309	1-13	잡	1,309	1,309	서울시	
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14	천	1,478	1,478	1-14	천	1,478	1,478	이상윤외5	
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15	천	1,739	1,739	1-15	천	1,739	1,739	전홍례외3	
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21	잡	1,035	1,035	1-21	잡	1,035	1,035	서울시	
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22	잡	314	314	1-22	잡	314	314	국(국토부)	
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0	잡	1,321	1,321	1-30	잡	1,321	1,321	서울시	
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1	천	993	993	1-31	천	993	993	유순자외5	
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2	잡	662	662	1-32	잡	662	662	김봉숙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3	천	662	662	1-33	천	662	662	정명규	
1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4	잡	2,314	2,314	1-34	잡	2,314	2,314	국(국토부)	
1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6	천	109	109	1-36	천	109	109	이정호외3	
1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7	잡	203	203	1-37	잡	203	203	국(국토부)	
1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8	천	1,633	1,633	1-38	천	1,633	1,633	박노택	
1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9	잡	1,146	1,146	1-39	잡	1,146	1,146	서울시	
1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0	잡	461	461	1-40	잡	461	461	김정세	
1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1	잡	961	961	1-41	잡	961	961	국(국토부)	
1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2	천	624	624	1-42	천	624	624	박형자	
1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3	천	714	714	1-43	천	714	714	최진선	
1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5	천	4,916	4,916	1-45	천	4,916	4,916	국(국토부)	
2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6	천	1,465	1,465	1-46	천	1,465	1,465	김교영	
2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7	잡	10	10	1-47	잡	10	10	서울시	
2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8	전	1,184	1,184	1-48	전	1,184	1,184	국(국토부)	
2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9	잡	2,569	2,569	1-49	잡	2,569	2,569	서울시	
2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5	천	927	927	2-5	천	927	927	국(국토부)	
2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6	천	20	20	2-6	천	20	20	국(국토부)	
2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1	잡	212	212	3-1	잡	212	212	서울시	
2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6	잡	249	249	3-6	잡	249	249	고광천	
2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7	천	40	40	3-7	천	40	40	이홍재	
2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4-6	잡	169	169	4-6	잡	169	169	한봉수	
3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4-7	잡	298	298	4-7	잡	298	298	한봉수	
3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4-8	잡	768	768	4-8	잡	768	768	한봉수	
3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4-9	잡	827	827	4-9	잡	827	827	한봉수	
3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4-10	잡	1,048	1,048	4-10	잡	1,048	1,048	한봉수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1	천	2,846	2,846	5-1	천	2,846	2,846	박정호	
3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3	잡	2,631	2,631	5-3	잡	2,631	2,631	국(국토부)	
3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4	천	661	661	5-4	천	661	661	장선자	
3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5	천	704	704	5-5	천	704	704	백용민외1	
3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7	천	1,062	1,062	5-7	천	1,062	1,062	김정세	
3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8	천	614	614	5-8	천	614	614	배영자외3	
4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1	천	992	992	6-1	천	992	992	박혜용외4	
4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2	천	1,620	1,620	6-2	천	1,620	1,620	이우용	
4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3	천	1,111	1,111	6-3	천	1,111	1,111	노순임	
4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4	천	1,041	1,041	6-4	천	1,041	1,041	정병락외2	
4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7	잡	2,000	2,000	7	잡	2,000	2,000	서울시	
4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8	잡	3,451	3,451	8	잡	3,451	3,451	최복진외2	
4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9	전	645	645	9	전	645	645	조중근	
4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0-1	전	512	512	10-1	전	512	512	국(국토부)	
4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0-2	천	499	499	10-2	천	499	499	이만기	
4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1-1	천	1,501	67	11-1	천	1,501	67	나종천	
5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1-1	천	1,501	1,434	11-1	천	1,501	1,434	나종천	
5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1-2	잡	1,408	26	11-2	잡	1,408	26	서울시	
5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1-2	잡	1,408	1,382	11-2	잡	1,408	1,382	서울시	
5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2-2	천	969	771	12-2	천	969	771	이홍재	
5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2-2	천	969	198	12-2	천	969	198	이홍재	
5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2-3	전	3,420	1,828	12-3	전	3,420	1,828	국(국토부)	
5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2-3	전	3,420	1,592	12-3	전	3,420	1,592	국(국토부)	
5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	천	3,065	2,499	13	천	3,065	2,499	서울시외1	
5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3	천	3,065	566	13	천	3,065	566	서울시외1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1	천	1,323	1,323	14-1	천	1,323	1,323	국(국토부) 외1	
6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2	잡	3,061	3,061	14-2	잡	3,061	3,061	서울시	
6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4-3	천	674	674	14-3	천	674	674	김인수	구로구구로동454-1
6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5	잡	2,453	2,453	15	잡	2,453	2,453	국(국토부)	
6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1	잡	840	840	16-1	잡	840	840	국(국토부)	
6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2	전	2,103	2,103	16-2	전	2,103	2,103	이경식외2인	경기도김포군고촌면전호리16
6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3	잡	661	661	16-3	잡	661	661	국(국토부)	
6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4	잡	661	661	16-4	잡	661	661	백승용	
6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1	전	975	1	17-1	전	975	1	서울시	
6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1	전	975	974	17-1	전	975	974	서울시	
6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2	잡	1,410	11	17-2	잡	1,410	11	서울시	
7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2	잡	1,410	1,399	17-2	잡	1,410	1,399	서울시	
7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3	잡	757	49	17-3	잡	757	49	국(국토부)	
7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3	잡	757	708	17-3	잡	757	708	국(국토부)	
7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4	천	661	272	17-4	천	661	272	이영분	
7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4	천	661	389	17-4	천	661	389	이영분	
7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5	천	529	5	17-5	천	529	5	진성예	
7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5	천	529	524	17-5	천	529	524	진성예	
7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6	천	46	46	17-6	천	46	46	박동준	
7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7	잡	147	147	17-7	잡	147	147	서울시	
7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8	잡	228	40	17-8	잡	228	40	국(국토부)	
8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8	잡	228	188	17-8	잡	228	188	국(국토부)	
8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9	천	132	128	17-9	천	132	128	진성예	
8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9	천	132	4	17-9	천	132	4	진성예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8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10	천	893	576	17-10	천	893	576	박동준	
8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10	천	893	17	17-10	천	893	17	박동준	
8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10	천	893	300	17-10	천	893	300	박동준	
8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8-1	잡	732	732	18-1	잡	732	732	서울시	
8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9-2	전	437	437	19-2	전	437	437	서울시	
8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9-3	전	153	153	19-3	전	153	153	서울시	
8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1	전	1,782	169	20-1	전	1,782	169	서울시	
9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1	전	1,782	1,613	20-1	전	1,782	1,613	서울시	
9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2	전	1,481	603	20-2	전	1,481	603	서울시	
9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2	전	1,481	878	20-2	전	1,481	878	서울시	
9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1-1	잡	1,107	1,107	21-1	잡	1,107	1,107	서울시	
9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1-2	전	992	992	21-2	전	992	992	서울시	
9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1-7	천	856	856	21-7	천	856	856	임종균	
9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1-8	전	699	699	21-8	전	699	699	국(국토부)	
9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1	전	1,676	1,675	22-1	전	1,676	1,675	서울시	
9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1	전	1,676	1	22-1	전	1,676	1	서울시	
9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2	전	1,983	411	22-2	전	1,983	411	서울시	
10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2	전	1,983	1,572	22-2	전	1,983	1,572	서울시	
10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3	전	2,509	2,509	22-3	전	2,509	2,509	서울시	
10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4	전	4,668	1,267	22-4	전	4,668	1,267	김석여	
10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4	전	4,668	3,401	22-4	전	4,668	3,401	김석여	
10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5	천	770	770	22-5	천	770	770	강영순	
10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6	전	1,323	91	22-6	전	1,323	91	이재철	
10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6	전	1,323	1,232	22-6	전	1,323	1,232	이재철	
10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7	전	992	992	22-7	전	992	992	김수열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0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2-8	전	966	966	22-8	전	966	966	이정순	
10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3-1	전	1,387	1,387	23-1	전	1,387	1,387	김순자	
11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4-1	전	1,360	1,360	24-1	전	1,360	1,360	이영우	
11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5-1	천	567	567	25-1	천	567	567	국(국토부)	
11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7-3	전	924	924	27-3	전	924	924	서울시	
11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7-4	전	1,176	1,176	27-4	전	1,176	1,176	서울시	
11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8	전	2,241	427	28	전	2,241	427	성달제	
11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8	전	2,241	1,814	28	전	2,241	1,814	성달제	
11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9	잡	750	662	29	잡	750	662	안연봉	
11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9	잡	750	88	29	잡	750	88	안연봉	
11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1	잡	1,498	1	30-1	잡	1,498	1	라기응	
11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1	잡	1,498	1,497	30-1	잡	1,498	1,497	라기응	
12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2	잡	1,299	137	30-2	잡	1,299	137	서울시	
12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2	잡	1,299	215	30-2	잡	1,299	215	서울시	
12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2	잡	1,299	947	30-2	잡	1,299	947	서울시	
12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1-1	전	1,884	1,884	31-1	전	1,884	1,884	안문식	
12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1-2	잡	2,883	2,883	31-2	잡	2,883	2,883	주명신	
12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1-4	잡	2,741	2,741	31-4	잡	2,741	2,741	국(국토부)	
12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2-1	잡	138	138	32-1	잡	138	138	안종옥외5인	
12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6-8	잡	63	63	36-8	잡	63	63	국(국토부)	
12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7-3	전	439	439	37-3	전	439	439	이경호	
12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7-4	잡	1,449	1,449	37-4	잡	1,449	1,449	서울시	
13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97-21	천	79	79	97-21	천	79	79	한국농어촌공사	
13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97-22	구	95	95	97-22	구	95	95	국(국토부)	
13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97-19	잡	8	8	97-19	잡	8	8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3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97-20	천	262	262	97-20	천	262	262	고영숙	
13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97-18	잡	164	164	97-18	잡	164	164	국(국토부)	
13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97-17	천	7	7	97-17	천	7	7	고영숙	
13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20-54	도	69	69	620-54	도	69	69	국(국토부)	
13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20-53	도	370	227	620-53	도	370	227	국(국토부)	
13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20-53	도	370	143	620-53	도	370	143	국(국토부)	
13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25-1	구	60	60	625-1	구	60	60	국(국토부)	
14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26-1	천	111	4	626-1	천	111	4	국(국토부)	
14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26-1	천	111	107	626-1	천	111	107	국(국토부)	
14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54-1	천	7,383	7,383	654-1	천	7,383	7,383	국(국토부)	
14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56-1	천	2,065	2,065	656-1	천	2,065	2,065	국(국토부)	

▶ 상하수도구역(변경)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6	천	18,939	10.00	104-6	천	18,939	10.00	국(국토부)	
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10	천	18,521	26.00	104-10	천	18,521	26.00	국(국토부)	
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85-4	답	417	6.00	185-4	답	417	6.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85-11	구	1,570	16.00	185-11	구	1,570	16.00	국(국토부)	
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4	답	78	6.00	203-4	답	78	6.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12	답	301	3.00	203-12	답	301	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13	구	144	2.00	203-13	구	144	2.00	국(농림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14	답	241	3.00	203-14	답	241	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17	답	654	10.00	203-17	답	654	10.00	국(국토부)	
1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3-18	답	96	1.00	203-18	답	96	1.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4-30	도	1,516	2.00	204-30	도	1,516	2.00	국(농림부)	
1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4-31	도	7,739	9.00	204-31	도	7,739	9.00	국(농림부)	
1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4-36	구	8,146	19.00	204-36	구	8,146	19.00	국(농림부)	
1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4-40	구	1,192	1.00	204-40	구	1,192	1.00	국(농림부)	
1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4-43	도	614	4.00	204-43	도	614	4.00	국(농림부)	
1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5-1	답	349	7.00	205-1	답	349	7.00	국(국토부)	
1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5-2	답	140	3.00	205-2	답	140	3.00	국(국토부)	
1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5-3	답	297	5.00	205-3	답	297	5.00	국(국토부)	
1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5-4	답	1,661	14.00	205-4	답	1,661	14.00	국(국토부)	
2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9-3	답	179	13.00	209-3	답	179	1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9-4	답	932	15.00	209-4	답	932	1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10-4	답	800	15.00	210-4	답	800	1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0-4	답	5,516	53.00	220-4	답	5,516	5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3-5	답	724	30.00	223-5	답	724	30.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4-7	답	521	11.00	224-7	답	521	11.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4-8	답	4,172	13.00	224-8	답	4,172	1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4-9	구	332	3.00	224-9	구	332	3.00	국(농림부)	
2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34-4	답	5,401	53.00	234-4	답	5,401	5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40-4	답	229	25.00	240-4	답	229	2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42-3	답	3,723	27.00	242-3	답	3,723	27.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54-5	구	521	3.00	254-5	구	521	3.00	국(농림부)	
3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55-3	답	2,922	33.00	255-3	답	2,922	3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56-3	답	293	22.00	256-3	답	293	2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5-4	답	27	3.00	265-4	답	27	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5-5	답	362	14.00	265-5	답	362	14.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5-6	답	900	16.00	265-6	답	900	16.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6-4	답	893	10.00	266-4	답	893	10.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6-5	답	1,639	14.00	266-5	답	1,639	14.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6-6	답	3,473	23.00	266-6	답	3,473	2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7-4	답	4,047	22.00	267-4	답	4,047	2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7-5	답	3,150	17.00	267-5	답	3,150	17.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68-1	답	3,785	14.00	268-1	답	3,785	14.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1-8	구	1,897	38.00	271-8	구	1,897	38.00	국(농림부)	
4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12	답	92	5.00	272-12	답	92	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13	답	369	15.00	272-13	답	369	1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4-11	답	282	13.00	274-11	답	282	13.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4-12	답	341	20.00	274-12	답	341	20.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7-11	답	196	17.00	277-11	답	196	17.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7-12	답	93	12.00	277-12	답	93	1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5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8-12	답	54	6.00	278-12	답	54	6.00	국(국토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81-71	도	79	1.00	281-71	도	79	1.00	국(국토부)	
5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81-73	도	391	1.00	281-73	도	391	1.00	국(국토부)	
5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7-14	도	125	2.00	297-14	도	125	2.00	국(농림부)	
5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7-17	도	252	2.00	297-17	도	252	2.00	국(농림부)	
5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7-18	도	517	3.00	297-18	도	517	3.00	국(농림부)	
5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7-19	도	475	3.00	297-19	도	475	3.00	국(농림부)	
5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9-4	구	73	8.00	299-4	구	73	8.00	국(농림부)	
5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99-7	구	1,419	35.00	299-7	구	1,419	35.00	국(농림부)	
5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00-5	전	2,244	16.00	300-5	전	2,244	16.00	김포시	
6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4	구	63	23.00	310-4	구	63	23.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6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9	답	40	6.00	310-9	답	40	6.00	김포시	
6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14	답	324	23.00	310-14	답	324	23.00	김포시	
6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21	답	684	44.00	310-21	답	684	44.00	김포시	
6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1-2	구	36	7.00	321-2	구	36	7.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6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1-3	구	130	21.00	321-3	구	130	21.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6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1-4	구	10	1.00	321-4	구	10	1.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6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1-8	답	89	4.00	321-8	답	89	4.00	김포시	
6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2-2	구	69	14.00	322-2	구	69	14.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6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5-3	답	155	27.00	325-3	답	155	27.00	김포시	
7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29-8	구	286	6.00	329-8	구	286	6.00	김포시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7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0-3	답	26	1.00	330-3	답	26	1.00	김포시	
7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1-2	구	41	3.00	331-2	구	41	3.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7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1-5	답	129	11.00	331-5	답	129	11.00	김포시	
7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1-6	구	32	4.00	331-6	구	32	4.00	김포시	
7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2-1	구	212	10.00	332-1	구	212	10.00	김포시	
7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4-1	구	737	23.00	334-1	구	737	23.00	김포시	
7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5-1	구	215	7.00	335-1	구	215	7.00	김포시	
7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6-8	구	2,178	10.00	336-8	구	2,178	10.00	김포시	
7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6-9	구	443	12.00	336-9	구	443	12.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8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00-4	구	5,249	9.00	400-4	구	5,249	9.00	한국외환은행	
8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06-15	구	1,881	12.00	406-15	구	1,881	12.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8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06-18	구	61	1.00	406-18	구	61	1.00	김포시	
8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19	대	248	17.00	447-19	대	248	17.00	김포시	
8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46	임	1,445	28.00	447-46	임	1,445	28.00	김포시	
8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49	대	798	39.00	447-49	대	798	39.00	김포시	
8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1	대	575	16.00	447-51	대	575	16.00	김포시	
8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2	잡	313	10.00	447-52	잡	313	10.00	김포시	
8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3	잡	332	9.00	447-53	잡	332	9.00	김포시	
8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5	잡	422	12.00	447-55	잡	422	12.00	김포시	
9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7	잡	243	2.00	447-57	잡	243	2.00	김포시	
9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2	대	173	2.00	447-62	대	173	2.00	김포시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9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3	대	391	11.00	447-63	대	391	11.00	김포시	
9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4	대	231	11.00	447-64	대	231	11.00	김포시	
9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5	대	381	14.00	447-65	대	381	14.00	김포시	
9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8	임	441	9.00	447-68	임	441	9.00	김포시	
9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70	임	576	9.00	447-70	임	576	9.00	김포시	
9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81	임	1,449	31.00	447-81	임	1,449	31.00	김포시	
9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8-7	전	142	5.00	448-7	전	142	5.00	김포시	
9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54-15	임	575	16.00	454-15	임	575	16.00	김포시	
10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54-21	임	102	1.00	454-21	임	102	1.00	김포시	
10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3	구	327	5.00	492-3	구	327	5.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4	구	58	1.00	492-4	구	58	1.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5	답	219	1.00	492-5	답	219	1.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51	구	853	6.00	492-51	구	853	6.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77	구	668	10.00	492-77	구	668	10.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79	구	745	2.00	492-79	구	745	2.00	김포시	
10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7-1	답	141	6.00	497-1	답	141	6.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10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7-2	답	288	1.00	497-2	답	288	1.00	김포시	
10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7-5	답	474	15.00	497-5	답	474	15.00	김포시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1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77-0	도	7,856	199.00	1,177-0	도	7,856	199.00	김포시	
11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78-0	도	4,882	173.00	1,178-0	도	4,882	173.00	김포시	
1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6	천	5,275	20.00	68-6	천	5,275	20.00	국(국토부)	
1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14	천	261	2.00	68-14	천	261	2.00	국(국토부)	
114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1-0	수	73,068	40.00	221-0	수	73,068	40.00	김포시	
115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2	임	702	21.00	226-12	임	702	21.00	김포시	
116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3	임	2,073	41.00	226-13	임	2,073	41.00	김포시	
117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6	임	66	4.00	226-16	임	66	4.00	김포시	
118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7	임	1,187	65.00	226-17	임	1,187	65.00	김포시	
119	인천시 서구 경서동	330-1	도	32,385	370.00					인천시	
120	인천시 서구 경서동	355-2	제	367	2.00					국(국토부)	
121	인천시 서구 경서동	363-283	도	703	33.00					인천시	
122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4-15	제	357	4.00					국(국토부)	
123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4-19	답	512	6.00					인천시	
124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4-20	답	707	15.00					국(국토부)	
125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6-	잡	350	11.00					인천시	
126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7-1	답	588	12.00					인천시	
127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0	도	12,170	94.00					국(농림부)	
128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1	도	2,122	18.00					국(국토부)	
129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2	도	1,400	12.00					국(농림부)	
130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3	철	494	5.00					국(국토부)	
131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4	도	1,023	9.00					국(국토부)	
132	인천시 서구 경서동	543-0	제	16,290	51.00					국(농림부)	
133	인천시 서구 경서동	543-2	제	1,604	20.00					국(농림부)	
134	인천시 서구 경서동	566-0	도	14,142	32.00					국(농림부)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35	인천시 서구 경서동	712-0	도	18,834	25.00					국(국토부)	
136	인천시 서구 경서동	713-0	철	10,285	7.00					국(철도청)	
137	인천시 서구 경서동		매립지		183.00					수도권매립지	
138	인천시 서구 경서동		매립지		669.00					수도권매립지	
139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200-10	임	3,787	64.00					인천시	
140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200-12	임	684	62.00					문화유씨 문숙공파 종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85-24
141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204-3	임	1,130	21.00					국(산림청)	
142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205-4	임	59	1.00					국(산림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11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1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광명호 전복사건(인해심 제2013-1호)

2. 피 요 청 자 : 김 상 태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시정권고서]

광명호는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으로서 기상이 악화된 해상을 항해 중, 2012년 9월 8일 00시 2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횡견도 서북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4분 15초・동경 126도 00분 09초 해상에서 큰 파도를 만나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귀하가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에 대한 정보를 소홀히 하며 무리하게 기상이 악화된 해상을 항해하다가 선박이 강한 풍파를 만나 대각도 좌현경사로 복원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풍랑주의보 발효 시 어선안전조업규정에 의거하여 출항을 금지하고, 이미 출어한 경우에는 통신기를 개방하여 기상정보를 청취하며 대피하거나 안전항해를 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0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현대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93-7
대표이사 육상열
검 사 오영남(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8. 21.자 2007고약15116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86아2018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천승국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4. 24. 15:40경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1.3톤, 3축에 11.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8. 21. 2007고약1511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1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협신운송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오월선
검 사 정재봉(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7. 6. 17.자 97고약4440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6010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범식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3. 17. 14:52경 한국도로공사 양산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6. 17. 97고약44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2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평화운수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이사 윤여원
검 사 한상미(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1. 8. 3.자 2001고약1222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8아4038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전세구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3. 13. 04:55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량에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28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8. 3. 2001고약1222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3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전추레라 소재지 대전 대덕구 연축동 307-8 대표이사 이중기
검 사	민경천(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3. 11. 15.자 93고약1281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9바2510호, 대전 7아7322호 대형특수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신충섭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4. 04:43경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동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 앞 3호선 국도에서 위 차량에 굴삭기를 실어 축하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4축 하중 11.1톤, 5축 하중 11.2톤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1. 15. 93고약1281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4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현대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387-1 대표이사 윤관열
검 사	박형수(기소), 양선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김오섭, 이수형, 곽정훈, 조현정, 김광수, 김도훈, 채희상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6. 10. 11.자 96고약10899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80사9503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태식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4. 27. 19:24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황산을 실어 축하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3축하중 10.6톤, 4축하중 11.9톤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0. 11. 96고약1089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5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전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중부대전화물터미널 103호

대표이사 배영복

검 사 이용민(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6. 6. 26.자 96고약5766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3646호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석현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5. 2. 11:10경 경부고속도로 청주톨게이트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트럭 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신문용지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6. 26. 96고약576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8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청송
소재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88
대표자 사내이사 이범준
검 사 김성식(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6. 1. 19.자 2005고약33696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84아1652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진만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10. 21. 03:12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장지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03톤의 철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 19. 2005고약3369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9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영진운수
소재지 인천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64(신흥동3가, 한중물류빌딩 103호)
대표이사 최성업
검 사 이창복(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5. 5. 25.자 95고약3410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7아9034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지철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5. 18:0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원목을 실어 축하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2축하중 15톤, 3축하중 14톤의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25. 95고약34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0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청도화물 소재지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1123-3 대표이사 장부식
검 사	김성식(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5. 5. 18.자 2005고약10723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82아2302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홍남표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10. 29. 23:52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높이 4m를 초과한 4.23m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5. 18. 2005고약1072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1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동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북구 태전동 227-1 대표이사 이정수
검 사	임건상(기소), 양선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6. 1. 31.자 2006고약402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81아1559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재석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12. 8. 12:22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길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1축에서 1.54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 31. 2006고약40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2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삼광통운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이창진

검 사 민경천(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6. 7.자 94고약3462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9바3626호(후번호 대전 8아7826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종호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18. 05:28경 포항시 효곡동 효곡검문소 앞에서 위 차량에 철판 44.6톤을 적재하여 제한중량을 4.6톤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7. 94고약346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3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욱성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남동구 장수동 778-4, 2층
대표이사 박정배
검 사 오영남(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9. 11.자 2007고약16777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86가6309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영식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6. 18. 09:24경 한국도로공사 영동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3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9. 11. 2007고약1677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5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수도특수화물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대동 453-1
대표이사 최영대

검 사 이광석(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9. 17.자 2004고약24720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9302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정배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6. 16. 05:1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4.5킬로미터 신탄진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9. 17. 2004고약2472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6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청송
소재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88
대표자 사내이사 이범준
검 사 김종국(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2. 2. 28.자 2002고약535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84아1635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진원재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11. 21. 01:42경 구포-양산간 고속도로 11킬로미터 지점 대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한 4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2. 28. 2002고약5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7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삼화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대사동 62-3 대표사원 김용문
검 사	노성수(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7. 3. 13.자 97고약1236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7아4220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영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2. 18. 15:52경 호남고속도로 서울기점 159킬로미터 광주고속도로 톨게이트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3. 13. 97고약123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8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전포동) 대표이사 박재억
검 사	백승민(기소), 양선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3. 3. 14.자 2003고약2120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81사8002호 대형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한기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2. 7. 03:48경 경부고속도로 북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3. 14. 2003고약212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1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청송

소재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88

대표자 사내이사 이범준

검 사 송지용(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2. 10.자 2004고약35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84아1637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광호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0. 1. 16:37경 구마고속도로 현풍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한 44.6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2. 10. 2004고약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1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태창기업

소재지 대전 유성구 원내동 73-6 1층

대표이사 신봉균

검 사 송민호(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8. 2. 25.자 98고약1114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99바2569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강본구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1. 5. 22:32경 영동고속도로 53.5킬로미터 여주톨게이트 앞 길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2. 25. 98고약111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2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평화운수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이사 윤여원

검 사 고건호(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12. 8.자 94고약12706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아7215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영모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3. 21:31경 한국도로공사 이리영업소 앞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제5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8. 94고약1270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7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동진화물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349
공동대표이사 조금자, 고윤혁
검 사 임건상(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6. 1. 10.자 2005고약32815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8아2509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영수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10. 27. 18:11경 호남고속도로 89.5킬로미터 천안방향 광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 10. 2005고약3281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8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동 30-10 대표이사 김은근
검 사	추유엽(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0. 6. 13.자 2000고약7438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5548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조윤형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4. 17. 18:08경 경부고속도로 청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6. 13. 2000고약74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9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충북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3-24 대표이사 남상일
검 사	최지현(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1. 24.자 93고약1485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7아1105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종연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15. 20:01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1톤,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 24. 93고약1485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0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동진운수 소재지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707 대표이사 박순옥
검 사	오영남(기소), 양선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7. 12. 14.자 2007고약25626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99바4066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황덕현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10. 18. 19:39경 한국도로공사 오창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5축에 11.42톤의 타워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2. 14. 2007고약2562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1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동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구 북구 태전동 227-1 대표이사 이정수
검 사	김성식(기소), 양선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5. 12. 13.자 2005고약30612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0아1418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치영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8. 11. 16:4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부산기점 15.5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양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0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2. 13. 2005고약306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3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명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동 30-10

대표이사 김문홍

검 사 강수진(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2. 8. 20.자 2002고약14158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4028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장수복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5. 10. 11:42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서울-안산 방면 새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1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5톤의 한전자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8. 20. 2002고약141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4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수도특수화물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대동 453-1

대표이사 최영대

검 사 김주필(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5. 9. 8.자 2005고약21445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99바2277호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정훈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5. 10. 23:55경 위 차량에 포크레인을 적재하고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소재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기준인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를 초과한 제2축 19.15톤, 제3축 19.9톤, 제4축 20.7톤, 제5축 20.8톤, 총중량 89.6톤, 폭 3.4미터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9. 8. 2005고약2144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5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이사 조중수
검 사 이원창(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6. 10. 23.자 96고약11554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7아2132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강민화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3. 14. 16:55경 국도 18호선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이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65톤, 제4축에 12.2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10. 23. 96고약1155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6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전포동) 대표이사 박재억
검 사	박석재(기소), 양선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5. 25.자 2004고약12982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81사1169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희근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3. 5. 02:51경 경부고속도로 332.5킬로미터 하남방향 목천영업소 앞에서 위 차량에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5. 25. 2004고약1298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4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전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중부대전화물터미널 103호 대표이사 배영복
검 사	고건호(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5. 2. 23.자 95고약758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7아3649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신만균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 10:24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7톤의 합성수지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3. 95고약7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5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거보물류

소재지 광주 광산구 안청동 734-6

관리인 박정호

검 사 주진우(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10. 29.자 2004고약29058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96사6582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한현윤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8. 21. 10:52경 서울외곽순환도로 32.2킬로미터 판교방향 시흥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제한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4.21미터의 높이로 화물을 적재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0. 29. 2004고약290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2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원운송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349 공동대표사원 고선영, 고희정
검 사	박장우(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9. 12. 2.자 99고약18024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3505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조명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9. 2. 04:22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2. 2. 99고약1802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3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원운송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349 공동대표사원 고선영, 고희정
검 사	이상호(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4. 5. 18.자 2004고약12654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3523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소진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2. 28. 11:07경 경부고속도로 영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5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5. 18. 2004고약1265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5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광역운수 합자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116번길 96(신일동) 대표사원 송정호
검 사	구자헌(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1. 10. 8.자 2001고약19246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2905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조응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7. 26. 00:2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153킬로미터 대전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1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같은 날 01:31경 대전-통영간 경부고속도로 산내기점 3.7킬로미터 남대전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10. 8. 2001고약1924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6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원운송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349 공동대표사원 고선영, 고희정
검 사	박장수(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7. 7. 21.자 97고약6434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3568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양원직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3. 5. 14:30경 익산시 산업도로 이동과적검문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55톤, 제4축에 11.8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7. 21. 97고약643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7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대원운송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349

공동대표사원 고선영, 고희정

검 사 노성수(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8. 1. 19.자 97고약2069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87아3550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상건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1. 7. 05:49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서대전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6톤의 당면과 짜장면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1. 19. 97고약2069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9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우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동구 산내로 1267(낭월동)

대표이사 김남근

검 사 양선순(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5. 28.자 94고약2476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7아7427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윤석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9. 16:25경 오산시 중원구 원동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 앞 국도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옥수수사료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8. 94고약247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0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현우

검 사 박영렬(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7. 7. 12.자 97고약646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80바8708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준범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4. 12. 15:29경 전북 익산군 함라읍 신묵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부근 도로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3톤,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7. 12. 97고약646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1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호서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6, 3층 301호
대표이사 송규영
검 사 양선순(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4. 21.자 94고약1565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7아6130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오세중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19. 04:40경 대전직할시 시도선 17호선 대덕구 석봉동 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4. 21. 94고약156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지 방 자 치 단 체

◉충청남도고시제2013-29호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고시 제2007-35(2007.2.23.)호, 충청남도고시 제2007-29(2007.2.9.)호로 고시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88) 및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천안영상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명 : (주)코아필름서울 대표이사 신넬슨균
 -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1-6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

○ 면 적 : 493,345㎡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 감독처분의 내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함

○ 사 유

- 충청남도고시 제2010-229(2010.7.20.)호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일반산업단지(외국인투지지역) 지정 해제 및 충청남도고시 제2010-234(2010.7.20.)호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

5.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사항의 취소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별첨,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취소면적 : 133,006㎡

○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취소면적 : 354,178㎡

〔별 첨〕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 도로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3	20	보조간선 도로	2,197 (3,765)	대로 1-4	풍세면 미죽리 129번지	일 반 도 로	-	천안시 고시 제2001-2호 (01.01.18)	중로1-62 (1,568m) 중로1-56 (2,197m)
변경	중로	1	23	20	보조간선 도로	1,079 (2,647)	대로 1-4	구룡동 산47-5번지	일 반 도 로	-	-	-

주) 준용구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도로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23	• 노선폭 변경 없이 연장 축소 :2,197m(3,765m)➔ 1,079m(2,647m)	• 준용사업으로 기 준공된 도로시설의 지구 외 일부구간(1,079m) 유지 •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로 준공되지 않은 산업단지 내 기 결정구간 (744m) 폐지 • 준용구간 중 산업단지 내에 걸치는 일부구간(374m) 폐지

2)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3	배 수 지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91-5 일원	1,470	감) 1,470	0	2001. 3. 29
폐지	14	상수가압장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92-8 일원	103	감) 103	0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	배 수 지	• 배수지 폐지	•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인한 실시계획 승인 취소
14	상수가압장	• 상수가압장 폐지	•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인한 실시계획 승인 취소

3)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4	오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천안시 구룡동 40-1 일원	2,508	감) 2,508	0	2001.3.29
폐지	5	오수가압장	분뇨처리시설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129	770	감) 770	0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오수처리장	• 오수처리장 폐지	•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인한 실시계획 승인 취소
5	오수가압장	• 오수가압장 폐지	•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인한 실시계획 승인 취소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음성군고시제2013-21호

토지세목

음성군 고시 제2012-1호(2012.1.6.), 제2012-39호(2012.3.30.), 제2013-7(2013.01.25.)호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세목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96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 골든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2. 사업위치 :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산 1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나. 명 칭 : 골든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4.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A= 1,474,278㎡ 나. 규 모 : 회원제 골프장 27홀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번지
 나. 성 명 : (주)골든이엔씨 대표 김재현
6.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 2012. 1. 6. 나. 준공예정일 : 2014. 12. 31.
7.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붙임조서와 같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	리	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합 계					1,772,919	1,474,278					
1	금왕읍	금석리	18	전	380	380	조남복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78-7			
2	금왕읍	금석리	19	전	807	807	강현정 외 34인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6층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근저당권·지상권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181	
									진흥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북창동 93-52	
									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	
									경기상호저축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	
									영남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32-1	
3	금왕읍	금석리	428-17	구	13,767	138	국(농림부)				
4	금왕읍	금석리	산2	임	31,791	31,791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5	금왕읍	금석리	산2-2	임	245	245	국(국토해양부)				
6	금왕읍	금석리	산3	임	5,950	5,950	김조영	충주시 안림동 1119 안림엘지@ 102-103			
7	금왕읍	금석리	산4	임	1,983	1,983	황숙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52 미성@3-1009			
8	금왕읍	금석리	산5	임	98,678	98,678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9	금왕읍	금석리	산5-1	구	761	761	국(농림부)				
10	금왕읍	금석리	산7	임	45,620	45,150	김규태	서울 광진구 중곡동 220-80			
11	금왕읍	금석리	산7-1	구	265	265	국(농림부)				
12	금왕읍	정생리	272-2	전	4,998	4,998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13	금왕읍	정생리	274	대	500	500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14	금왕읍	정생리	274-1	도	74	74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15	금왕읍	정생리	274-2	대	490	490	미등기1	-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	리	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합 계					1,772,919	1,474,278					
16	금왕읍	정생리	274-4	전	226	226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17	금왕읍	정생리	275	천	529	529	미등기2	-	이유복		토지대장
18	금왕읍	정생리	276-1	전	640	640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19	금왕읍	정생리	276-3	잡	404	404	김우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3 아크로비스타 씨-2705			
20	금왕읍	정생리	276-5	전	1,713	1,713	김우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3 아크로비스타 씨-2705			
21	금왕읍	정생리	279	임	688	688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22	금왕읍	정생리	280	임	711	711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23	금왕읍	정생리	281	전	2,929	2,929	강현정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6층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근저당권 · 지상권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181	
									진흥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북창동 93-52	
									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	
									경기상호저축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	
									영남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32-1	
24	금왕읍	정생리	643-56	천	11,428	2,423	국(국토해양부)				
25	금왕읍	정생리	산25	임	194,776	186,177	군(음성군)				
26	금왕읍	정생리	산27-1	임	199,338	199,338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27	금왕읍	정생리	산27-2	임	43,531	43,531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28	금왕읍	정생리	산28	임	163,438	158,042×1/5	㈜골든이엔씨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5/1지분 신탁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	리	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합 계					1,772,919	1,474,278					
						158,042×1/5	정동국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57	음성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장명규, 정동국 지분 압류
						158,042×1/5	장명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57-4	국민건강보험	서울시 마포구 독막길 24 (음성지사)	정동국 지분 압류
						158,042×1/5	고왕욱	충북 음성군 금왕읍 360	국세청	마포세무서	장명규 지분 압류
						158,042×1/5	석조양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357	경촌마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358-23	정동국,석조양, 고왕욱,장명규 지분 가처분
29	금왕읍	정생리	산31-1	임	12,099	12,099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30	금왕읍	정생리	산31-3	임	20,253	20,253 ×1/3	김기선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156			
						20,253 ×3/1	김용성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 14-906			
						20,253 ×3/1	양명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4-3 음성금왕휴먼시아 202-503			
31	금왕읍	정생리	산32	임	19,781	19,781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32	생극면	도신리	1	천	936	936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33	생극면	도신리	2	천	651	651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34	생극면	도신리	3	천	641	641	최용탁	용인시 성복동 726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3차 303-601			
35	생극면	도신리	4	천	744	744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	리	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합 계					1,772,919	1,474,278					
36	생극면	도신리	5-1	대	460	460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37	생극면	도신리	5-2	전	3,629	3,629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38	생극면	도신리	6-1	전	655	655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윤덕자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138	근저당권
39	생극면	도신리	7	전	923	923	최용탁	용인시 성복동 726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3차 303-601			
40	생극면	도신리	7-1	전	998	998	최용탁	용인시 성복동 726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3차 303-601			
41	생극면	도신리	7-2	전	886	886	최용탁	용인시 성복동 726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3차 303-601			
42	생극면	도신리	7-3	전	886	886	최용탁	용인시 성복동 726 성동마을 엘지빌리지 3차 303-601			
43	생극면	도신리	8	임	579	579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44	생극면	도신리	9	전	3,051	3,051 ×5/30	김곡동을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			
						3,051 ×5/30	김곡헌제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10			
						3,051 ×5/30	김곡동원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10			
						3,051 ×5/30	김곡우언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0			
						3,051 ×5/30	김곡익제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3,051 ×5/30	김곡민제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10			
45	생극면	도신리	10-1	전	668	668	김태숙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32-7			
46	생극면	도신리	10-2	구	1,421	1,421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47	생극면	도신리	10-3	전	1,079	1,079	김태숙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32-7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	리	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합 계					1,772,919	1,474,278					
48	생극면	도신리	10-4	전	385	385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49	생극면	도신리	11-1	천	258	258	국(국토해양부)				
50	생극면	도신리	11-2	창	221	221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51	생극면	도신리	11-3	천	988	988	국(국토해양부)				
52	생극면	도신리	11-4	전	1,776	1,776	최용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16-107			
53	생극면	도신리	12-1	전	519	519	강현정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6층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근저당권 · 지상권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181	
									진흥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북창동 93-52	
									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	
									경기상호저축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	
									영남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32-1	
54	생극면	도신리	12-2	천	430	430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55	생극면	도신리	20-2	전	584	584	최순묵	인천 남구 주안동 1466-7 광성@다-410			
56	생극면	도신리	21	전	1,302	1,302	강현정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6층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근저당권 · 지상권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181	
									진흥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북창동 93-52	
									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	
									경기상호저축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	
									영남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32-1	
57	생극면	도신리	22-1	전	1,055	1,055	유용우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	리	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합 계					1,772,919	1,474,278					
58	생극면	도신리	22-2	전	4,429	4,429	강현정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6층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근저당권·지상권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181	
									진흥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북창동 93-52	
									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	
									경기상호저축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	
									영남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32-1	
59	생극면	도신리	23-2	전	331	331	전계숙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680			
60	생극면	도신리	30	전	347	347	김제순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9			
61	생극면	도신리	31	천	179	179	국(국토해양부)				
62	생극면	도신리	32	전	129	129	김제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9			
63	생극면	도신리	33-1	구	1,706	1,706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64	생극면	도신리	33-2	전	4,116	4,116	강현정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6층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근저당권·지상권 설정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181	
									진흥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북창동 93-52	
									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	
									경기상호저축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	
									영남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32-1	
65	생극면	도신리	34-1	전	466	466	이종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24 주공@231-509			
66	생극면	도신리	34-2	구	218	218	이종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18			
67	생극면	도신리	35-1	전	423	423	신종식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68	생극면	도신리	35-2	천	106	106	신종식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69	생극면	도신리	36-1	구	423	423	신종식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	리	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합 계					1,772,919	1,474,278					
70	생극면	도신리	36-2	전	744	744	신종식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71	생극면	도신리	37-1	임	202	202	신종식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72	생극면	도신리	37-2	전	1,055	1,055	신종식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73	생극면	도신리	37-3	임	198	198	신종식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74	생극면	도신리	38	답	605	605	신종식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75	생극면	도신리	39	전	1,283	1,283	신송열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208			
76	생극면	도신리	42	구	803	803	군(음성군)				
77	생극면	도신리	43-2	구	1,007	1,00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8	생극면	도신리	65-2	전	3,529	2,369	김인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8-1005			
79	생극면	도신리	66-6	전	628	525	김인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8-1005			
80	생극면	도신리	128-1	전	88	88	이종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78-15			
81	생극면	도신리	129-1	답	56	56	미등기3	-	이보교		토지대장
82	생극면	도신리	130	답	169	169	국(재경원)				
83	생극면	도신리	131-1	과	2,064	2,064	강현정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6층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근저당권·지상권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181	
									진흥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북창동 93-52	
									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	
									경기상호저축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	
									영남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32-1	
84	생극면	도신리	131-3	잡	3,929	3,929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	리	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합 계					1,772,919	1,474,278					
85	생극면	도신리	132	전	4,253	4,253	강현정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6층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근저당권 · 지상권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181	
									진흥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북창동 93-52	
									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	
									경기상호저축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	
									영남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32-1	
86	생극면	도신리	133-1	전	947	947	강현정	서울 중구 서소문동 75-95 유원빌딩 16층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근저당권 · 지상권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181	
									진흥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북창동 93-52	
									한국상호저축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6	
									경기상호저축은행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	
									영남상호저축은행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32-1	
87	생극면	도신리	643-58	천	5,018	4,961	국(국토해양부)				
88	생극면	도신리	643-74	천	1,739	619	국(국토해양부)				
89	생극면	도신리	643-93	천	3,176	3,096	국(국토해양부)				
90	생극면	도신리	644	도	1,438	1,438	국(국토해양부)				
91	생극면	도신리	645	도	469	469	국(국토해양부)				
92	생극면	도신리	646	도	5,672	304	국(국토해양부)				
93	생극면	도신리	산8-1	임	119,008	113,591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94	생극면	도신리	산8-2	임	15,868	15,868	신종식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95	생극면	도신리	산9	임	11,901	11,901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96	생극면	도신리	산14	임	90,050	90,050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읍	리	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합 계					1,772,919	1,474,278					
97	생극면	도신리	산15-2	임	35,982	35,982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98	생극면	도신리	산15	임	25,705	25,705	풍양조씨 회덕공파 문중	충주군 주덕면 신양리 38			
99	생극면	도신리	산16	임	9,521	9,521	조성구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8			
100	생극면	도신리	산17	임	14,536	14,536 ×2/6	조남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33-6			
						14,536 ×6/2	조남주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346			
						14,536 ×6/2	조남원	청주시 복대동 913-15			
101	생극면	도신리	산18	임	34,910	34,910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102	생극면	도신리	산19	임	410,182	187,136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103	생극면	도신리	산20-1	임	48,793	23,602	(주)금왕개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31-3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신탁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지장물)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비 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1	생극	도신	1,2,3,4,7,7-1,7-2,7-3,6 43-58,644	인삼	6년생	8,700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김현수			시설물 포함
	금왕	정생	산25									
2	생극	도신	648-58	약줄	PVC	2	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잣나무	10년생	8	주	〃	〃			
	〃	〃	〃	잣나무	5년생	4	주	〃	〃			
3	생극	도신	5-1	매실나무	8년생	24	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매실나무	5년생	85	주	〃	〃			
4	생극	도신	5-2	다리	철골 및 콘크리트	30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철문	3M × 1M(H)	1	식	〃	〃			
	〃	〃	〃	주름관	6M × Φ1M	1	개	〃	〃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비 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	〃	〃	매실나무	5년생	36	주	〃	〃			
	〃	〃	〃	매실나무	8년생	132	주	〃	〃			
	〃	〃	〃	매실나무	10년생	85	주	〃	〃			
	〃	〃	〃	소나무	20년생	100	주	〃	〃			
	〃	〃	〃	잣나무	10년생	7	주	〃	〃			
	〃	〃	〃	산딸나무	10년생	145	주	〃	〃			
5	생극	도신	6-1	양어장 (1)	철근콘크리트조, 10×20×1.5(D)	1	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양어장 (2)	철근콘크리트조, 7×7×1(D)	1	식	〃	〃			
	〃	〃	〃	관정(1)	100M, 32mm	1	식	〃	〃			box포함
	〃	〃	〃	관정(2)		1	식	〃	〃			box포함
	〃	〃	〃	산딸나무	10년생	115	주	〃	〃			
	〃	〃	〃	산딸나무	5년생	60	주	〃	〃			
	〃	〃	〃	매실나무	10년생	45	주	〃	〃			
	〃	〃	〃	벗나무	15년생	5	주	〃	〃			
6	생극	도신	9	오미자	8년생	3,051	㎡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40-15	김덕순			지주대 포함
7	생극	도신	10-2	울타리	철재	13	M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철파이프 포함
	〃	〃	〃	흉관	콘크리트 6M×Φ60cm	1	개	〃	〃			
	〃	〃	〃	주름관	강판 1.5M×Φ80cm	1	개	〃	〃			
	〃	〃	〃	다리	콘크리트 1.5M×7M	1	개	〃	〃			
	〃	〃	〃	간판(1)	진불사, H2×W1	1	개	〃	〃			
	〃	〃	〃	간판(2)	위험, H1.8×W1	1	개	〃	〃			
	〃	〃	〃	장식석	자연석	1	식	〃	〃			
	〃	〃	〃	가로등		1	개	〃	〃			
	〃	〃	〃	잣나무	10년생	17	주	〃	〃			
	〃	〃	〃	잣나무	5년생	7	주	〃	〃			
	〃	〃	〃	향나무	20년생	125	주	〃	〃			
8	생극	도신	10-4	잣나무	10년생	3	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9	생극	도신	10-1	창고 (양봉)	철파이프조	115	㎡	충북청주시흥덕구 휴암동332-7	김태숙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비 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	〃	〃	벌통		1	식	〃	〃			
	〃	〃	〃	주목	10년생	1	주	〃	〃			
10	생극	도신	11-2	㉠주택	판넬조 판넬지붕	56.6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욕실	블럭조 스레트지붕	17.6	㎡	〃	〃			
	〃	〃	〃	㉢가닥1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49	㎡	〃	〃			
	〃	〃	〃	㉣가닥2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12.9	㎡	〃	〃			
	〃	〃	〃	㉤보일러실	블럭조 스레트지붕	10	㎡	〃	〃			
	〃	〃	〃	㉥창고	판넬조 판넬지붕	21.6	㎡	〃	〃			
	〃	〃	〃	㉦화장실	블럭조 스레트지붕	4.6	㎡	〃	〃			
	〃	〃	〃	골프연습장		1	식	〃	〃			
	〃	〃	〃	견사		2	개	〃	〃			
	〃	〃	〃	바닥1	파레트	7	개	〃	〃			
	〃	〃	〃	바닥2	블럭	49	㎡	〃	〃			
	〃	〃	〃	위성수신기		1	식	〃	〃			
	〃	〃	〃	전기	3kw	1	식	〃	〃			
	〃	〃	〃	주목	15년생	4	주	〃	〃			
	〃	〃	〃	매실나무	7년생	8	주	〃	〃			
	〃	〃	〃	노간주나무	20년생	1	주	〃	〃			
	〃	〃	〃	비닐하우스	5.5 × 17.5	96.2	㎡	〃	〃			
	〃	〃	〃	철대문		1	식	〃	〃			
	〃	〃	〃	식당	목조 스레트	52.5	㎡	〃	〃			
	〃	〃	〃	바닥(1)	콘크리트	153	㎡	〃	〃			
	〃	〃	〃	바닥(2)	콘크리트	84	㎡	〃	〃			
	〃	〃	〃	가로등(1)		1	개	〃	〃			
	〃	〃	〃	가로등(2)		1	개	〃	〃			
	〃	〃	〃	가로등(3)		1	개	〃	〃			
	〃	〃	〃	평상		1	개	〃	〃			
	〃	〃	〃	수도대		1	식	〃	〃			
	〃	〃	〃	계단	자연석	1	식	〃	〃			
	〃	〃	〃	회양목	8년생	54	주	〃	〃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비 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	〃	〃	연산홍	8년생	17	주	〃	〃			
	〃	〃	〃	소나무	15년생	12	주	〃	〃			
	〃	〃	〃	음나무	15년생	7	주	〃	〃			
	〃	〃	〃	무궁화	5년생	15	주	〃	〃			
	〃	〃	〃	매실나무	5년생	6	주	〃	〃			
	〃	〃	〃	주목	15년생	1	주	〃	〃			
	〃	〃	〃	주목	7년생	5	주	〃	〃			
	〃	〃	〃	향나무	5년생	1	주	〃	〃			
	〃	〃	〃	느티나무	30년생	8	주	〃	〃			
11	생극	도신	11-4	다리	콘크리트, 1.2×11M	1	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난간 포함
	〃	〃	〃	간판	LED	1	개	〃	〃			
	〃	〃	〃	펜스	철재	200	M	〃	〃			
	〃	〃	〃	문주	콘크리트 벽돌치장	2	개	〃	〃			
	〃	〃	〃	간판	시월가든, 2×0.5M	1	개	〃	〃			
	〃	〃	〃	관정		1	식	〃	〃			box포함
	〃	〃	〃	수도대		1	식	〃	〃			
	〃	〃	〃	가로등		2	개	〃	〃			
	〃	〃	〃	주름관	5M, Φ50cm	1	개	〃	〃			
	〃	〃	〃	느티나무	30년생	3	주	〃	〃			
	〃	〃	〃	느티나무	5년생	3	주	〃	〃			
	〃	〃	〃	매실나무	20년생	2	주	〃	〃			
	〃	〃	〃	매실나무	5년생	20	주	〃	〃			
	〃	〃	〃	주목	5년생	1	주	〃	〃			
	〃	〃	〃	회양목	8년생	10	주	〃	〃			
	〃	〃	〃	잣나무	10년생	2	주	〃	〃			
	〃	〃	〃	잣나무	15년생	17	주	〃	〃			
	〃	〃	〃	회화나무	8년생	2	주	〃	〃			
	〃	〃	〃	향나무	10년생	17	주	〃	〃			
12	생극	도신	11-4	비석	야계사비	1	개		충북산림환경연구소			
13	금왕	정생	272-2	테라스	철재	14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수도대		1	식	〃	〃			
	〃	〃	〃	그물망		100	M	〃	〃			지주대 포함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비 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	〃	〃	약줄	pvc	2	개	〃	〃			
	〃	〃	〃	계단	목재	1	식	〃	〃			
	〃	〃	〃	모과나무	10년생	2	주	〃	〃			
	〃	〃	〃	보리수나무	5년생	1	주	〃	〃			
	〃	〃	〃	배나무	5년생	5	주	〃	〃			
	〃	〃	〃	복숭아나무	5년생	1	주	〃	〃			
	〃	〃	〃	꽃나무	5년생	5	주	〃	〃			
	〃	〃	〃	대추나무	3년생	1	주	〃	〃			
	〃	〃	〃	살구나무	10년생	30	주	〃	〃			
	〃	〃	〃	매실나무	5년생	95	주	〃	〃			
	〃	〃	〃	매실나무	10년생	85	주	〃	〃			
	〃	〃	〃	소나무	15년생	37	주	〃	〃			
	〃	〃	〃	회화나무	5년생	5	주	〃	〃			
	〃	〃	〃	산딸나무	8년생	530	주	〃	〃			
14	금왕	정생	274	주택 (1층)	철근콘크리트조	134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주택 (2층)	철근콘크리트조	72	㎡	〃	〃			
	〃	〃	〃	조명		2	개	〃	〃			
	〃	〃	〃	장식석		1	식	〃	〃			
	〃	〃	〃	평상		2	개	〃	〃			
	〃	〃	〃	냉동기		1	대	〃	〃			
	〃	〃	〃	가닥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40	㎡	〃	〃			
	〃	〃	〃	건조기		1	대	〃	〃			
	〃	〃	〃	창고	판넬조 판넬지붕	13	㎡	〃	〃			
	〃	〃	〃	장독대		1	식	〃	〃			
	〃	〃	〃	심야전기 보일러		1	식	〃	〃			
	〃	〃	〃	컨테이너	2.6 × 10M	1	개	〃	〃			
	〃	〃	〃	컨테이너	3 × 6	2	개	〃	〃			
	〃	〃	〃	약통		2	개	〃	〃			
	〃	〃	〃	유리병	1.2m×1.2m×1.2m	1	식	〃	〃			
	〃	〃	〃	고무통		5	개	〃	〃			
	〃	〃	〃	가닥	철골조 썬라이트지붕	45	㎡	〃	〃			
	〃	〃	〃	저온창고		1	식	〃	〃			
	〃	〃	〃	위성수신기		1	식	〃	〃			
	〃	〃	〃	CCTV		1	식	〃	〃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비 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	〃	〃	조명		1	식	〃	〃			
	〃	〃	〃	스피커		1	식	〃	〃			
	〃	〃	〃	바닥	콘크리트	225.5	㎡	〃	〃			
	〃	〃	〃	가로등		1	개	〃	〃			
	〃	〃	〃	향나무	30년생	6	주	〃	〃			
	〃	〃	〃	향나무	10년생	3	주	〃	〃			
	〃	〃	〃	느릅나무	30년생	1	주	〃	〃			
	〃	〃	〃	벚나무	30년생	3	주	〃	〃			
	〃	〃	〃	벚나무	10년생	1	주	〃	〃			
	〃	〃	〃	무궁화	10년생	8	주	〃	〃			
15	금왕	정생	274-2	식당(1)	벽돌조 싱글지붕	117.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식당(2)	철골조 싱글지붕	55	㎡	〃	〃			
	〃	〃	〃	바닥	콘크리트	118.5	㎡	〃	〃			
	〃	〃	〃	수족관		3	개	〃	〃			
	〃	〃	〃	계단(1)	자연석	1	식	〃	〃			
	〃	〃	〃	계단(2)	자연석	1	식	〃	〃			
	〃	〃	〃	위성안테나		1	식	〃	〃			
	〃	〃	〃	간판(1)	1M × 20cm	2	개	〃	〃			
	〃	〃	〃	간판(2)	LED	1	개	〃	〃			
	〃	〃	〃	간판(3)		1	개	〃	〃			
	〃	〃	〃	화단	자연석	1	식	〃	〃			
	〃	〃	〃	전기	15Kw	1	식	〃	〃			
	〃	〃	〃	보리수나무	10년생	3	주	〃	〃			
	〃	〃	〃	꽃나무	5년생	3	주	〃	〃			
16	금왕	정생	274-4	장식석	자연석	1	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장독대		1	식	〃	〃			
	〃	〃	〃	향나무	30년생	1	주	〃	〃			
17	금왕생극	정생도신	275 643-58	방갈로(1)	경량철골조 싱글지붕	19.5	㎡	충북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274-2	윤석태			
	〃	〃	〃	방갈로(2)	경량철골조 싱글지붕	19.5	㎡	〃	〃			
	〃	〃	〃	테라스	목재	81	㎡	〃	〃			
18	금왕생극	정생도신	275 643-58	계단	자연석	1	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장식석		1	식	〃	〃			
	〃	〃	〃	분수대		1	식	〃	〃			
	〃	〃	〃	회양목	5년생	7	주	〃	〃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비 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	〃	〃	향나무	20년생	10	주	〃	〃			
	〃	〃	〃	소나무	15년생	1	주	〃	〃			
19	금왕	정생	275 산25	방갈로 (1)	목조 싱글지붕	10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방갈로 (2)	목조 싱글지붕	13.5	㎡	〃	〃			
	〃	〃	〃	방갈로 (3)	목조 싱글지붕	13.5	㎡	〃	〃			
	〃	〃	〃	계단	철재	1	식	〃	〃			
	〃	〃	〃	계단	자연석	3	식	〃	〃			
	〃	〃	〃	가로등		4	개	〃	〃			
	〃	〃	〃	동백나무	8년생	22	주	〃	〃			
	〃	〃	〃	주목	10년생	28	주	〃	〃			
	〃	〃	〃	향나무	20년생	10	주	〃	〃			
	〃	〃	〃	소나무	20년생	7	주	〃	〃			
	〃	〃	〃	산딸나무	15년생	2	주	〃	〃			
	〃	〃	〃	벗나무	30년생	6	주	〃	〃			
	〃	〃	〃	회화나무	15년생	1	주	〃	〃			
20	금왕	정생	276-1	컨테이너	2.6 × 12M	1	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16-107	최용탁			
	〃	〃	〃	냉장고		2	대	〃	〃			
	〃	〃	〃	냉방기		1	대	〃	〃			
	〃	〃	〃	장식석	10M × 20M	1	식	〃	〃			
	〃	〃	〃	주름관		3	개	〃	〃			
	〃	〃	〃	두릅나무		16	㎡	〃	〃			
	〃	〃	〃	회양목	5년생	12	주	〃	〃			
	〃	〃	〃	주목	10년생	20	주	〃	〃			
	〃	〃	〃	향나무	15년생	12	주	〃	〃			
	〃	〃	〃	소나무	15년생	17	주	〃	〃			
	〃	〃	〃	벗나무	30년생	10	주	〃	〃			
	〃	〃	〃	연산홍	8년생	25	주	〃	〃			
21	금왕 생극	정생 도신	산25 643-58	대문	목재	1	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3 아크로비스타씨 -2705	김우영			
	〃	〃	〃	바닥	콘크리트	96	㎡	〃	〃			
	〃	〃	〃	동백나무	15년생	1	주	〃	〃			
	〃	〃	〃	쥐똥나무	5년생	35	M	〃	〃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비 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	〃	〃	주목	10년생	1	주	〃	〃			
	〃	〃	〃	연산홍	5년생	14	주	〃	〃			
22	금왕	정생	276-3 산25	주택	벽돌조 강판기와지붕	82.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3 아크로비스타씨 -2705	김우영			
	〃	〃	〃	식당	목조 스레트지붕	40	㎡	〃	〃			
	〃	〃	〃	가닥	목조 썬라이트지붕	10	㎡	〃	〃			
	〃	〃	〃	장식석		1	식	〃	〃			
	〃	〃	〃	조명		17	개	〃	〃			
	〃	〃	〃	수도대		1	식	〃	〃			
	〃	〃	〃	장독대		1	식	〃	〃			
	〃	〃	〃	불상		2	식	〃	〃			
	〃	〃	〃	화장실	판넬조 강판기와지붕	8	㎡	〃	〃			
	〃	〃	〃	소나무	30년생	2	주	〃	〃			
	〃	〃	〃	소나무	20년생	8	주	〃	〃			
	〃	〃	〃	소나무	10년생	5	주	〃	〃			
	〃	〃	〃	주목	20년생	2	주	〃	〃			
	〃	〃	〃	주목	10년생	1	주	〃	〃			
	〃	〃	〃	단풍나무	30년생	1	주	〃	〃			
	〃	〃	〃	단풍나무	10년생	1	주	〃	〃			
	〃	〃	〃	은행나무	30년생	1	주	〃	〃			
	〃	〃	〃	회양목	5년생	50	주	〃	〃			
	〃	〃	〃	음나무	5년생	3	주	〃	〃			
	〃	〃	〃	후박나무	10년생	1	주	〃	〃			
	〃	〃	〃	찹싸리나무	5년생	20	M	〃	〃			
	〃	〃	〃	자두나무	20년생	2	주	〃	〃			
	〃	〃	〃	메타쉐콰이어	30년생	2	주	〃	〃			
	〃	〃	〃	벗나무	30년생	1	주	〃	〃			
	〃	〃	〃	수국	10년생	10	주	〃	〃			
	〃	〃	〃	지작나무	20년생	1	주	〃	〃			
	〃	〃	〃	연산홍	5년생	70	주	〃	〃			
23	금왕	정생	276-3	법당(1)	판넬조 판넬지붕	36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3 아크로비스타씨 -2705	김우영			
	〃	〃	〃	테라스(1)	목재	51	㎡	〃	〃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비 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	〃	〃	법당(2)	판넬조 판넬지붕	24.7	㎡	〃	〃			
	〃	〃	〃	테라스(2)	목재	16.3	㎡	〃	〃			
	〃	〃	〃	육각정	목조 기와지붕	16.2	㎡	〃	〃			
	〃	〃	〃	계단	목재	1	식	〃	〃			
	〃	〃	〃	주름관	5M, Φ50cm	1	개	〃	〃			
	〃	〃	〃	주목	30년생	7	주	〃	〃			
	〃	〃	〃	주목	5년생	1	주	〃	〃			
	〃	〃	〃	단풍나무	20년생	270	주	〃	〃			
	〃	〃	〃	벚나무	30년생	20	주	〃	〃			
	〃	〃	〃	회화나무	3년	7	주	〃	〃			
	〃	〃	〃	앵두나무	8년생	1	주	〃	〃			
	〃	〃	〃	향나무	15년생	12	주	〃	〃			
	〃	〃	〃	소나무	15년생	12	주	〃	〃			
24	생극	도신	35-1,35-2, 36-1,36-2, 37-1,37-2, 37-3, 38	견사	철재	150	M	충북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음성로1404번길 5-6	신교순			
	〃	〃	〃	개		150	두	〃	〃			
	〃	〃	〃	창고(1)	철골조 함석지붕	48	㎡	〃	〃			
	〃	〃	〃	창고(2)	철골조 함석지붕	120	㎡	〃	〃			
	〃	〃	〃	냉동창고		1	식	〃	〃			
	〃	〃	〃	사료분쇄기 외		2	대	〃	〃			
	〃	〃	〃	흉관	콘크리트	1	식	〃	〃			
	〃	〃	〃	울타리및 대문		1	식	〃	〃			
	〃	〃	〃	동산이전비		1	식	〃	〃			
25	생극	도신	23-2	울타리		70	M	충북음성군금왕읍 무극리680	전계숙			
26	생극	도신	20-2	지주대		285	개	인천시남구주안동1466-7 광성아파트 다-410	최순묵			
27	생극	도신	22-1	주목	15년생	12	주	충북음성군생극면 도신리138	유용우			
	〃	〃	〃	보리수나무	10년생	8	주	〃	〃			
	〃	〃	〃	밤나무	10년생	3	주	〃	〃			
	〃	〃	〃	꽃나무	5년생	1	주	〃	〃			
28	생극	도신	산16	오미자	8년생	870	㎡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140-15	김덕순			지주대 포함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비 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29	금왕	정생	275	영업권	방갈로 5동外 (시월가든)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274-2	윤석태			

◉경기도공고제2013-18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이앤피
2. 대 표 자 : 서상원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1, 404호(고잔동, 웅신아트프라자),(전화 :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68 호
6. 등 록 일자 : 2013. 2. 5.

◉경기도공고제2013-19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하이텍환경
2. 대 표 자 : 구경보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99, 403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
5. 지정번호 : 수질환경(경기도 제67호)
6. 등 록 일자 : 2013. 2. 5.

◉경기도공고제2013-21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한조엔지니어링 (김형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7번길 19	수질 (제106호)	2002.10. 4	2013. 2. 6	등록취소 (자진반납)
한일기계공업㈜ 시흥지점 (석진수)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6길 13-1 월드프라자 602호	대기 (제209호)	2011. 6. 2	2013. 2. 6	등록취소 (자진반납)

◉전라남도공고제2013-146호

대기,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고
등록취소	남양건설 (주)	마찬호	나주시 송월동 1095-5	대기환경전문공사업(제5호)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제2호)	2013. 2. 5.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6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시행(변경)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부산국제외고 행정실 ☎051-742-190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한독학원 이사장 임 수 복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39-7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부지면적 : 당초 20,775.0㎡ 변경 24,359.00㎡ 증) 3,584.00㎡

나) 건축면적 : 당초 5,362.23㎡ 변경 6,140.68㎡ 증) 778.45㎡

다) 연 면 적 : 당초 18,489.04㎡ 변경 20,283.80㎡ 증) 1,794.76㎡

라) 재 원 : 학교 회계(학교법인 한독학원)

마) 사업시행기간 : 2013년 02월 ~ 2014년 01월

5) 변경내용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사업(부지)면적 확장 등

6)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가) 학교(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학교	고등학교	해운대구 우동 1025-127번지 일원	20,775			부고제266호 (73.5.5)	
변경	16	학교	고등학교	해운대구 우동 1025-127번지 일원		증) 3,584	24,35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1 참조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별첨2 참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나.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부산국제외구어고등하교 행정실)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행정실 051-742-1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1025 -8	학	6,616	6,616	6,616	-	6,616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 139-7				
2	1025 -111	학	111	111	111	-	111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 139-7				
3	1025 -105	학	627	627	627	-	627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 139-7				
4	1025 -127	학	13,421	13,699	13,421	증) 278	13,699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 139-7				면적정정
5	산139 -126	임	-	3,306	-	증) 3,306	3,306	학교법인 한독학원	해운대구 우동 산 139-7				185,560/ 186.510
								(주)동부 산프라자	해운대구 우동957-40				950/ 186.510
합 계			20,775	24,359	20,775	증) 3,584	24,359						

(별첨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구분	동별	층별	개요			
			용도	면적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기존 건물	1동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	1,277.39	22.72	1,300.11
		1층	교육연구시설	1,858.58	223.47	2,082.05
		2층	교육연구시설	1,611.87	182.62	1,794.49
		3층	교육연구시설	1,676.74	182.62	1,859.36
		4층	교육연구시설	1,674.74	182.62	1,859.36
		5층	교육연구시설	784.32	36.43	820.75
		계		8,885.64	830.48	9,716.12
기존 건물	2동	1층	교육연구시설	140.39	-	140.39
		2층	교육연구시설	140.39	-	140.39
		3층	교육연구시설	134.75	-	134.75
		계		415.53	-	415.53
금회 증축 건물	7동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설비관련제실,HALL)	214.59	-	214.59
		1층	교육연구시설(시청각실)	778.45	-	778.45
		2층	교육연구시설(다목적강당)	736.36	-	736.36
		3층	교육연구시설(화장실)	65.36	-	65.36
		계		1,794.76		1,794.76
합계				11,095.93	830.48	11,926.41

•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구분	동별	층별	개요			
			용도	면적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기존 건물	3동	1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2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3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4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5층	교육연구시설	-	532.20	532.20
		계		-	2,661.00	2,661.00
기존 건물	4동	1층	교육연구시설	-	297.11	297.11
		계		-	297.11	297.11
기존 건물	5동	1층	교육연구시설(주차장,전기실)	-	725.03	725.03
		2층	교육연구시설(식당)	-	707.87	707.87
		3층	교육연구시설	-	725.06	725.06
		4층	교육연구시설(강당)	-	485.13	485.13
		계		-	2,643.06	2,643.06
기존 건물	6동	1층	교육연구시설	-	855.99	855.99
		2층	교육연구시설	-	922.99	922.99
		3층	교육연구시설	-	469.70	469.70
		4층	교육연구시설	-	507.54	507.54
		계		-	2,756.22	2,756.22
합계				-	8,357.39	8,357.39

상 훈

'검찰업무수행'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고등검찰청	김학의	황조근정훈장
법무부	이창세	황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김진수	홍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이용	홍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허상구	홍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양근복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학석	홍조근정훈장
대구고등검찰청	이의경	홍조근정훈장

2012. 12. 28.

'우수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검찰청	김형동	녹조근정훈장
법무부	최상환	근정포장
법무부	유지중	근정포장

2012. 12. 31.

'퇴직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지방검찰청	김병화	황조근정훈장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신완섭	홍조근정훈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손종하	홍조근정훈장
법무부	안동주	홍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이상승	홍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허익성	홍조근정훈장
대전고등검찰청	최연식	홍조근정훈장
광주고등검찰청	이상혁	홍조근정훈장
대검찰청	신광수	홍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수	홍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봉배	홍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익규	홍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장기화	홍조근정훈장
청주지방검찰청	권상주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배병관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박환곤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장해기	홍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장동진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신공	홍조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정수근	홍조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유남진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김경도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재영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달영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백재현	홍조근정훈장
광주소년원	한봉철	녹조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송효근	녹조근정훈장
청주소년원	김동은	녹조근정훈장
인천보호관찰소	임명빈	녹조근정훈장
춘천보호관찰소	김태영	녹조근정훈장
청주보호관찰소	박준서	녹조근정훈장
전주보호관찰소	황창연	녹조근정훈장
안양교도소	김일수	녹조근정훈장
춘천교도소	조용순	녹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박종소	녹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이근재	녹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이원복	녹조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이영수	녹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이상재	녹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최규대	녹조근정훈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김성우	녹조근정훈장
강릉교도소	이태현	녹조근정훈장
수원보호관찰소	허성영	녹조근정훈장
법무부	한창열	녹조근정훈장
대전소년원	정형호	녹조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안해종	녹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형곤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김순만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오광석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정초국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백승열	녹조근정훈장
부산소년원	임부규	옥조근정훈장
치료감호소	박천섭	옥조근정훈장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김근호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김주배	옥조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종한	옥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강용현	옥조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안점문	옥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이규섭	옥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오명환	옥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고제규	옥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김봉주	옥조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김성영	옥조근정훈장
안양교도소	조성천	옥조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이형주	옥조근정훈장
강릉교도소	계경택	옥조근정훈장
성동구치소	정태선	옥조근정훈장
성동구치소	김진배	옥조근정훈장
성동구치소	임형규	옥조근정훈장
성동구치소	백광현	옥조근정훈장
성동구치소	유귀희	옥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정종국	옥조근정훈장
인천구치소	조찬규	옥조근정훈장
여주교도소	박호건	옥조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고. 박명성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선우명옥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박덕문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최성호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이성렬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이성기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권원수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황의수	옥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장창기	옥조근정훈장
대구교도소	하상율	옥조근정훈장
부산교도소	최재승	옥조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오종락	옥조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최태환	옥조근정훈장
안동교도소	김점일	옥조근정훈장
울산구치소	주병모	옥조근정훈장
통영구치소	김정섭	옥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박성근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김천소년교도소	이성길	옥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성환명	옥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도충회	옥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권영신	옥조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현희두	옥조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형선	옥조근정훈장
창원교도소	이국향	옥조근정훈장
창원교도소	남홍중	옥조근정훈장
천안개방교도소	나상철	옥조근정훈장
천안개방교도소	이운헌	옥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윤경오	옥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김선태	옥조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장인선	옥조근정훈장
충주구치소	양주현	옥조근정훈장
충주구치소	손보현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송창호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김병호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박상철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박주영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서형근	옥조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유성곤	옥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김상오	옥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정경자	옥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이권규	옥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왕태후	옥조근정훈장
광주교도소	박옥균	옥조근정훈장
전주교도소	한은수	옥조근정훈장
전주교도소	김명규	옥조근정훈장
전주교도소	김순용	옥조근정훈장
전주교도소	한수형	옥조근정훈장
목포교도소	홍부칠	옥조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주중인	옥조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이돈진	옥조근정훈장
장흥교도소	황의태	옥조근정훈장
장흥교도소	김재봉	옥조근정훈장
장흥교도소	김용호	옥조근정훈장
해남교도소	김용재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교도소	신학종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윤정구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최락서	옥조근정훈장
청주교도소	황인선	옥조근정훈장
제주교도소	송창기	옥조근정훈장
홍성교도소	고창섭	옥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김복규	옥조근정훈장
부산구치소	차민평	옥조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임인택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최행진	옥조근정훈장
제주지방검찰청	정기권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영선	옥조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정정옥	근정포장
안양교도소	구병현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손치헌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김윤종	근정포장
창원교도소	정홍모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오영규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김병희	근정포장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이수인	근정포장
대검찰청	강순이	근정포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장윤철	근정포장

2012. 12. 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보건복지부	염 민 섭	근정포장
국무총리실	김 민	근정포장

2013. 2. 5.

(대통령)

기 타

○공 고

1. 군사법원법 제5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031-585-0529)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5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3년 2월 12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죄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2형제54호	2012압제3호	이병 김태희	사기 등	성명불상 (피해자)	1	MCM지갑	1개
					2	일만원권 지폐	20개
					3	오천원권 지폐	2개
					4	천원권 지폐	3개
					5	G-SHOCK 손목시계	1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2월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품명	수량
2012형제3932호	2012압제104호	박엄복 외 3	상해치사 등	조은선	9	어린이용 롱스타킹	5개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서(033-742-8005)로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2월 12일

강원원주경찰서장

접수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1-10350	2011-93	한동민외1	특수절도	불상	1	CT100 오토바이	1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4 형사보상
(2009재고약3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옥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035-1

송달장소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8-107

대표이사 조유생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재고약3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85,68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7. 1. 9. 이 법원 2006고약54970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4. 23.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09재고약38)은 2009. 12. 30.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0. 1. 7.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7. 4. 24.부터 이 사건 보상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385,684원{=300,000원+300,000원×연5%×(5+260/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6 형사보상

(2009재고약4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옥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035-1

송달장소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8-107

대표이사 조유생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재고약4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65,79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7. 9. 27. 이 법원 2007고약39143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8. 20.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09재고약40)은 2009. 12. 18.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09. 12. 29.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8. 8. 21.부터 이 사건 보상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365,794원{=300,000원+300,000원×연5%×(4+141/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03 형사보상

(2012고단317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남북통운

소재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150-71

대표자 사내이사 전우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고단3173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999,273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약7285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4. 6. 21.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

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3173)은 2012. 7. 12.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7. 20.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4. 6. 22.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999,273원{=700,000원+700,000원×연5%×(8+201/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05 형사보상

(2012고단35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양양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80-10

송달장소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2-15 금풍빌딩 4층

대표이사 전재범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2고단35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711,57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4.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약7567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4. 7. 23.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358)은 2012. 4. 26.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5. 4.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4. 7. 24.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711,575원{=500,000원+500,000원×연5%×(8+169/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07 형사보상

(2012고단111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양양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80-10

송달장소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2-15 금풍빌딩 4층

대표이사 전재범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2고단111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725,68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고약53846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3. 12. 29.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1115)은 2012. 4. 19.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4. 27.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3. 12. 30.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725,684원{=500,000원+500,000원×연5%×(9+10/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11 형사보상

(2012고단484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관악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0-16

대표이사 김종훈, 김재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고단484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27,52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고약33442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4. 7. 9.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4846)은 2012. 10. 5.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10. 13.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4. 7. 10.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427,520원{=300,000원+300,000원×연5%×(8+183/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13 형사보상

(2012고단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유비오션(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덕안상사)

소재지 서울 중구 산림동 82-3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2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박창욱, 박창주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6. 선고 2012고단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731,63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3.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약31790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4. 3. 31.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김두환을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7)은 2012. 1. 26.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2. 3.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4. 4. 1.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431,630원{=300,000원+300,000원×연5%×(8+283/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731,630원(=431,630원+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15 형사보상

(2012고단493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수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성북구 한천로 573 (석관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3호
대표이사 이순복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단493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004,10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98.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97고약58724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998. 11. 9.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변호사 여운승을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4936)은 2012. 10. 11.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10. 19.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8. 11. 10.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854,109원{=500,000원+500,000원×연5%×(14+60/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1,004,109원(=854,109원+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17 형사보상

(2012고단273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오대통상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금관 305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301호

대표이사 김용우

대 리 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고은석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고단273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059,65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2.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고약26654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8. 20.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고은석을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2735)은 2012. 8. 30.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9. 7.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2. 8. 21.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759,657원{=500,000원+500,000원×연5%×(10+141/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1,059,657원(=759,657원+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19 형사보상
(2012고단317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오대통상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금관 305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301호
대표이사 김용우
대 리 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고은석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고단317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060,68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2.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고약24346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8. 5.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고은석을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3171)은 2012. 7. 12.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7. 20.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2. 8. 6.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760,684원{=500,000원+500,000원×연5%×(10+156/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1,060,684원(=760,684원+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25 형사보상

(2012고단472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성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0-7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김진세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5. 선고 2012고단472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050,61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약28155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12. 30.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를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4724)은 2012. 10. 15.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10. 23.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2. 12. 31.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750,616원{=500,000원+500,000원×연5%×(10+9/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1,050,616원(=750,616원+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27 형사보상
(2012고단427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성남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용산구 남영동 59-2호 3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김명수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단427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90,35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93.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93고약39141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994. 12. 13.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를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4274)은 2012. 9. 14.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9. 22.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4. 12. 14.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190,356원{=100,000원+100,000원×연5%×(18+26/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

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490,356원(=190,356원+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29 형사보상

(2012고단313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원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이천시 율면 석산리 505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정삼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2고단3133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841,06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94.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94고약32805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996. 2. 13.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를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3133)은 2012. 7. 19.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7. 27.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6. 2. 14.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541,068원{=300,000원+300,000원×연5%×(16+26/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841,068원(=541,068원+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31 형사보상
(2012고단364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성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0-7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김진세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고단364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593,36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96. 4. 3. 서울중앙지방법원 96고약5043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996. 1. 26.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를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3640)은 2012. 8. 30.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9. 7.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6. 1. 27.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1,293,369원{=700,000원+700,000원×연5%×(16+348/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1,593,369원(=1,293,369원+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33 형사보상

(2012고단493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우성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0-7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김진세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단493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870,32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9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94고약37503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994. 12. 31. 위 벌금을 납

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를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4934)은 2012. 10. 11.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10. 19.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5. 1. 1.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570,328원{=300,000원+300,000원×연5%×(18+8/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870,328원(=570,328원+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35 형사보상
(2012고단427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선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0-7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김진세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단427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205,61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96.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96고약38830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996. 10. 18.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를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4275)은 2012. 9. 14.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9. 22.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6. 10. 19.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905,616원{=500,000원+500,000원×연5%×(16+82/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1,205,616원(=905,616원+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37 형사보상

(2012고단427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마포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 1101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4층

대표이사 이재훈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단4273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864,61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9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95고약21234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995. 5. 19. 위 벌금을 납

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를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4273)은 2012. 9. 14.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9. 22.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벌금집행보상청구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5. 5. 20.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564,616원{=300,000원+300,000원×연5%×(17+234/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및 기준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나. 판단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위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864,616원(=564,616원+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39 형사보상
(2012고단360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동방익스프레스

소재지 인천 서구 경서동 350-95

송달장소 인천 동구 송림동 295 산업유통센타 편익상가 씨동 209호

대표이사 남궁용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고단360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933,39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6.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약53331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5. 9.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3607)은 2012. 8. 31.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9. 8.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6. 5. 10.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인 933,397원{=700,000원+700,000원×연5%×(6+244/365)년,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41 형사보상
(2012고단14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현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2고단14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48,52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2.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고약36507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3. 1. 17.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145)은 2012. 2. 15.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2. 23.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3. 1. 18.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448,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43 형사보상
(2012고단14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현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2고단14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738,97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2.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고약40935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3. 5. 22.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148)은 2012. 2. 15.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2. 23.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3. 5. 23.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738,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45 형사보상
(2012고단17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현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9. 선고 2012고단17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861,64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9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98고약30454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1998. 6. 26.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174)은 2012. 3. 9.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3. 17.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1998. 6. 27.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861,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47 형사보상
(2012고단17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현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9. 선고 2012고단17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799,04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고약13803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0. 12. 26.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176)은 2012. 3. 9.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3. 17.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0. 12. 27.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799,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49 형사보상
(2012고단17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현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9. 선고 2012고단17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784,24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0.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고약17068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1. 7. 30.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178)은 2012. 3. 9.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3. 17.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1. 7. 31.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784,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51 형사보상
(2012고단18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현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9. 선고 2012고단18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062,94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2.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고약18581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7. 30.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180)은 2012. 3. 9.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3. 17.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2. 7. 31.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62,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53 형사보상
(2012고단18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현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9. 선고 2012고단182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47,73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2.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고약18699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3. 2. 5.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182)은 2012. 3. 9.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3. 17.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3. 2. 6.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447,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55 형사보상
(2012고단2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이사 이현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2고단25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726,71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3.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약25665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3. 11. 17.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한 사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결정}, ③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재심법원(이 법원 2012고단251)은 2012. 3. 21.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2. 3. 29.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원판결인 제1의 ①항 기재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3. 11. 18.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1. 8.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726,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준현

판사 양석용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082 형사보상
(2012고단279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진양실업 주식회사 (130111-*******)
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4 에이스프라자 502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2 일광빌딩 3층 301호
대표이사 조한묵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고은석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고단279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344,54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1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99고약5121	대전지방법원	1999. 6. 3.	700,000원	2000. 4. 14.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2792	대전지방법원	2012. 9. 6.	무죄	2012. 9. 14.

2. 보상금액의 산정

가.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700,000원	2000. 4. 14.	2012. 12. 26.	700,000원 +700,000원 × (12 +256/365) × 5%	1,144,547원

나. 무죄판결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변호인의 보수(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	200,000원

3. 보상결정액 1,344,547원

청구인은 변호사여비, 청구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2. 12. 26.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058 형사보상
(2012고단315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협신운송사 (160113-*******)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오월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고단315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93,97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3고약12991	대전지방법원	1993. 11. 16.	100,000원	1994. 3. 10.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157	대전지방법원	2010. 10. 31.	무죄	2012. 11. 8.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100,000원	1994. 3. 10.	2012. 12. 26.	100,000원 +100,000원 × (18 +290/365) × 5%	193,972원

3. 보상결정액 193,972원

2012. 12. 26.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1199 형사보상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330 강간치상)

청 구 인 이호상 (910424-*******)
주거 논산시 양촌면 석서리 272
등록기준지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38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12. 20. 선고 2010고합33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1,533,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대전지방법원 2010. 12. 20. 선고 2010고합330 판결 : 무죄
나. 대전고등법원 2011. 3. 11. 선고 2011노12 판결 : 검사 항소기각
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3741 : 검사 상고기각, 2012. 5. 24. 확정
2. 형사비용보상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가. 형사비용보상의 범위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함(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나. 피고인의 일당, 여비(운임, 식비)
1) 일당(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00,000원{= 4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0, 2011년도의 증인의 일당) × 5회(출석횟수)}
2) 여비(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규칙 제3조)
가) 운임
(1) 1심 재판에 소요된 운임
○ 청구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장동 48 대덕대학 기숙사 302호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의 왕복 교통요금 : 2,200원(= 일반버스요금 1,100원 × 2회)
○ 출석횟수 : 2회
○ 소계 : 4,400원(= 2,200원 × 2회)
(2) 항소심 재판에 소요된 운임
○ 청구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양촌면 석서리에서 대전고등법원까지의 왕복 교통요금 : 9,600원[= 편도 4,800원{= 일반버스요금 2,200원(1,100원 × 2회) + 기차요금 2,600원} × 2회]
○ 출석횟수 : 3회
○ 소계 : 28,800원(= 9,600원 × 3회)
(3) 총 운임
33,200원(= 4,400원 + 28,800원)
나) 식비
100,000원{= 20,000원(1일당 식비) × 5회(출석횟수)}
다) 총 여비
133,200원{= 33,200원(운임) + 100,000원(식비)}
다. 변호인의 보수(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1,200,000원{= 600,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1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는 300,000원이나,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역할, 재판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액) × 2심급}, 한편 청구인은 변호인

의 여비·일당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숙박료와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도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계

1,533,200원{= 200,000원(피고인의 일당) + 133,200원(피고인의 여비) + 1,200,000원(변호인의 보수)}

3. 보상결정액 : 1,533,200원

2013. 1. 14.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64 형사보상

(2012고단375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창기업 (160111-*******)

소재지 대전 유성구 원내동 73-6 1층

대표이사 신봉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고단375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267,95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6고약6299	대전지방법원	1996. 7. 15.	700,000원	1996. 11. 8.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757	대전지방법원	2012. 11. 28.	무죄	2012. 12. 6.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700,000원	1996. 11. 8.	2013. 1. 30.	700,000원 +700,000원 × (16 + 83/365) × 5%	1,267,958원

3. 보상결정액 1,267,958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60 형사보상

(2012고단420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안진운수 합자회사 (160113-*******)

소재지 대전 대덕구 대화동 233-6

대표사원 김철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고단420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42,73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4677	대전지방법원	1994. 7. 1.	500,000원	1995. 5. 16.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205	대전지방법원	2012. 11. 30.	무죄	2012. 12. 8.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5. 5. 16.	2013. 1. 30.	500,000원 +500,000원 × (17 + 259/365) × 5%	942,739원

3. 보상결정액 942,739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56 형사보상

(2012고단348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국화물운수 합자회사 (160113-*******)

소재지 대전 중구 산서로 57(사정동)

송달장소, 대전 중구 사정동 441-3 201호

대표사원 최우일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고단348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74,02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6463	대전지방법원	1994. 7. 23.	200,000원	1995. 9. 5.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487	대전지방법원	2012. 11. 28.	무죄	2012. 12. 6.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200,000원	1995. 9. 5.	2013. 1. 30.	200,000원 + 200,000원 × (17 + 147/365) × 5%	374,027원

3. 보상결정액 374,027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52 형사보상

(2012고단390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현대화물운수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93-7

대표이사 육상열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390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82,013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0고약5661	대전지방법원	2000. 6. 23.	300,000원	2000. 12. 12.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07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0. 12. 12.	2013. 1. 30.	300,000원 + 300,000원 × (12 + 49/365) × 5%	482,013원

3. 보상결정액 482,013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48 형사보상

(2012고단403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삼광통운 (160113-*******)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이창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고단403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64,65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5979	대전지방법원	1994. 7. 26.	500,000원	1994. 6. 30.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033	대전지방법원	2012. 11. 28.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4. 6. 30.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8 + 214/365) × 5%	964,657원

3. 보상결정액 964,657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40 형사보상

(2012고단403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울산특수화물 주식회사 (181211-*******)

소재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9-1

대표이사 김시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403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78,52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13331	대전지방법원	1995. 1. 16.	200,000원	1995. 3. 25.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037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200,000원	1995. 3. 25.	2013. 1. 30.	200,000원 + 200,000원 × (17 + 311/365) × 5%	378,520원

3. 보상결정액 378,52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36 형사보상

(2012고단421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금남화물 (160114-*******)

소재지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 608호

대표이사 박제순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6. 선고 2012고단421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79,73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5448	대전지방법원	1994. 6. 27.	300,000원	1994. 6. 7.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215	대전지방법원	2012. 11. 26.	무죄	2012. 12. 4.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1994. 6. 7.	2013. 1. 30.	300,000원 + 300,000원 × (18 + 237/365) × 5%	579,739원

3. 보상결정액 579,739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32 형사보상

(2012고단402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충남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 608호

대표이사 박용순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402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49,18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8561	대전지방법원	1994. 9. 2.	500,000원	1995. 2. 11.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020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5. 2. 11.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7 + 354/366) × 5%	949,180원

3. 보상결정액 949,18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24 형사보상

(2012고단374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대원운송사 (160113-*******)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349

공동대표사원 고선영, 고희정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374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1고약1845	대전지방법원	2001. 4. 18.	500,000원	2001. 6. 29.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746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1. 6. 29.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1 + 215/365) × 5%	789,726원

3. 보상결정액(청구인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인용) 500,00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28 형사보상

(2012고단402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충남운수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 608호

대표이사 박용순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고단402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8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4907	대전지방법원	1994. 6. 16.	200,000원	1994. 9. 6.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027	대전지방법원	2012. 11. 28.	무죄	2012. 12. 6.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200,000원	1994. 9. 6.	2013. 1. 30.	200,000원 + 200,000원 × (18 + 146/365) × 5%	384,000원

3. 보상결정액 384,00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20 형사보상

(2012고단396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동방통운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2층 208호

대표자 사내이사 장형오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396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70,15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8고약4616	대전지방법원	2008. 3. 25.	300,000원	2008. 5. 28.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62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8. 5. 28.	2013. 1. 30.	300,000원 + 300,000원 × (4 + 247/365) × 5%	370,150원

3. 보상결정액 370,15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16 형사보상

(2012고단421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금남화물 (160114-*******)

소재지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 608호

대표이사 박제순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고단421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60,753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3862	대전지방법원	1994. 6. 10.	500,000원	1994. 8. 26.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216	대전지방법원	2012. 11. 30.	무죄	2012. 12. 8.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4. 8. 26.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8 + 157/365) × 5%	960,753원

3. 보상결정액 960,753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12 형사보상

(2012고단421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금남화물 (160114-*******)

소재지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 608호

대표이사 박제순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421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46,36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5483	대전지방법원	1994. 7. 4.	500,000원	1995. 3. 24.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211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5. 3. 24.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7 + 312/365) × 5%	946,369원

3. 보상결정액 946,369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08 형사보상

(2012고단403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삼광통운 (160113-*******)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이창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403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6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2580	대전지방법원	1994. 5. 9.	500,000원	1994. 9. 6.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031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4. 9. 6.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8 + 146/365) × 5%	960,000원

3. 보상결정액 960,00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04 형사보상

(2012고단393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평화운수 (160114-*******)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이사 윤여원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393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5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2고약10761	대전지방법원	2002. 6. 21.	500,000원	2002. 10. 2.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34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무죄	2012. 12.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2. 10. 2.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0 + 120/365) × 5%	758,219원

3. 보상결정액(청구인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인용) 755,00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200 형사보상

(2012고단396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울산특수화물 주식회사 (181211-*******)

소재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9-1

대표이사 김시환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396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67,78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11857	대전지방법원	1994. 12. 12.	300,000원	1995. 3. 25.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61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무죄	2012. 12.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1995. 3. 25.	2013. 1. 30.	300,000원 + 300,000원 × (17 + 311/365) × 5%	567,780원

3. 보상결정액 567,78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96 형사보상

(2012고단394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아통운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92

대표이사 원종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394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77,58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7고약18290	대전지방법원	2007. 9. 28.	300,000원	2007. 11. 28.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46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7. 11. 28.	2013. 1. 30.	300,000원 + 300,000원 × (5 + 63/365) × 5%	377,589원

3. 보상결정액 377,589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92 형사보상

(2012고단349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수도특수화물 (160111-*******)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대동 453-1

대표이사 최영대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349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88,50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9고약15488	대전지방법원	1999. 11. 8.	300,000원	2000. 7. 7.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494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0. 7. 7.	2013. 1. 30.	300,000원 + 300,000원 × (12 + 207/365) × 5%	488,506원

3. 보상결정액 488,506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88 형사보상

(2012고단404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수도특수화물 (160111-*******)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대동 453-1

대표이사 최영대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404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29,17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4고약39146	대전지방법원	2005. 1. 21.	700,000원	2006. 7. 14.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047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무죄	2012. 12.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700,000원	2006. 7. 14.	2013. 1. 30.	700,000원 + 700,000원 × (6 + 200/365) × 5%	929,178원

3. 보상결정액 929,178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84 형사보상

(2012고단375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창기업 (160111-*******)

소재지 대전 유성구 원내동 73-6 1층

대표이사 신봉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고단375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92,80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6고약13463	대전지방법원	1996. 11. 28.	500,000원	1997. 5. 15.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758	대전지방법원	2012. 11. 20.	무죄	2012. 11. 28.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7. 5. 15.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5 + 260/365) × 5%	892,808원

3. 보상결정액 892,808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80 형사보상

(2012고단412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창기업 (160111-*******)

소재지 대전 유성구 원내동 73-6 1층

대표이사 신봉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412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700,41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7고약5118	대전지방법원	1997. 7. 8.	1,000,000원	1999. 1. 27.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120	대전지방법원	2012. 11. 29.	무죄	2012. 12. 7.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1,000,000원	1999. 1. 27.	2013. 1. 30.	1,000,000원 + 1,000,000원 × (14 + 3/365) × 5%	1,700,410원

3. 보상결정액 1,700,41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72 형사보상

(2012고단390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현대화물운수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93-7

대표이사 육상열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390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32,123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9고약5103	대전지방법원	1999. 6. 3.	500,000원	1999. 10. 18.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06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무죄	2012. 12.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9. 10. 18.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3 + 104/365) × 5%	832,123원

3. 보상결정액 832,123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68 형사보상

(2012고단373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전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중부대전화물터미널 103호

대표이사 배영복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373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84,35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2455	대전지방법원	1994. 5. 28.	200,000원	1994. 8. 24.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736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무죄	2012. 12.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200,000원	1994. 8. 24.	2013. 1. 30.	200,000원 + 200,000원 × (18 + 159/365) × 5%	384,356원

3. 보상결정액 384,356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64 형사보상

(2012고단348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동 30-10

대표이사 김은근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348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4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3고약9033	대전지방법원	2003. 5. 13.	500,000원	2003. 6. 25.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489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무죄	2012. 12.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3. 6. 25.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9 + 219/365) × 5%	740,000원

3. 보상결정액 740,00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60 형사보상

(2012고단403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삼광통운 (160113-*******)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이창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403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79,69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8269	대전지방법원	1994. 8. 29.	200,000원	1995. 2. 10.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036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무죄	2012. 12.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200,000원	1995. 2. 10.	2013. 1. 30.	200,000원 + 200,000원 × (17 + 355/366) × 5%	379,699원

3. 보상결정액 379,699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56 형사보상

(2012고단399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청도화물 (174914-*******)

소재지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1123-3

대표이사 장부식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399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90,47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9고약18857	대전지방법원	1999. 12. 11.	300,000원	2000. 5. 20.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97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무죄	2012. 12.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0. 5. 20.	2013. 1. 30.	300,000원 + 300,000원 × (12 + 255/365) × 5%	490,479원

3. 보상결정액 490,479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48 형사보상

(2012고단401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아운수 합자회사 (160113-*******)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김재욱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401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81,47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4조 제1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4고약1831	대전지방법원	1994. 5. 14.	200,000원	1994. 12. 7.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4019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무죄	2012. 12.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200,000원	1994. 12. 7.	2013. 1. 30.	200,000원 + 200,000원 × (18 + 54/365) × 5%	381,479원

3. 보상결정액 381,479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44 형사보상

(2012고단394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아통운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92

대표이사 원종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394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17,57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4고약39070	대전지방법원	2005. 1. 21.	300,000원	2005. 3. 30.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45	대전지방법원	2012. 11. 23.	무죄	2012. 12. 1.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2005. 3. 30.	2013. 1. 30.	300,000원 + 300,000원 × (7 + 306/365) × 5%	417,575원

3. 보상결정액 417,575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40 형사보상

(2012고단362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전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중부대전화물터미널 103호

대표이사 배영복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고단362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89,931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7고약393	대전지방법원	1997. 2. 19.	500,000원	1997. 6. 26.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625	대전지방법원	2012. 11. 14.	무죄	2012. 11. 22.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7. 6. 26.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5 + 218/365) × 5%	889,931원

3. 보상결정액 889,931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36 형사보상

(2012고단363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80111-*******)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전포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박남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고단363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66,23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2고약1181	대전지방법원	2002. 1. 31.	500,000원	2002. 6. 7.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638	대전지방법원	2012. 11. 14.	무죄	2012. 11. 22.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2. 6. 7.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0 + 237/365) × 5%	766,232원

3. 보상결정액 766,232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32 형사보상

(2012고단394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수도특수화물 (160111-*******)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대동 453의 1

대표이사 최영대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고단394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85,89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0고약6349	대전지방법원	2000. 6. 5.	500,000원	2001. 8. 24.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49	대전지방법원	2012. 11. 20.	무죄	2012. 11. 28.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1. 8. 24.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1 + 159/365) × 5%	785,890원

3. 보상결정액 785,89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28 형사보상

(2012고단374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대원운송사 (160113-*******)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349

공동대표사원 고선영, 고희정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고단374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2고약27285	대전지방법원	2003. 1. 30.	500,000원	2002. 12. 26.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743	대전지방법원	2012. 11. 20.	무죄	2012. 11. 28.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2. 12. 26.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0 + 35/365) × 5%	752,397원

3. 보상결정액(청구인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인용) 500,00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24 형사보상

(2012고단397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화운수 합자회사 (160113-*******)

소재지 대전 중구 대사동 62-3

대표사원 김용문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고단397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4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8고약9112	대전지방법원	1998. 7. 8.	500,000원	1999. 4. 13.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71	대전지방법원	2012. 11. 20.	무죄	2012. 11. 28.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9. 4. 13.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3 + 292/365) × 5%	845,000원

3. 보상결정액 845,000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20 형사보상

(2012고단394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삼아통운 주식회사 (160111-*******)

소재지 대전 대덕구 읍내동 483-92

대표이사 원종진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고단394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762,671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2고약7616	대전지방법원	2002. 5. 17.	500,000원	2002. 7. 29.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943	대전지방법원	2012. 11. 20.	무죄	2012. 11. 28.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2. 7. 29.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0 + 185/365) × 5%	762,671원

3. 보상결정액 762,671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16 형사보상
(2012고단367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합자회사 협신운송사 (160113-*******)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대표사원 오월선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고단367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46,45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6고약6891	대전지방법원	1996. 7. 16.	300,000원	1996. 8. 26.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679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무죄	2012. 11. 16.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300,000원	1996. 8. 26.	2013. 1. 30.	300,000원 + 300,000원 × (16 + 157/365) × 5%	546,452원

3. 보상결정액 546,452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112 형사보상

(2012고단348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국화물운수 합자회사 (160113-*******)

소재지 대전 중구 산서로 57(사정동)

송달장소, 대전 중구 사정동 441-3 201호

대표사원 최우일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고단348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04,931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1996고약1406	대전지방법원	1996. 3. 30.	500,000원	1996. 11. 19.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488	대전지방법원	2012. 11. 8.	무죄	2012. 11. 16.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1996. 11. 19.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16 + 72/365) × 5%	904,931원

3. 보상결정액 904,931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2044 형사보상

(2012고단318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청송 (150111-*******)

소재지 충북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88

대표자 사내이사 이범준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2고단318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6,71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의 원인이 된 사실

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 및 벌금납입

사건번호	법원	발령일	벌금액	벌금납입일
2006고약17813	대전지방법원	2006. 9. 25.	500,000원	2008. 10. 24.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재판결과	확정일
2012고단3182	대전지방법원	2012. 10. 5.	무죄	2012. 10. 13.

2. 보상금액의 산정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납입한 금액	납입일	보상결정일	계산식	금액
500,000원	2008. 10. 24.	2013. 1. 30.	500,000원 + 500,000원 × (4 + 98/365) × 5%	606,712원

3. 보상결정액 606,712원

2013. 1. 30.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